

기초생활권 수립지원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2009. 12.



연 구 진

연구책임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연구진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목 차

I. 기초생활권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1
2. 계획의 목적	5
3. 계획의 법적 근거와 성격	10
4. 계획의 구성	12

II. 기초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1. 계획의 수립체계 및 절차	16
2. 계획의 수립방법	19

III. 기초생활권 계획의 수립방향

1. 계획의 기본방향	20
2. 계획수립의 주요 전략	21
3. 중점 추진과제	28

IV.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의 세부 지침

1. 계획수립의 개요	36
2. 기초생활권 여건분석	41
3. 기본구상	54

4. 부문별 사업계획	60
1) 문화·관광·체육 부문	62
2) 농림·수산 부문	96
3) 산업·경제 부문	131
4) 보건·복지·교육 부문	143
5) 환경 부문	157
6) 수자원·교통 부문	172
7)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	184
5. 집행계획	209

부 록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
2. 기초생활기반 확충부문의 지역구분

I. 기초생활권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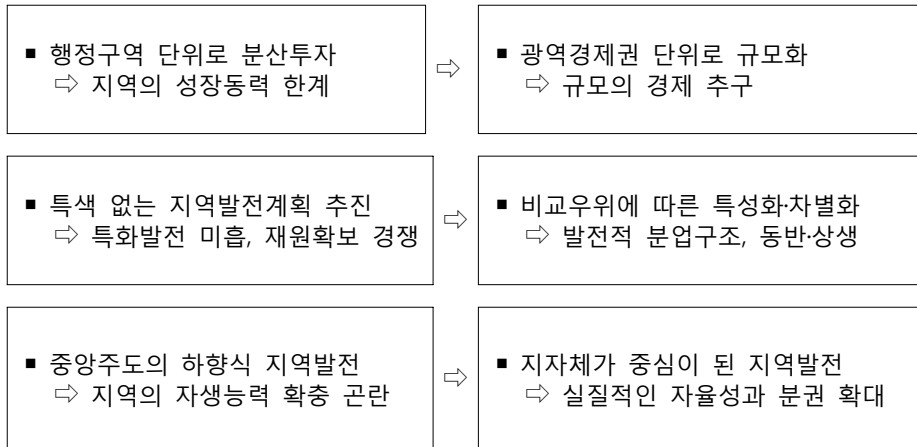
1.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1) 계획의 배경

□ 새 정부 지역발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

-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대한 성과가 미흡
-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주요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효율화와 기초 단위의 삶의 공간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종래의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 하향적 지역발전체계를 광역경제권 중심의 차별적, 상향적 지역발전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

새 정부 지역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 3차원적으로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 신지역발전체계에서는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발 권역의 규모별로 입체적 추진전략을 마련
- 전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화전략을 구상
 - 초광역개발권 :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및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4대 초광역권을 설정
 - 광역경제권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2 광역경제권을 설정
 - 기초생활권 :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163개 기초생활권을 설정

□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

- 창조적 지역발전체계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광역경제권 발전과 함께, 기초 단위 지역에 대한 삶의 공간의 경쟁력과 생활여건 개선도 중시
-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여건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하나의 완결된 생활공간 내에서 충족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

2) 계획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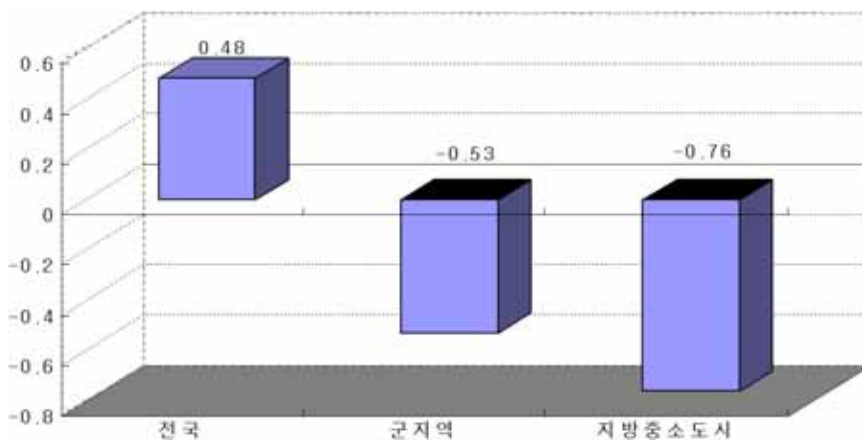
□ 광역경제권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권에 대한 발전전략의 보완

-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 사업은 글로벌 시각에서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거시전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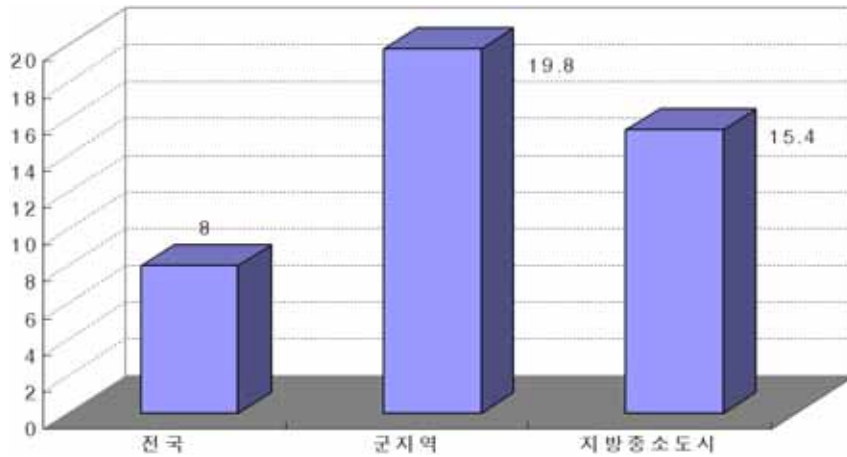
- 반면, 기초생활권 구상은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지역개발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의 추진전략임

□ 인구의 절반 이상(약 54%)을 차지하면서도 개발축에서 소외된 기초생활권에 대한 삶의 질 개선

- 기초생활권은 그간의 성장과정을 견인하였던 개발축에서 소외됨으로써 인구, 산업, 생활환경 등 발전의 상대적 부진에 처해 있음
- 실제 군 지역 및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이 급속도로 진행 중
 - 인구('06~'07년) : 전국 0.48%, 군 지역 △0.53%, 지방 중소도시 △0.76%



- 고령화(65세 인구, '07년) : 전국 7.97%, 군 지역 19.8%, 지방 중소도시 15.4%



- 따라서 개발에서 소외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발전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구축
-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문화·의료·복지·환경 등 총체적 삶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초생활권을 재인식할 필요
- 기초생활권이란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단위로서 기초적인 삶의 터전을 의미

기초생활권의 개념

- 기초생활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 공간단위”라고 정의
- 공간적 측면에서는 초광역개발권 -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의 3층(tier) 권역 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기초 공간으로서 163개 시·군
-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이 개발의 골격을 세우는 권역이라면 기초생활권은 나머지 여백을 채우는 권역으로 이해 가능
- 사업적 측면에서 기초생활권은 생활여건과 경제여건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된 기초 사업을 담당
 -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이 중대형 전략사업(macro or mezzo - projects)에 치중하는 것에 비해 기초생활권은 소규모 생활형 사업(micro-projects)에 중점
 - 주로 인간 정주에 필요한 생산, 생활, 여가, 교육, 의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사업이 중심

- 따라서 기초생활권에서는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환경 등 생활의 기본요소가 전국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수준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공감형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됨

2. 계획의 목적

1) 기초생활권의 비전과 추진전략

□ 비전

- 기초생활권은 “전국 어느 시·군에 살든지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발전의 비전으로 설정

- “경쟁력있는 지역 창조”를 비전으로 하는 광역경제권에 상응하여 기초생활권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

□ 4대 추진전략

① 유형별 특성화·차별화 전략

-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
-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특성화·차별화된 개발 추진

기초생활권의 유형

- ① 도시형 : 대도시와 인접해 있거나, 자족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
- ② 도농연계형 :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연계 발전이 가능한 시·군 지역
- ③ 농산어촌형 : 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의 郡 지역

②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

- H/W 위주 개발 (도로, 건물, 시설)을 탈피하여, S/W 중심의 개발(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로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
- 지역특화·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

③ 차등적 생활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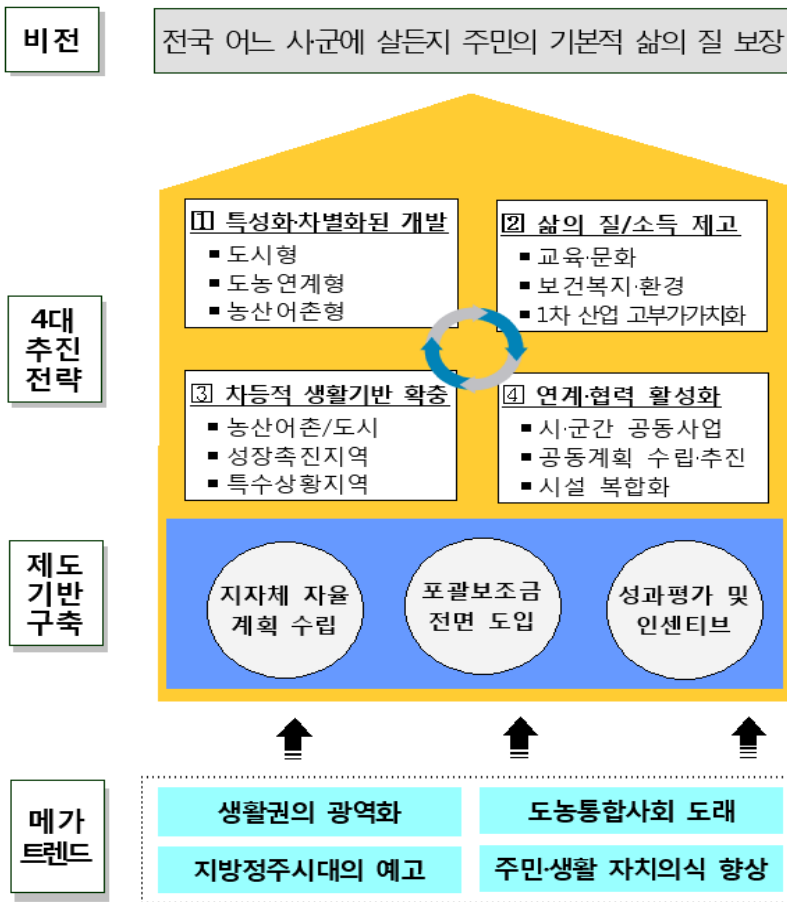
-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정주·주거 기반을 확충하여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
-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접경지역과 도서 등은 “

특수상황지역”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 창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차등적으로 지원

④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 시·군간 협력 촉진을 위해 기초생활권 계획의 공동 수립을 추진하고, 협력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 문화, 관광, 환경, 지역개발 등 사업 분야별로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으로 개발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기초생활권 비전 및 추진전략



□ 제도기반 구축

- 기초생활권계획의 시·군 자율적 수립
 - 기초생활권 개발의 계획적·체계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 의사와 구상으로 계획을 수립
 - 계획은 산업, 문화, 교육, 정주인프라, 복지 등 기초생활권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유도
- 포괄보조금제도의 전면 도입
 - 지자체가 기초생활권계획에 따라 직접 예산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포괄지원방식으로 전면 개편
 - 중앙부처 위주의 분산·중복투자가 아닌 지역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도록 패키지형으로 지원
-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체제 강화
 - “사전자율, 사후책임” 원칙에 따라 지자체는 재원한도 범위내에서 세부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중앙은 엄정한 사후 평가 실시
 -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재원한도의 일부(10% 내외)를 시·도별 인센티브 형태로 조정·반영

2)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의 목적

□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계획적 추진전략의 제시

- 기초생활권계획은 계획기간 동안 시·군 단위에서 당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종합적 시책들을 계획적으로 제시
-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및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실천적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에 대한 비전과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시책 및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 자율적 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

- 종래 각 중앙부처에서 주어진 보조사업을 단편적으로 시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당해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구상·설계함으로써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도모
 -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지역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합의에 의한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정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
-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별 투자계획을 탈피하여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구상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 활용 및 포괄적 지원

- 기초생활권계획의 직접적인 목적은 계획기간 동안(5년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라 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군 단위 투자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음
- 특히 기초생활권계획에는 광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포괄보조금제도 하에서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이 매우 중요

3. 계획의 법적 근거와 성격

1) 계획의 법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계획 수립 근거(제7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법적으로는 계획 수립을 시·군의 자율에 일임하고 있으나 계획수립과 정부지원이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계획수립이 필요
- 기초생활권계획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
 -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초생활권계획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고려하도록 규정
 - 기초생활권계획에 근거하여 광특회계로부터 재정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조(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둘이상의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하 “기초생활권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초생활권 계획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둘이상의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해당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계획의 차별적 성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 자율계획

- 기초생활권계획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전략 및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시·군 기초생활권 단위의 지역발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
- 기초생활권계획은 종래 군특법상 시·군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보완, 대체하는 계획으로서 법상으로 지역발전계획체계의 한 축을 형성
 - 다만, 개정 법률에서는 획일적으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지 않고 계획의 수립 여부와 구상을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에 일임하는 자율계획임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전략적·종합계획

- 기초생활권계획은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계획
 - 시·군 단위의 분절적 개발이 아니라 시·군 행정구역의 초월한 생활권 형성을 통한 기초 단위의 정주여건 향상에 초점을 둔 전략적 지역계획임
- 기초생활권계획은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복지, 의료, 환경,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광특회계 지원사업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연계사업까지 망라한 종합계획의 성격

□ 5년 단위의 중기적 투자계획

- 기초생활권계획은 광특회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기초생활권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시·군 단위에서는 당해

지역의 5년간 지역발전에 대한 실행계획의 성격을 지님

- 국토기본법상 시·군계획 등이 실질적 투자와 연결되지 않아 지면 계획(paper plan)으로 그치는 것과 달리 계획대로 재정이 집행되는 투자계획

- 특히 기초생활권에 대해서는 광특회계의 지원을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각 시·군은 포괄보조금제도에 상응하는 투자계획을 제시

□ 기초생활권 관련 시·군간 공동·협력계획

- 기초생활권은 원칙적으로 시·군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계획의 수립은 가급적 생활권이 중복되거나 기능이 연계된 인접 시·군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규모경제와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생활권계획에서는 계획의 공동 수립은 물론, 개별 사업도 인접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협력계획의 성격을 보유

4. 계획의 구성

□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체계

- 지역발전계획은 부문별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시·도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4가지 계획으로 구성

지역발전계획의 체계

구 분	계획수립 주체	주 요 내 용	비고
부문별 발전계획	국가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지역발전 목표 ■ 주요 부문별 계획 	법정 계획
	중앙부처 주도, 시·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개발 구상 - 4대 초광역벨트 개발구상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관련 시·도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목표 ■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여건 ■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지역개발계정 추진사업) ■ 추진방안 및 평가체계 	법정 계획
↑↑			
시·도 발전계획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발전 비전과 목표 ■ 시·도별 발전 방안 	자율 계획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시·군 (시·군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권별 발전 비전과 목표 ■ 기초생활권별 발전 방안 	자율 계획

- 지역발전계획 중 부문별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이고, 시·도 발전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자율계획임
- 시·도계획과 기초생활권계획 중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광특회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포함
- 최종적으로 부문별 발전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종합하여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 기초생활권계획의 구성

- 기초생활권계획은 기초생활권에 해당하는 시장·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수립
- 기초생활권계획의 주요 내용
 - 기초생활권의 지역여건 분석
 - 기초생활권의 발전 비전 및 목표
 - 부문별 사업계획(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경제, 보건·복지·교육, 환경, 수자원·교통,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 집행계획

관련계획의 주요내용

1.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광역경제권내 해당 시·도가 공동으로 구성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수립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 광역경제권의 발전 비전과 목표
 -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여건 분석
 -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 : 지역산업 육성,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지역 발전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 문화·관광 육성, 광역경제권 자원의 공동 이용·관리 등
 - 주민의 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지역개발계정 추진사업)
 - 추진방안 및 평가체계 등

2. 부문별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 부문별 발전계획은 지역발전 목표와 주요 부문별 발전계획을 제시한 총괄계획 부문과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으로 구성
- 부문별 계획의 주요 내용
 -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광역경제권 발전계획—기초생활권계획'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역량의 확충 방안
 -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방안
 -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방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방안
 -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방안
 -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방안
 -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 방안
 -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방안
 - 투자재원의 조달 방안 등
-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은 중앙행정기관이 중심(시·도 협력)이 되어 수립하며, 산업, 문화·관광 등 성장동력 육성, 초광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 기반 시설의 확충 및 국내외 협력 등을 포함

II. 기초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1. 계획의 범위 및 절차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0 ~ 2014년 (5개년)
 - 계획수립의 기준년도는 2010년, 목표 연도는 2014년
 - ※ 기초생활권계획의 계획내용 중 2009년도는 기존 보조방식에 따라 계획된 사업의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을 소요하거나 계획기간의 일부에만 시행되는 사업도 포함

□ 공간적 범위

- 광역시의 자치구를 제외한 163개 시·군(16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2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이 기초생활권계획의 수립대상
- 각 시·군은 관할 행정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계획을 수립
 - 단, 인접 시·군과 함께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단독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인접 시·군과의 협력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을 하나의 계획권역으로 간주

□ 내용적 범위

- 부문 :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경제, 보건·복지·교육, 환경, 수자원·교통,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7대 부문 24개 포괄보조사업을 포함
- 사업 : 광특회계 지원사업 및 이와 연계된 모든 사업 포함

-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 포함된 사업(포괄보조 대상 7개 정책군, 24개 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
 - 일반회계(지방비, 교육재정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비재정사업으로서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업계획(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 개별사업 등의 연계·협력방안 등)
 - 그 밖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기업유치전략, 산업단지 조성계획, 기업활동 규제완화 대책, 성장거점 육성사업 등)
- 인접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 협력·연계사항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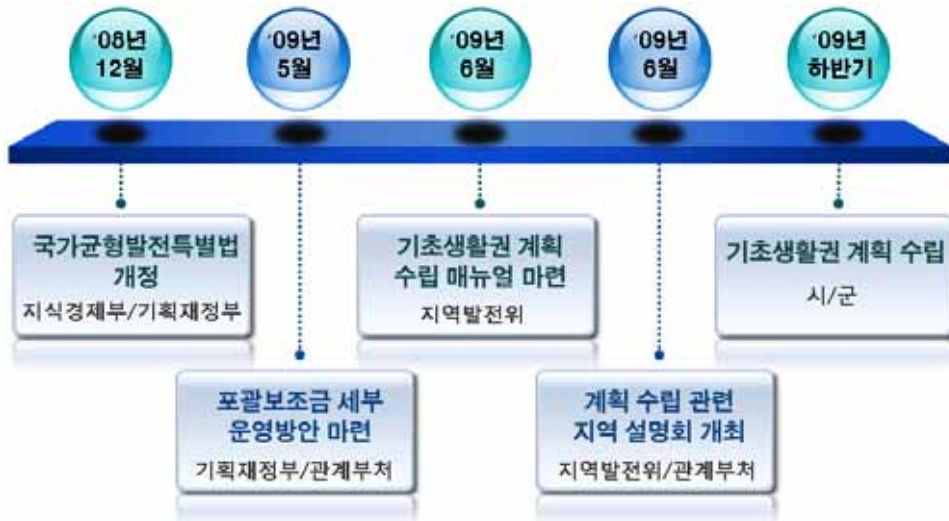
□ 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절차	주체	내용
계획수립 매뉴얼의 작성·송부	지역발전위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	⇒	
기초생활권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자치단체 지침 시달, 설명회 개최 · 기초생활권발전5개년계획 및 시행계획(안) 수립
↓	⇒	
시도별 종합 조정 (시·도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 시·군 지역발전협의회 심의(임의) · 기초생활권계획(안)의 종합 조정 · 시도 자체사업과 기초생활권 사업을 종합하여 시·도계획 (안) 작성
↓	⇒	
광역경제권별 취합·조정 (광역계획 수립)	광역발전 위원회	· 시·도 지역발전협의회 심의(임의) · 시도계획(안)의 심의·조정 · 시도 사업과 광역경제권 사업을 종합하여 계획(안) 작성
↓	⇒	
최종계획안 작성	지역발전위	· 부문별 계획(초광역개발 사업 포함)과 광역계획을 종합하여 지역발전5개년계획 작성 · 지역발전위 본회의 심의
↓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	정부	· 지역발전5개년계획 확정

□ 계획수립의 추진일정(안)

과 제 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08. 12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② 포괄보조금 세부 운영 방안 마련	'09. 5월	기획재정부 관계 부처
③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매뉴얼 마련	'09. 6월	지역발전위
④ 계획 수립 관련 지역 설명회 개최	'09. 6월	지역발전위 관계 부처
⑤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09. 하반기	시/군

기초생활권계획의 추진일정



2. 계획의 수립방법

□ 계획수립작업반 구성

- 기초생활권별로 계획수립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T/F로서 「기초생활권계획수립작업반」을 구성·운영
- 작업반은 계획기조팀-부문계획팀-집행계획팀으로 구성하며 각 부문별 중점과제를 종합하여 계획안을 작성

□ 시·군 자율적 계획 수립

- 기초생활권 개발유형 선택
 - 기초생활권별로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 지역의 유형을 선택
- 기초생활권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유형에 부합하는 발전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
- 포괄보조사업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
 - 시·군별 계획수립작업반이 주축이 되고 각 사업부서가 참여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발굴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계획
 - 중점 추진과제 중 지역간 공동 추진 및 시설 복합화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협력사업 구상
- 투자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

□ 의견수렴절차

- 개발유형 선택,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중점 추진과제 구상, 투자계획 수립 등 계획과정의 전 단계에서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 자율적으로 공청회, 간담회, 워크숍, 설명회 등을 개최

Ⅲ. 기초생활권계획의 수립방향

1. 계획의 기본방향

- 계획의 자율적 수립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지향
 - 기초생활권계획은 자율계획으로서 포괄보조금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책과 사업을 지역 스스로 자유롭게 구상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특성화 발전을 지향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시책 강구
 - 광역계획이 지역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기초생활권계획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정주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초생활권계획에서는 삶의 경제적 기반인 소득과 고용은 물론,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환경, 교통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하여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 제고
 - 지역여건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시행의 과정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함
 - 지역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독창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가장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계획함

□ 자립역량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 지방도시와 농어촌 등 대부분의 기초생활권은 자립적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발전 역량을 강화할 필요
- 또한 환경시설, 공공시설 등의 지역간 공동 설치·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2. 계획수립의 주요 전략

1)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화 전략

(1) 개요

- 모든 기초생활권은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특성화발전을 지향
-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 지역특성을 기준으로 ① 도시형, ② 도농연계형, ③ 농산어촌형으로 유형을 구분
- 기초생활권 시·군은 지역의 여건 및 특징에 맞는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유형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2) 유형별 선정기준 및 특징

① 도시형

- 대도시가 중심도시로 인접해 있거나, 자족적 생활권 형성이 가능한 지역
-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령화 수준이 낮은 지역

- 2, 3차 산업이 발달해 있고 소득과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
-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등 정주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게 구비된 지역
- 구도심의 쇠퇴, 일부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악화가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

② 도농연계형

- 도농복합시 또는 시와 군이 동일 생활권인 지역
-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중인 지역
- 소득과 일자리 부족 등 기본적 지역경제여건이 미흡한 지역
- 도농간의 연계 개발이 미약하여 도농간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여건 격차가 심화된 지역

③ 농산어촌형

- 중심도시가 없거나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군지역
-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자족적 생활권 형성이 곤란한 지역
- 1차 산업의 비중이 크고 소득 및 고용기반이 취약한 지역
-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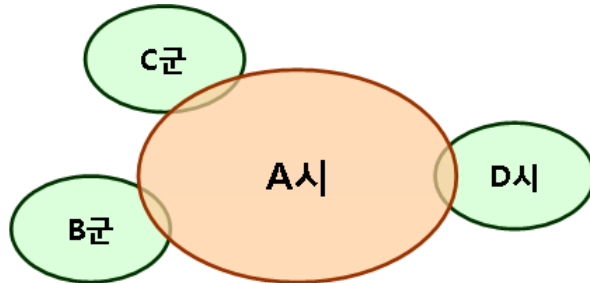
(3) 유형별 중점 추진방향

① 도시형

- 중점 개발방향 : 광역 도시권 개발과 구시가지 정비
 - 도시의 교외화에 따른 주거 및 생산 활동의 확산에 부응하여 광역 도시계획의 수립 및 광역개발 추진
 - 구도심 재생, 지역산업 첨단화, 전통시장 현대화 등 핵심 사업을 발굴하여 도심지역의 활력 증진
 - 지역생활권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에 필요한 고차 중심기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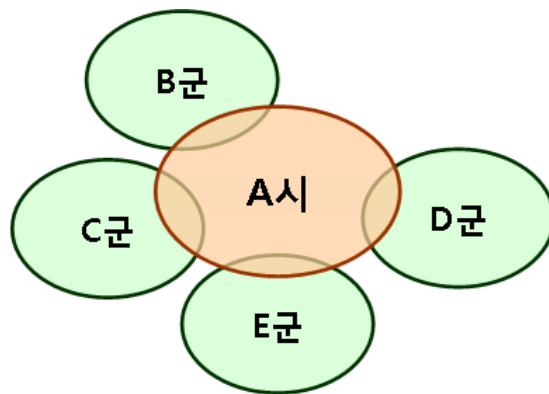
○ 협력적 공간구조 형성

- 대도시를 거점으로 인접 시·군간 연계·협력 또는 대등한 규모의 인접 시·군 지역생활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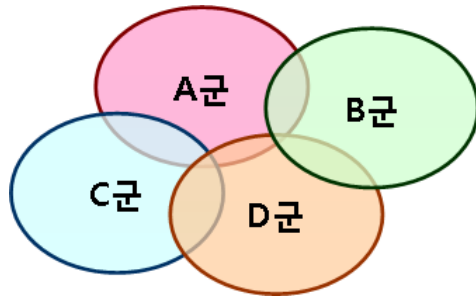
② 도농연계형

- 중점 개발방향 :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도농통합적 연계 개발
 - 중심도시의 지역경제 및 생활서비스의 거점기능 강화
 - 도시내 농촌지역 및 도시인접 군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지역간 서비스(의료 등) 접근성 향상
- 협력적 공간구조 형성
 - 중심도시와 인접한 군 지역간 지역생활권 형성



③ 농산어촌형

- 중점 추진방향 : 인접 군 지역간 통합적 연계 개발
 - 농촌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득 및 고용기회 다각화
 - 생활기반시설의 공동설치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해 규모경제를 도모
 - 중심 읍·면을 소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고 읍·면간 서비스 연결 체계 강화
- 협력적 공간구조 형성
 - 중심도시와 격리되어 있는 군간 지역생활권 형성



(4) 계획의 주요항목

- 각 기초생활권은 자율적으로 선정한 유형에 따라 당해 지역의 비전과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7개 정책군 24개 포괄보조사업별 추진과제를 발굴
- 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고려한 계획의 표준적 공통항목(목차)은 다음과 같음

계획의 목차(안)

1. 계획수립의 개요

-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2)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2. 기초생활권 여건분

- 1) 일반현황
- 2) 주민수요 분석
- 3) 관련계획 검토
- 4) 잠재력 분석

3. 기본구상

- 1) 발전비전 및 목표
- 2) 추진전략
- 3) 공간구상

4. 부문별 사업계획

- 1) 문화·관광·체육
- 2) 농림·수산
- 3) 산업·경제
- 4) 보건·복지·교육
- 5) 환경
- 6) 수자원·교통
- 7) 기초생활 기반확충

5. 집행계획

- 1) 사업추진체계
- 2) 자원조달

2) 시·군간 연계·협력 전략

(1) 개요

- 둘 이상의 시·군이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계된 경우에는 가급적 기초 생활권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
- 각 부문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가급적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설 복합화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둘 이상의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시설복합화를 추진하는 경우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2) 연계·협력 방향

□ 사업 분야별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

- 문화관광 분야 : 지역축제 등 지역 문화관광 사업 연계·협력 추진 및 활성화
 - ※ 공주·부여간 역사문화도시 공동 추진,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
 - ※ 지리산권 7개 시·군이 조합 설립('08), 연계 관광상품 개발·통합 축제 등 지리산권 공동 연계사업 추진
- 농산어촌 산업 분야 : 농산어촌간 공동 브랜드개발 및 공동 마케팅 강화
 - ※ 제천, 장흥, 산청, 문경 등 11개 약초 산지 시·군과 동대문구, 대구 중구 등 약령시 자치구가 '한방약초도시 협의회' 구성('08년)
- 환경 및 복지 등 비선호시설 분야 : 시·군간 협력을 통해 공동시설 설치와 함께 시설의 공동이용 등 추진
 - ※ 파주시와 김포시의 소각장과 매립장 공동 설치, 구로구와 광명시간 생활쓰레기 및 생활하수 상호 교환처리
 - ※ 경기도 이천시 광역소각장 건설시, 주민지원기금(130억원)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우선 추진(4개 사업, 총 600억원)

□ 기초생활권계획의 공동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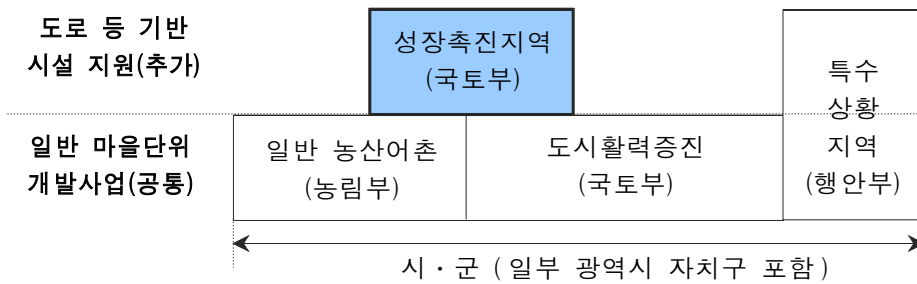
- 시·군간 자율 협의를 바탕으로 역사성,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 동일 생활권에 속하는 시·군은 기초생활권계획을 공동 수립하도록 지원
 -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인접 자치단체간 동일 지역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
- 공동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3) 낙후지역 등의 차등적 개발 전략

(1) 개요

- 모든 기초생활권은 지역특성에 따라 “일반 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구분하고 일반 농산어촌 지역 중에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며 해당 시·군은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낙후지역정책을 선택·발굴
- 4개 지역유형에 해당하는 기초생활권은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구상

기초생활권 4개 지역유형



(2) 낙후지역 특화개발 방향

□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정주·주거 기반을 확충

- 농산어촌 : 마을단위 기초생활 인프라를 완비하는 한편, 중심 읍·면 활성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
- 중소도시 :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 재생 등을 종합 추진하여 대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성
※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R&D사업과 연계(08~'12: 1500억원)

□ 낙후도가 심한 「성장촉진지역」과 입지 여건이 열악한 「특수상황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 낙후도 심한 시·군에 대해 지정하는 성장촉진지역(추후 지정·고시)을 대상으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0% 보조율을 적용
-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도서)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제공

3. 중점 추진과제

1) 개요

- 기초생활권을 살고 싶은 정주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삶의 질 향상 시책을 지역 유형화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개발
- 교육, 의료·복지, 문화, 환경, 산업·경제 등 7대 부문 및 24개 포괄보조사업별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시책을 개발
- 각 세부 시책은 포괄보조사업별로 획일적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

역의 특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예산 한도내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중점 과제를 선정

2) 중점 추진과제의 구성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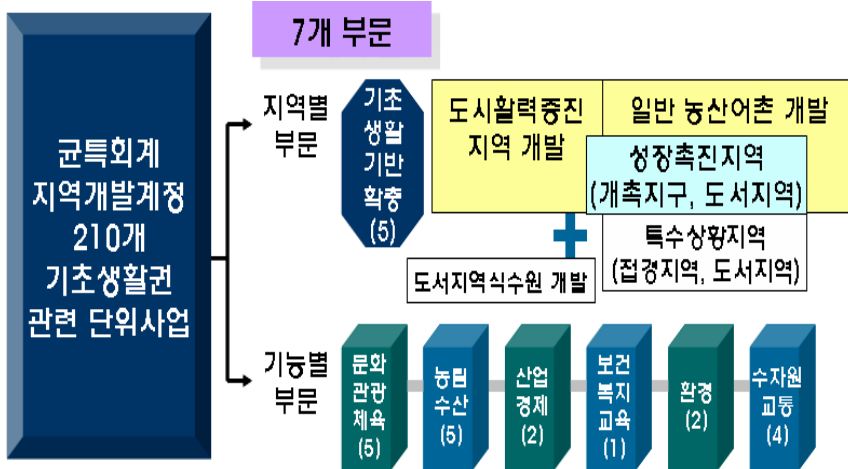
- 지자체 자율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기초생활권 개발의 계획적·체계적 투자를 유도함
 - 시장·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는 계획 수립 매뉴얼 등 컨설팅을 제공함
 -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특성화된 개발을 추진토록 함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종합계획이므로, 지자체 자체 사업이나 포괄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타 부처 사업 등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범위]

포괄보조금 사업 7개 분야							지자체 자체·보조 사업 (지방세/교부세/국고·도비 보조)
문화 관광 체육	농림 수산	산업 경제	보건 복지 교육	환경	수자 원 교통	기초 생활 기반 충	교육, 일반행정, 문화·환경, 사회복지, 경제개발 등

-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직접 필요한 세부사업을 기획,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되며,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한 행안부, 지역발전위의 사전 심사 절차 폐지로 예산 편성 절차도 간소화 됨
 - 현행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210개 기초생활권 관련 단위사업을 7개 정책 분야 24(19+5)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한다.
 - ※ 지역별 사업군: 기초생활권 생활 기반 구축(3+1개 지역)
단,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을 선택하려는 지자체는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

※ 기능별 사업군(6개 분야):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 복지, 환경, 수자원교통 등 19개 포괄보조사업



※ 19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5개 사업은 시군구자율편성으로 운영함

※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19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 사업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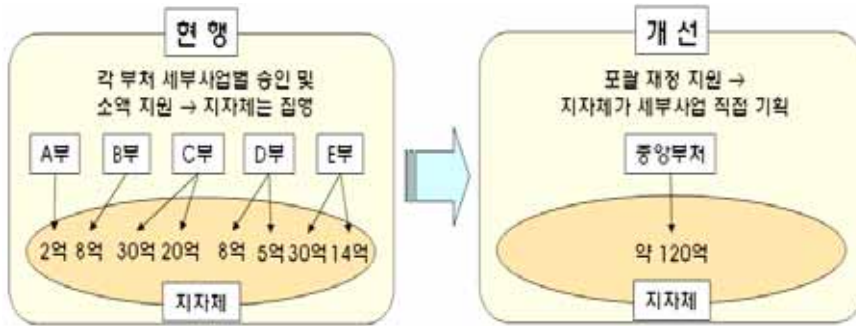
-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구축 사업군의 3+1개 지역 구분에 따라 사업 예산이 배분되며, 각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기초 생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하면 됨

※ 3+1개 지역 구분은 도시('도시활력증진지역')와 일반 농산어촌 구분을 기본으로 함. 다만,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해 주로 접경지역 기초생활권을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별함. 도·농 및 특수상황지역 구분을 떠나 기반시설 등 여건이 보다 취약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별하여, 추가적 지원을 함

※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원 대상 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외에 추가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을 신청함

-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도서개발촉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가 대상임
 - ※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 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대상임
 -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도농복합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대도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함
-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 복지, 환경, 수자원·교통 등 6개 사업군은 대체로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들 중 관련 부처 기능을 고려하여 기능군으로 예산을 묶어 놓은 것임
- ※ 크게 문화·관광·체육(문화부, 문화재청), 농림·수산(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산업·경제(지경부, 중기청), 복지(복지부), 환경(환경부), 수자원·교통(국토부)이며 19개 포괄보조사업으로 구분됨
- 그간 비판 받아온 분산·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지역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기획, 설계, 집행하도록 패키지형으로 재정을 지원함
- 요컨대 통폐합된 기존 단위사업들의 관련 지침이나 계획 등은 폐지하고, 세부사업 내용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포괄적 재정 지원 형태



- 셋째, ‘사전자율, 사후책임’ 원칙에 따라 지자체는 재원한도 내의 세부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사후평가를 실시함
 - 중앙정부는 24개 포괄보조사업별 사업유형·선진모델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추진실적을 평가함. 이때 사업군별 주관 부처들은 지방의 기획 기능을 보완하고 사업의 실질적 성공을 돕는 정보제공·교육·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재원한도의 일부를 시·도별 인센티브 형태로 조정·반영하도록 함
 -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함

3) 중점 추진과제의 예시

-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지방 교육 활성화
 -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산어촌 지역 기숙형 공립고 지정·육성
 - 140개 시·군의 방과후 학교 운영비 포괄 지원 및 원어민 영어 교육 기회 확대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 중심대학 확대

□ 선진형 지방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

- 기초생활권의 공공 보건의료 공급기반 확충
※ 시·군·구 보건소(253개)—지방의료원(34개)—지방국립대병원(9개)을 통한 기초 및 고차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역·고객 특성에 맞는 응급·방문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장애인·영유아·다문화가정 등 복지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및 주민체감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기반 확대

-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 인프라 확대
- 전시·공연 순회 등 “방방곡곡 문화공감”(찾아가는 문화) 사업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자원 개발 및 문화창조 거점지역 육성
-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공공 체육시설 확충

□ 우수 환경자원 활용 녹색성장

- 환경자원의 관광·산업·에너지 자원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에코빌리지 조성 추진
※ 전국 10대 권역에 '20년까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 바이오 매스를 활용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2020년 까지 600개)으로 농촌 에너지자급률 40~50% 달성
- 한계농지에 태양광 발전 등 녹색 에너지 및 휴양산업 조성

□ 지역 환경서비스 품질 강화

- 농산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및 서비스 제고 등 환경 서비스 강화
※ (상수도) 68%('07) → 82%('12), (하수도) 42.9%('06) → 64%('12)
※ 하수처리장 테마공원화,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 등 주민친화형 환경 관리 서비스 강화

- 제방준설, 저류지 건설,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해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고 활용도가 높은 친수공간 조성

□ 지역산업육성 지원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 ※ 맞춤형 교육, 산업체 인턴십 및 산학연 공동 R&D네트워크 등
- 유통물류기반조성 등 하드웨어의 개선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 및 투자유치 지원
- 재래시장 정비 및 재활성화 사업

□ 경쟁력있는 향토산업의 발굴 및 체험·휴양서비스 산업의 융복합화

- 향토산업 발굴 및 향토기업 집적화
- 시·군별로 경쟁력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복합산업화 추진
- 체험·휴양 마을, 테마공원 등 인프라 조성 (시·군 연계형 광역 체험·휴양 프로그램 개발 등)

□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농교류 기반조성

- 농산어촌산업 육성 및 도농교류 기반조성
 - ※ 20년 이상 노후 농공단지 리모델링 및 창업보육 등 입주기업 S/W 지원체계 강화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 ※ 농어업인 제조·가공사업 참여, 농식품전문투자펀드 확대, 로컬푸드 운동 등 직거래 촉진
- 농업 및 수산·어항기반 조성
 - ※ 농식품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광역농식품클러스터 조성

□ 하천정비 등 활용도 높은 친수공간 조성

- 제방준설, 저류지 건설,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해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고 활용도가 높은 친수공간을 조성
-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수상·관광·레저·소수력 발전 등 여가·휴식·에너지 공간으로 개발

IV.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의 세부지침

1. 계획수립의 개요

- 계획수립의 개요는 기초생활권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강을 제시하는 도입부분으로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의 기초적인 작업에 해당
- 계획수립의 개요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1) 배경

- 계획의 수립배경은 계획수립의 상황적 맥락과 계획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언급하되, 특히 계획수립의 상황적 맥락은 시·군이 처한 발전애로, 발전의 장애 및 지역발전의 현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예시 : 계획수립의 배경

- A시는 지난 30여년동안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있었음
- 풍부한 환경 및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지 못해 발전의 잠재력이 사장되어 왔음
-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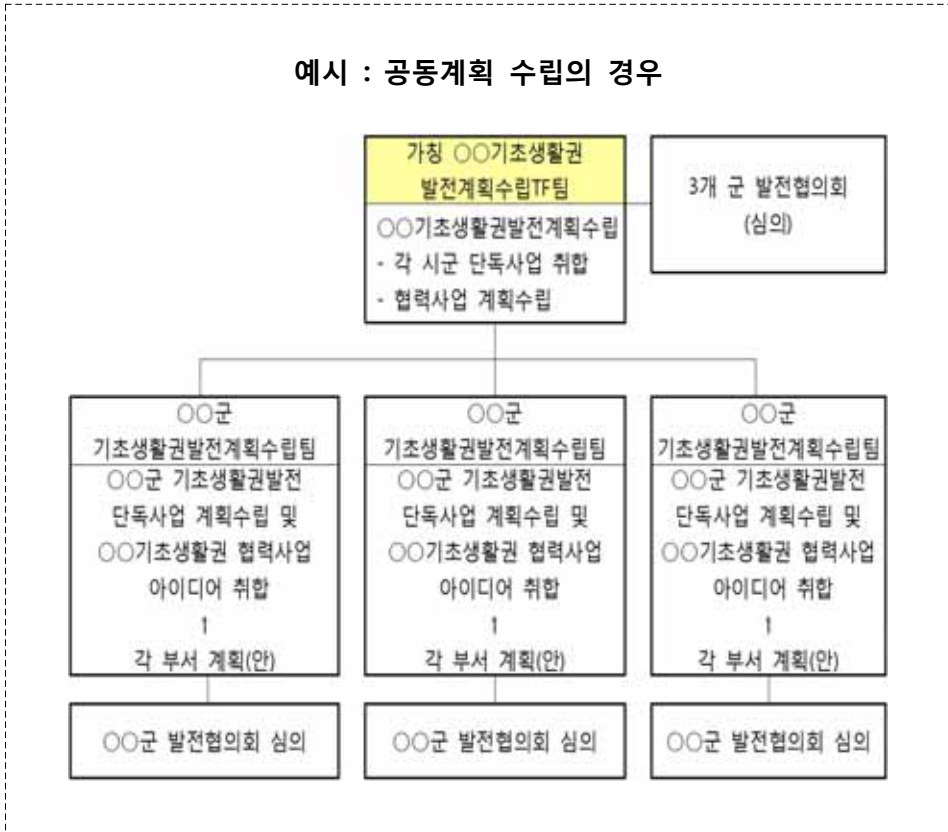
- 앞에서 언급한 배경 및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아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하되, 기초생활권 계획을 통해 해당 기초생활권이 향후 5년간 추구해서 도달하고 싶은 발전의 지향점을 포함하여 제시

2)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에 참여한 주체와 이들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수립팀 구성을 포함한 해당 시·군 지역발전협의회와의 관계, 지역발전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포함한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이들간 역할분담을 모식도를 통해 제시
- 복수의 시·군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각 시·군 및 시·군간 공동계획 수립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 분담에 대해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

예시 : 공동계획 수립의 경우



(2) 추진절차 및 경과

-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최한 각종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다양한 절차를 시간대 순으로 기술하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해당 시·군의 지역발전협의회 및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의내용을 반드시 기술
- 준비단계에서부터 계획 과정 전체에 걸쳐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역 내 다양한 조직, 단체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 주민 토론회, 공청회, 면담
- 지역 언론이나 방송
- 소식지, 포스터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예시 : 계획수립의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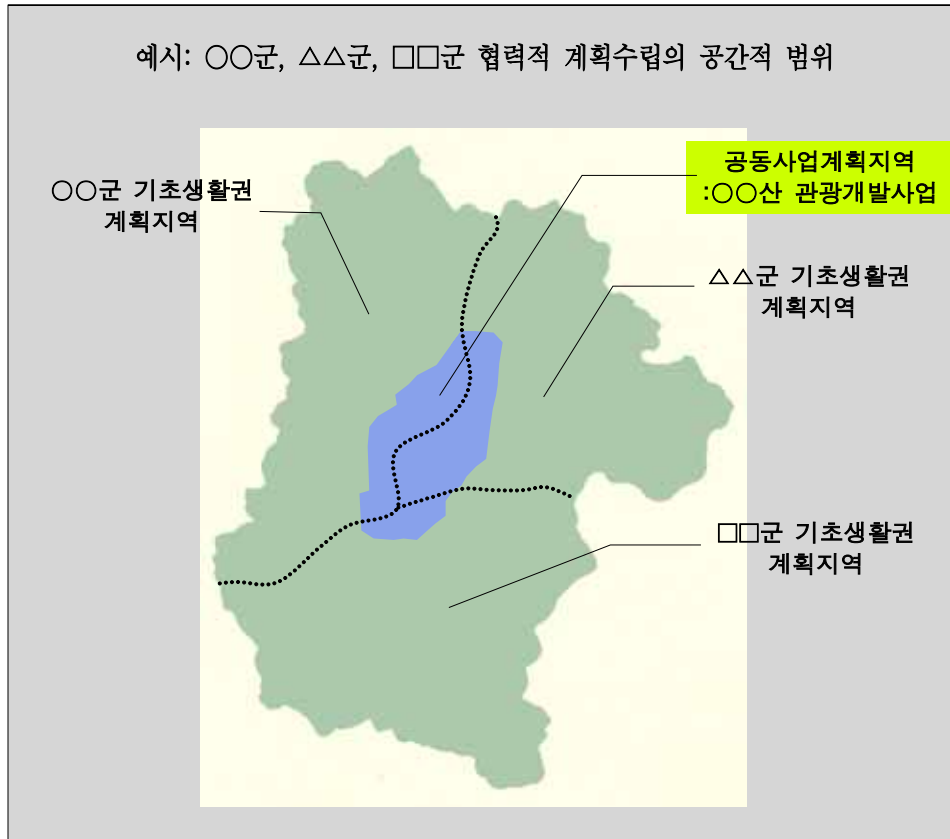
날 짜	주 요 내 용	비 고
0년 0월0일	계획수립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에게 계획수립 설명
0년 0월0일	계획수립지원단 구성 및 간담회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
0년 0월0일	계획수립 지원단 설명회 개최	지원단에 계획수립 취지 등 설명
0년 0월0일	...	
0년 0월0일	계획시안 공청회 개최	주민대상 공청회 개최
...		

3) 계획수립의 범위

- 계획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며,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5년(2010년~2014년)으로 함
- 2개 이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계획 내용 전체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구역 전체

가 공간적 범위가 됨

-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사업에 한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공간적 범위를 별도로 명시



2. 기초생활권 여건분석

- 기초생활권 여건분석은 지역발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의 현황 및 주민수요 등을 파악하고, 관련계획의 검토와 잠재력 등을 분석하는 것임
- 기초생활권 여건분석은 기초생활권 일반현황, 주민수요 분석, 관련계획 검토, 잠재력 분석, 계획과제 도출 등의 목차로 구성

1) 기초생활권 일반현황

- 기초생활권 일반현황은 해당지역의 자연적 여건, 인문·사회적 특성, 지역 보유 자원, 경제 및 산업적 특성, 생활환경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상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현상 이면에 있는 요인과 메카니즘, 해결 필요성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정리
- 기초생활권 계획권역내의 자연지리, 인문사회, 지역자원, 경제산업 등을 가능하면 관련 핵심지표 내지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정리
- 특히, 기초생활권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권역이 되는 시·군을 전체 대상으로 하여 일반현황을 분석·정리해야 하며, 개별 시·군으로 구분하여 나열해서는 안됨

(1) 자연지리

- 기초생활권 계획권역의 지형, 지세, 하천 등 자연환경과 대내외적 차원에서의 지리적 위치 등 위치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들 특성에 비추어본 개발의 제약조건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정리

예시 : 자연지리 현황

■ 위치적 특성

- ○○기초생활권역은 서부경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산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뒤떨어진 편이나, 최근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다소 제고됨

■ 면적 : ○○km²

※ 위치 및 지형도 삽입 권장

■ 자연환경

- 하천 : ○○강 지류가 권역을 관통하고 있어, ○○, ○○, ○○ 등 수변 생태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나, 부적절한 하천 관리로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COD, BOD가 ○○ 수치에 달하고 있어 하천정비사업으로 ○○강 하천을 활용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지세 : 북쪽으로 ○○산, 동쪽으로 ○○산이 위치하여, 북동지역은 고원지대의 기후 특성으로 인한 ○○ 특산품의 재배 가능성이 높음
- 지형 : 서쪽으로는 ○○평야, ○○평야가 위치하고 있으며, ○○간척지대와 연결 낮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음

(2) 인문사회

- 인구규모(절대인구수 변화추이 및 분포변화 등), 인구증감(인구증가율, 인구 증감요인,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연령·성·학력·취업형태별 인구비중, 고령화 지수 등)를 중심으로 분석·정리
- 외국인 노동자 증감 추이 및 다문화 커뮤니티 형성 추세 등을 포함한 기타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지역특성도 동시에 제시

예시 : 인문사회 현황

■ 인구 규모 및 증감

연도	세대수 (호)	인 구 (명)			인구밀도 (명/km ²)	인구 증가율 (%)
		계	남	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 기타 사회적 측면

- 최근 ○○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되어, ○○지역의 경우 다문화 가정 비율이 ○○%로 매우 높게 나타나, 다문화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적 고려필요

(3) 지역자원

- 기초생활권 계획권역내 소재하는 자연자원,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지역특산품 등의 분포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고, 활용가능성과 잠재력을 파악
 - 자연자원 : 수변자원(하천/호수/바다), 산악자원(산맥/산), 생태자원(생물종/천연기념물) 등
 - 역사·문화자원 : 역사자원(유무형 주요 문화재),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지역축제·문화행사 등
 - 관광자원 및 지역특산품 등 : 관광(단지) 현황, 주요 관광사업체(숙박시설, 유원시설, 테마파크, 국제회의장 등), 지역특산품 등

- 다만, 자연지리에서 분석한 하천, 지형, 지세는 권역 전반의 일반적인 지리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라면, 자연자원은 구체적인 자원 현황을 명기하는 것임

예시 : 지역자원 현황

- ○○기초생활권역의 하천의 유로 연장은 112km이며, 국가하천 ○○천, 지방1급 하천 ○○천, ○○천, ○○천, 지방2급하천 ○○천, ○○천, ○○천 등이 있음
- ○○천에는 멸종위기종인 ○○(○○부근)과 ○○(○○지점)이 출현하기도 하여, 생태자원이 풍부함

(4) 산업 · 경제

- 산업의 성장과 침체,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계획권역의 경제 · 산업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잠재력을 파악
 - 총량경제지표, 고용지표(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추이, 제조업업종별 고용규모 및 고용구조의 변화, 상업 ·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추이 등)와 산업구조(산업분포, 농림업구조 특성, 제조업 고용축적 정도와 업종별 비교우위성 등)를 분석
 - 특히, 기초생활권의 주력 산업(업종) 또는 기초생활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업종) 파악에 중점

예시 : 지역자원 현황

■ 지역산업구조(사업체수) 변화추이

구 분	전 국		해당 시도		기초생활권역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농림어업	(**%)	(**%)	(**%)	(**%)	(**%)	(**%)
광업· 제조업	(**%)	(**%)	(**%)	(**%)	(**%)	(**%)
서비스업	(**%)	(**%)	(**%)	(**%)	(**%)	(**%)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 지역산업구조(종사자수) 변화추이

구 분	전 국		해당 시도		기초생활권역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농림어업	(**%)	(**%)	(**%)	(**%)	(**%)	(**%)
광업· 제조업	(**%)	(**%)	(**%)	(**%)	(**%)	(**%)
서비스업	(**%)	(**%)	(**%)	(**%)	(**%)	(**%)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유형 A: 연천군의 산업·경제 특성

-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규제로 인해 천혜의 자연과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과 군부대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이 강세를 보임. 생태관광도시, 안보관광도시로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가능성을 갖고 있음

유형 B: 제천·단양·영월의 산업·경제 특성

- 과거 호황을 누리던 시멘트 산업의 쇠퇴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편임. 최근에는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산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음

유형 C: 거창·함양·산청의 산업·경제 특성

- 3개 시군 모두 1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음. 거창군은 사과, 축산업이 발달했으며 함양군은 쌀, 양파, 사과 생산량이 많은 편이고 산청군은 쌀과 생약초 생산이 활발함. 거창군의 경우 석재 산업과 승강기산업 밸리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5) 생활환경

-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각종 생활환경시설과 의료·복지·교육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주택보급률, 상하수도 보급률, 의료시설 및 인력, 보건시설, 교육시설, 공원 확충 정도 등의 관련 핵심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정리

예시 : 생활환경 현황

- 주택 : ○○기초생활권역의 주택수는 ○○○호로 주택보급률은 ○○%이며, 전국 대비 (or 해당 시도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상수도 : ○○기초생활권역의 상수도보급률은 ○○%로 전국 평균 ○○%(or 해당 시도 대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은 향상되었으나, 지역 연계 가로망 구축이 미흡하여 ○○~○○ 신규 구간에 대한 확충이 요구됨

도로별	노선(개)	총연장(km)	포장도(km)	비고
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				21호
지방도				606, 607호
시·군도				6, 8호

- 철도 : ○○선이 통과하고 있어 여객 및 화물수송이 용이하나, 기존 노선의 협소와 노후화로 인하여 향후 지역의 인구 수송 및 물류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 복선화 사업이 필요함
- 교육시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유치원	원수					
	원아수					
	교원수					
초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중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6) 소생활권 분석

- 기초생활권 계획권역내에서 생활권별로 지역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정주체계, 교통망체계와 관련된 각종 지역활동의 입지체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생활권역으로 구분
- 소생활권 구분은 기존 시·군관련 계획 등을 참조하여,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주민이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구분하되 거점(1차 중심지)은 배후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시함

참고 : 생활권이란?

-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리적 범위를 말함
 - 생활권에서는 사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동태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데, 생산적인 유동(流動)으로서의 통근·통학권이나 소비적인 유동으로서의 쇼핑·오락권 등이 있음

- 시·군 공동계획의 경우에 소생활권 구분은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실제 거점과 배후지를 파악하여 구분함
 - ※ 소생활권 구분은 해당 지역의 도면을 활용하여 지도상에 표시함

예시 : 소생활권 구분



2) 주민수요 분석

- 기초생활권 계획권역의 문제점과 잠재력, 발전방향과 핵심과제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민수요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제시

- 주민수요조사는 설문조사, 지역포럼, 인터넷 제안 등을 취할 수 있으며, 기존 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재분석·정리하여 제시할 수도 있음
-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지역에 대한 주민의 인식(문제점과 잠재력), 지역주민이 바라는 기초생활권의 발전방향, 중점추진과제 및 사업 등을 포함

개발수요 조사 방법

방 법	개 요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 집단을 대표할 만한 적절한 규모의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 자문위원들이 회합을 통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방향을 설정에 필요한 지역의 현안, 요구, 자원들을 도출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선정하고, 지역현안 또는 개발요구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 ■ 방문, 우편, 전화, 혹은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음
핵심인물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핵심인물이나 전문가로부터 지역 현안이나 중요한 개발요구에 대한 의견을 청취(예: 지역사회 내 각종 위원회, 마을 이장, 주요 직능단체 대표, 주요 농업생산자 단체장 등). ■ 공식적 지위로 인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인물과 비공식적이지만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 전문가 등을 주의 깊게 선정하며, 핵심인물과의 개별 인터뷰 또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음
기존 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개발수요 분석 자료에 덧붙여 다른 방법의 조사결과도 함께 분석할 수 있음

3) 관련 계획 검토

- 기초생활권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시·군계획,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구상 등 각종 지역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기초생활권 계획 내용에 반영 여부 등을 검토

유형 A: 연천군에서 검토할 주요 관련 계획

- 연천군에서 검토할 상위 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년)' 및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경기 2020: 비전과 전략(2002. 12)',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2003~2012년)' 등이 있음
 -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는 비 수도권지역과는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천군 내부 계획으로는 '(2020)연천군 기본계획', '연천 vision 2010' 등이 있음.
- 단위 사업 계획 가운데, 접경지역인 연천군에서 비중이 큰 계획 중 하나는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주한미군공여지 종합발전계획'임
- 또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2004-2010), 고대산 평화체험 특구조성사업(2004-2010), 임진강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2007-2012),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사업(2009-2011),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2007-2012) 등의 준공은 관광인구를 증대시키려는 연천군에 있어서는 잠재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연계가 필요

4) 잠재력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기초생활권 일반현황, 주민수요 분석, 관련계획 검토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 행렬표를 사용하여 기초생활권 계획권역의 잠재력을 분석하여 계획과제를 도출

(1) 잠재력 분석

- 기초생활권 계획권역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SWOT 분석 행렬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정리

참고 : SWOT 분석이란?

- SWOT 분석기법은 기업이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는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분석하는 기법 중의 하나로서 마이클 포터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필립 코틀러는 국가의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SWOT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업이 시장을 분석하는 것처럼 국가도 자국은 물론 경쟁상대국의 SWOT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여기서 SWOT는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약자로서 강점은 내부적인 비교우위성 내지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약점은 내부적인 취약성을 의미함

그리고 기회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기회요인을 나타내고 위협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초래될 위협요인을 말함. 외부환경에 의한 기회와 위협은 각 지역이 처해있는 내부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남

즉, 한 지역에서는 그 내부적 비교우위성이나 잠재력과 취약점에 비취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부환경이 내부적 우위성이나 잠재력과 취약점이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음

따라서 각 지역이 처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SWOT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기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내부적 강점과 외부적 기회요인이 서로 결합되는 경우(Leverage)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며, 외부적 위협요인에 의해 내부적 약점이 공격받을 경우(Problem)에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

내부적 약점으로 인해 외부적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Constrains) 이것은 지역에 대하여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내부적 강점이 외부적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Vulnerability)에는 경쟁지역에 의해 내부적 강점마저 붕괴될 소지가 있음

< SWOT 분석 행렬표 >

		내부환경요인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외부환경 요인분석	기회요인 (Opportunity)	(Leverage)	(Constrains)
	위협요인 (Threat)	(Vulnerability)	(Problem)

(2) 계획과제 도출

- 지역의 잠재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권역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
- 계획과제는 지역수요를 감안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관련계획 및 기본구상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

예시 : 계획과제

-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 필요
- 중등교육 관련 전문교육서비스 확충
- 지속적인 인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촉진
- 방치되어 있는 환경자원의 활성화
- 문화예술진흥의 필요

3. 기본구상

- 기본구상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초생활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여건 분석을 토대로 해당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정립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적 작업에 해당
- 기본구상은 기초생활권 발전의 기본방향, 발전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의 목차로 구성

1) 기본방향

- 앞의 SWOT 분석결과와 도출된 계획과제, 기초생활권의 기능과 위상 등을 바탕으로 기초생활권 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시
- 특히, 기본방향은 기초생활권 계획이 지역내 경제수준 및 생활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임으로 계획권역의 종합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제시

예시 : 기본방향

-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성장
- 주민의 교육열 충족과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 종래의 지역산업의 특화와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
- 지역자원을 통한 녹색성장의 추구

2) 발전 비전 및 목표

□ 발전 비전

- 기초생활권발전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해당지역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상을 종합·압축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표현

예시 : 발전비전

- "환경과 경제발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비전의 요건

- 현재 시제의 긍정적인 문체로 기술함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읽는 독자가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기초생활권 지역의 다양한 인구 계층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이 통합되어야 함
- 성취하려는 목표 수준이 높고 탁월하다는 점을 암시할 수 있어야 함
- 무엇보다 주민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함

비전 설정 과정의 성공 요인

-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함
- 지역의 지도자들이 참여해야 함
-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지역 내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함
- 비전설정 과정은 학습과정이다. 처음부터 결론을 갖고 시작할 수 없다.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 발전 목표

- 기초생활권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5년 이내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전목표를 설정하여 제시(3-5개)
- 핵심적인 발전목표 각각에 대하여 의의와 실현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설명

예시 : 발전목표

-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친환경적 산업에서 육성
 - 환경친화적인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내 환경의 질 개선
 - 기술개발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을 통하여 기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삶의 질이 높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친수공간과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실현
 - 녹색에너지를 활용한 주거공간의 조성
- 교육의 도시로 육성
 - 의료, 복지, 교육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인재 유출을 방지
 - 지역내 주민의 교육열에 부응하여 영어 등 방과후 교육 강화

□ 공간구상

- 기초생활권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에 설정된 추진전략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역점사업들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

작성시 고려사항

- 계획권역내 소생활권의 발전방향과 개별 사업들의 위치를 표시
 - 1/40,000 지형도에 행정동·읍·면 경계 구분된 지도 사용
 - 구체적인 사업지 위치의 명기가 어려운 경우 도면에 사업명을 명기
- 소생활권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단독사업과 협력사업을 구분하여 범례로 표시
 - 개별 시·군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단독사업과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분류

예시 : 공간구상도



3) 추진전략

-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및 수단이 무엇인가를 부문별로 강구하여 제시
 - 부문은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경제, 보건·복지·교육, 환경, 수자원·교통, 기초생활 기반 확충 등으로 구분 가능하나 계획권역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이 때, 부문별 세부사업계획을 대표하면서 각종 세부계획 및 정책수단들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

예시 : 추진전략

- 문화·체육·관광부문: 역사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 제고
 - 전통 역사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한 지역의 관광가치 향상
 - 생활체육기반 조성을 통한 시민의 여가 향상
- 농림·수산부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생산
 - 생산이력제 도입을 통하여 지역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 농림수산 인프라 및 기반조성
- 산업·경제부문: 특화산업과 신산업의 조화로운 성장
 -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형 지역경제로 발전
 -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
- 보건·복지·교육부문: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복지도시의 구현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만족을 실현
 -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환경부문: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창조
 - 푸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체계 확립
 - 저탄소 에너지건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탄소절감
- 수자원·교통부문: 편리한 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체계 형성
 - 기존 도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
 -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
- 기초생활기반 확충부문: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기반의 구축
 - 특수 및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구축
 - 생활여건 개선,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구축

4. 부문별 사업계획

부문별 사업의 개요

- 부문별 사업계획은 앞에서 제시한 기본구상을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의 핵심부분에 해당
- 부문별 사업계획은 ① 문화·관광·체육, ② 농림·수산, ③ 산업·경제, ④ 보건·복지·교육, ⑤ 환경, ⑥ 수자원·교통, ⑦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7개 부문으로 구성
- 각 부문은 다음과 같은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구성

부문	부처	포괄보조 사업	사업재편 이전 세부사업
문화·관광·체육	문화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관광자원 개발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박물관, 문예회관 등(18개) ·문화도시, 관광지 개발(8개) ·운동장, 수영장 등(11개) ·문화콘텐츠센터 등(8개)
	문화재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지역문화유산개발 등(5개)
농림·수산	농림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어업기반정비	·도농교류활성화 등(13개) ·밭기반 정비 등(13개)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산림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휴양림, 수목원 등(4개)
산업·경제	지경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섬유판선산업 등(10개)
	중기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보건·복지·교육	복지부	청소년시설 확충	·공부방, 수련시설 등(2개)
환경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생활용수공급 등(4개)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 등(2개)
수자원·교통	국토부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연안정비 등(3개)
		대중교통 지원	·물류단지 지원 등(5개)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가덕대교 건설 등(6개)
		지역거점 조성지원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2개)
기초생활 기반확충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개척지구 지원 등(3개)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환경부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개)	

주 : * 표의 5개 사업은 시군구자율편성사업, 나머지 19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자율 편성사업

- 부문별 사업계획은 부문목표, 세부사업계획, 사업총괄로 구성

부문별 사업 계획 수립의 원칙

-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 중에서 해당 부문별로 2010년 이후 공모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사업의 유무를 파악하되,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우선 반영
 - 물론 이전부터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 2010년 이후에야 완료되는 경우에도 발전계획에 반영
 - 계획수립 시, 24개 포괄보조사업별로 소관 부처의 가이드라인 및 재정 배분상의 쉐어링, 매칭펀드 비율, 그리고 네거티브 사업 목록 등을 감안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사업은 신청이 불가하며,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는 현행 내역사업(부록 3) 및 각 부처의 포괄보조사업 지침을 참조
 -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액지원 사업(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농공단지 조성, 문예회관 건립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합보조율이 적용
 -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통합보조율을 적용하되, 기존에 추진하던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시까지 종전 보조율을 적용하며, 다만, 통합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소요의 경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협의·조정
 - 특히 기초 생활기반 확충부문의 경우는 해당 기초생활권이 도시활력증진지역인지, 일반 농산어촌인지, 혹은 특수상황지역인지에 따라 참고할 가이드라인 제공 부처가 달라짐
 - 도시활력증진지역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일반 농산어촌의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특수상황지역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임
 - 성장촉진지역의 경우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원 대상 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자원배분시 관할 구역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 ※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포괄보조사업(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예산신청 한도내에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이 가능

1) 문화·관광·체육 부문

-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공간, 시설의 확충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 기회를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
- 이 부문의 사업군은 5개로서 문화부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지역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을 비롯해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해당
- 문화·관광·체육 부문의 단위(단독 혹은 협력)사업은 해당 부문의 개별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한 후에 사업계획을 작성
- 문화·관광·체육 부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각각을 단독사업과 협력사업으로 구분)
- 계속사업, 신규사업, 사업총괄로 구분, 각각의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가급적 표준작성절차 및 내용준수를 권장

(1) 부문 발전 목표

- 지역 현실을 대표하며 설정한 비전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시점과 계획한 사업을 실행한 후의 차이, 즉 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끼친 파급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형태로 발전 목표를 표현함
- 여러 사업들의 직접적 수혜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에 걸쳐 일어날 사업의 간접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것이어야 바람직함

발전 목표의 요건

- 설정한 비전에 비추어 볼 때 내용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
-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측정가능한 지표로 표현되어야 함
-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함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 지역발전회계 사업들을 고려하면 문화·관광·체육 부문의 사업군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시

- 이 사업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부문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계획 가능

문화·관광·체육 부문 사업 범위 예시

사업군	사업(예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원의 보존 및 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등) •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한 시설 건립(문예회관, 문화예술인기념시설 등), 민자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시설 건립 • 주민 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기회 확대 프로그램(예: 문화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등) • 지역 출신 문화인 기념시설(공원, 전시공간 등) 조성 •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활용: 비엔날레·엑스포 등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 지원 • 폐교, 폐정미소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여가시설 리모델링 • 공공 시설·장소의 예술작품 설치·전시 •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사회 단체와 학교 공동 세대간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찾아가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예: 이동도서관)
관광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역사문화유산, 명승지 보전·관리 •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증진·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관광부문 경영체 연합 마케팅 및 공동 품질관리 • 아름다운 자연·문화경관 가꾸기 • 문화관광 답사 코스 조성 • 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조직화 • 지역 관광자원 조사 • 공원 등 관광 매력물 조성 • 폐산업시설을 이용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예: 포천의 폐채석장, 아산의 폐철도 등 문화창작공간 조성)
체육진흥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 체육 생활화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 지방 체육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지방문화 산업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경영지원 시설 건립 • 지역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상품 개발 지원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문화재 보수·정비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 예시한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조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기초생활권 문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팁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시민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조성사업	·문화의집(문화센터)조성사업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실내생활체육관 조성사업
·테마가 있는 전시관(문학관) 조성사업	·문화 사랑방 조성사업

√ 기초생활권 문화시설과 관련해서는 광역 또는 도시전략시설 예를 들면 도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세계적 OO 박물관(미술관) 등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 설치 사업은 광역 또는 초광역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농연계형이나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농산어촌에서는 폐교나 농·어업 관련 시설 등이 리모델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시에서는 폐산업시설인 공장(안양의 유유산업이전적지 활용)이나 이전한 공공시설이 사업대상이 되는 등 전용시설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 기초생활권 문화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한 팁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박물관, 도서관 등)	·공교육연계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민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문화바우처 등)	·문화쿠폰지원
·온라인 문화서비스 제공 (정보통합서비스)	·문화버스운영
·문화(스포츠)클럽 및 시민예술창작지원	·문화네트워크 구축

√ 시설 설치보다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 도농연계형 지역에서 혹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2개 이상 기초생활권이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기초생활권 지역문화 보존 및 계승사업에 대한 팁

·향토문화자원 조사 및 정리 ·문화유산(인물) 발굴 및 정비 ·무형 문화재 지원 및 전승 ·전통음식·복식 등 개발 지원	·마을 축제 복원 및 활성화 지원 ·마을 이야기(스토리텔링) 조사 정리 ·마을생활유물(정자, 빨래터, 우물 등) 조사 정비 ·한옥(초가집)등 조성 지원 ·문화예술단체(농악대 등) 지원
<p>√ 대체로 농산어촌형 기초생활권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사업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도시형 기초생활권에서도 축제 활성화사업이나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p> <p>√ 도시형 기초생활권에서는 문화산업 일환으로 광역적인 규모로 비엔날레 관련 사업 또는 영상문화산업, 박람회, 엑스포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 구상할 때는 관련 분야에 대한 시장성, 지역의 문화예술·역사적 및 산업적 여건, 접근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비용편익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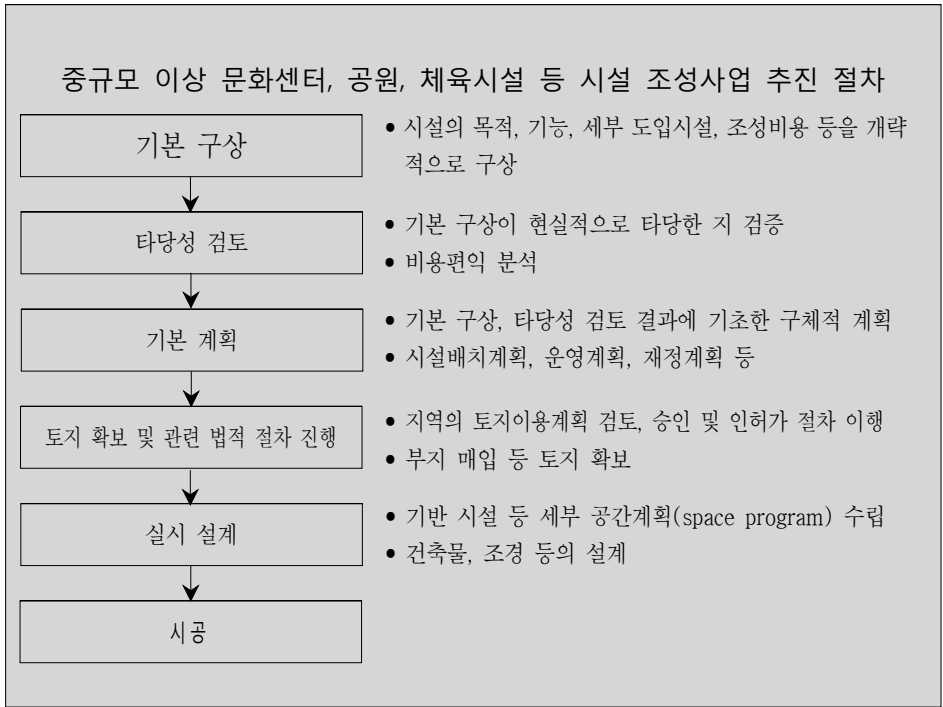
○ 대체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

- 반면에,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농연계형이나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공공부문이 투자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 상존

- 인구 규모가 작고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일수록 문화시설 건립 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려

○ 규모가 큰 대규모 문화시설을 정밀한 검토 없이 새로이 건립하기보다는 시설 이용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투자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존 시설의 재 활용 및 복합화 등을 고려

- 가급적이면 지역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폐교 등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을 개조함으로써 비용을 절약
- 시설 조성 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영재원 조달 방안을 시설 확충사업을 계획할 때 미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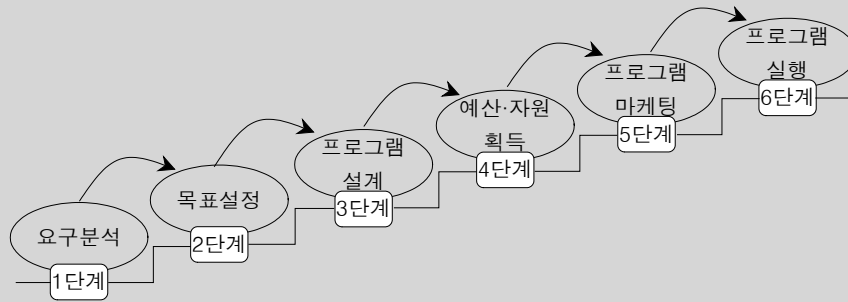
사례: 금산군 문화복지 시설 - 다락원

- 금산군 다락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들을 하나의 대규모 시설에 집중시킨 것임. 여러 중앙 정부부처와 그 산하기관들로부터의 보조금 사업들과 금산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합하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최근 지방행정 혁신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농촌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매우 큰 시설임에도 현재 시설 이용률이 매우 높아, 운영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 다락원은 부지 면적 1만 970평에 건축 면적 2,000평 규모의 건물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2000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3년 반 만에 준공한 이 시설의 건축 비용은 약 256억 원 정도였다.
-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수용시설을 갖춘 다락원의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약 26억 원 정도이다.
- 다락원을 운영하는 인력 규모는 총 22명이다. 다락원 시설 가동률은 100%임.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공연에 활용되고 있다. 회의실들은 역시 주민들에게 대여되며, 실비를 받고 금산군 지역 밖의 단체들의 행사에 대관하기도 한다. 정확한 날짜를 정해 사전에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장소를 빌릴 수 없을 정도로 다락원 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다.
- 세부도입시설 : 생명의 집(문화회관), 건강의 집(보건소), 만남의 집(관리동 및 평생학습과), 문화의 집(문화원), 장애인 및 청소년의 집(상시운영프로그램실, 방과후 교실, 소교육장)



- 문화여가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에는 잠재적 수요자들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밀한 준비
 -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운영 과정에서 자원 부족이나 낭비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 잠재적 수요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본래 목적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문화여가 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절차



- 요구분석: 프로그램 수요자의 규모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설문조사,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목표설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지식, 태도, 행동,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한다.
- 프로그램 설계: 커리큘럼, 장소, 시간, 자금, 강사, 운영인력, 홍보·마케팅 수단 등 동원할 수 있는 제반 자원들을 확인하고 최적 수준에서 자원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를 설계한다.
- 예산 및 자원 획득: 지자체의 예산, 국비지원 가능성, 참여자의 자부담, NPO 등의 자원봉사 또는 기부금 등 확보가능한 자원과 기타 자원들을 확인하고 동원한다.
- 프로그램 마케팅: 지역사회 대중매체, 지자체 웹페이지, 플랭카드나 소식지, 행정조직 계통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수단 중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다.

참고: 인적 자원 유치 - 문화예술의 중심지

※ 위축되어 가고 있는 마을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음.
다만 유명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을 지역으로 옮겨 놓는다고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란 점을 고려해야 함. 그를 둘러싼 소프트웨어와 지역의 문화가 접목, 융화되어야 성과가 나타남.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에 걸맞은 인재와 테마를 선정해 적절한 공간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

□ 문화·예술분야의 유명인들이 지역에 등지를 마련하도록 유도하여 인적자원 확보를 비롯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지역의 인지도 향상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둔 사례

○ 화천군 감성마을(이외수)

- 위치 및 면적: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1만여 평(순차적으로 개발 중)
- 기본방향: 문학 집필 공간과 전시 공간, 예술의 기본 근간이 되는 감성을 자극하고 확대하는 자연과 인간과 문학의 열린 공간
- 주요 시설: 집필실, 전시실, 주거용 황토방, 생태주차장, 산책로 등
- 효과

- 그동안 군부대 장병 면회객 위주의 상권이 형성돼 오던 다목리 지역이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주체가 이외수 감성마을을 찾는 관광객 위주로 전환
- 연간 4천여 명의 독자 방문 → 지역경제 활성화
*감성마을을 찾는 독자들은 그의 강좌와 특강은 무료로 듣지만 숙식은 산 아래 마을인 다목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지역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함.



사진출처: 경향닷컴(2006년 1월1일자)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의 지역 유형별 방향

도시형	농산어촌	도·농 연계
전략적이고 전문화된 문화시설 도입	문화복지·커뮤니티·도농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소규모, 다기능 문화시설 구축(리모델링 중심)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중간성격의 시설 구축(규모가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 기초 관광자원 개발

- 많은 기초생활권 지역에서 관광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잠재력 있는 경제활동 부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

☞ 있는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의 사례

관광자원조사 문화유산(유적, 건축 등) 생태자원(갯벌, 나비, 해양 등) 자연자원(숲, 강, 산, 섬 등) 마을의 역사(안동, 양동, 낙안 등) 한옥(전주한옥마을 등)체험 마을길, 골목길(제주올레길 등) 경관자원(국립해상공원 등)	설화(갯바위 등) 등 문화시설(전시관, 박물관 등 조성) 역사적 인물(봉평 이효석 등) 농사짓기 등 전통·산업(농촌체험, 농장체험 등) 전통음식(음식관광) 전통축제 템플스테이 지원
√ 도시형은 도시자원(업무지구, 상업지구, 문화시설 및 관광시설, 각종 행사, 교통, 숙박 등 관광편의시설 등)을 활용하여 도시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 농산어촌은 자연·생태자원 및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갯벌체험, 녹색농촌체험, 사과농장체험, 휴양림 등), 휴양·레저 상품(레프팅, 철선여행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 √ 도농연계형은 농산어촌과 도시자원을 적절히 연계하면서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 구상	

☞ 자원이 없는 경우 관광자원 개발의 사례

꽃길(꽃 동산 조성)	관광단지개발 및 테마파크 개발
축제개발(화천 산천어축제 등)	폐산업시설 이용 랜드마크 조성
비엔날레, 박람회 기획(청주공예비엔날레)	전략 문화시설 및 공원 등 설치
공공(환경)디자인 설치(국화마을 조성)	레저단지조성
마을 경관가꾸기	스포츠 연계 관광상품개발

√ 도시에서는 폐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특별한(지역의 특성과 무관하여도 좋다) 관광 매력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개발

√ 농산어촌에서는 지역의 자연·생태·문화·역사적 환경을 이용한 관광단지 및 프로그램을 개발

√ 특히 문화관광 축제의 경우, 농산어촌에서는 계절 및 절기, 농식품과 관련된 전통 마을 축제를 복원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도시의 경우는 책 박람회, 영화제 등 이벤트성이 강한 축제로 기획하여 개발

☞ 지역간 연계 관광자원 개발의 사례

서남해안 관광벨트 유교문화권 관광벨트 동해안 관광벨트 지리산 관광벨트	연계 관광코스 상품개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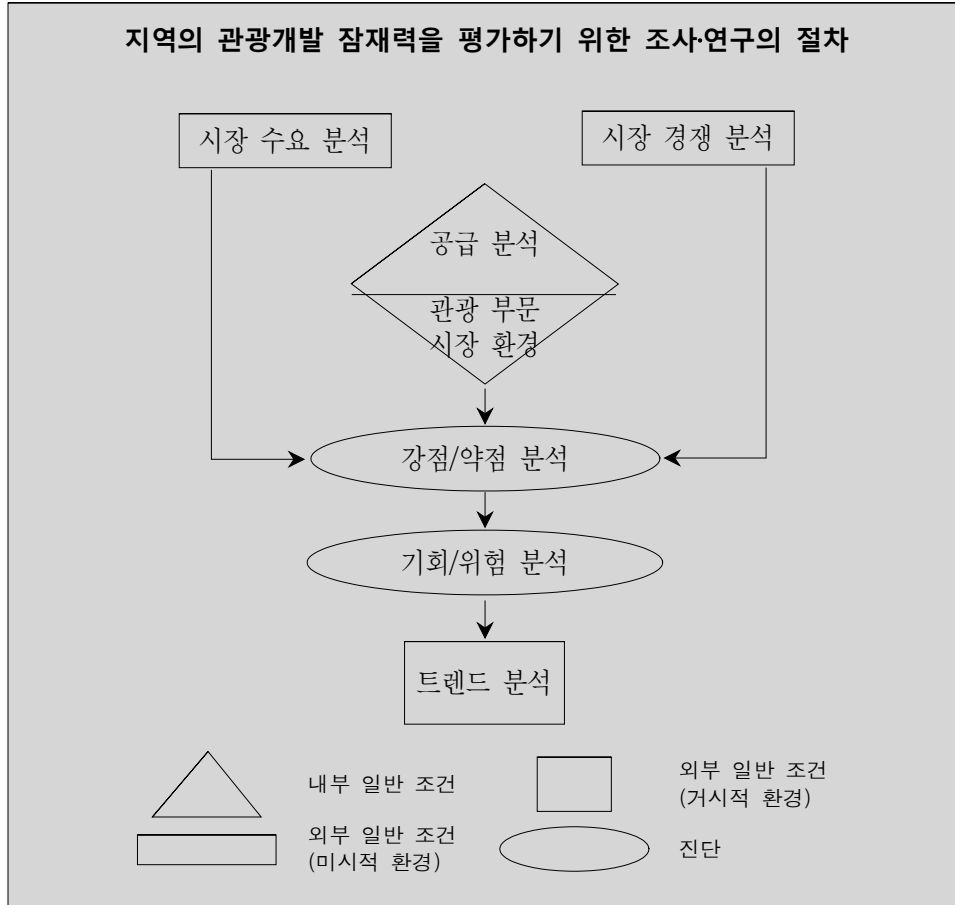
☞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추가적 사업의 사례

관광안내소 설치 및 시스템 구축 관광시설(숙박, 음식점 등) 및 서비스 개선 관광복지 개선(안전, 위생, 접근성 등)	관광 주체 조직화 및 교육 관광부문 서비스 품질 관리 홍보·마케팅
---	--

○ 관광활동은 어느 한 장소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의 다양한 장소들의 연결망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관광자원들 간의 조밀한 연결을 통해 시너지를 낳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지역의 관광 활성화 위한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지역의 관광개발 잠재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 지역의 어떤 매력물이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는가?
-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가?

- 지역의 관광 매력물들과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관광활동을 낳는 소매 상품 또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며, 그것들은 어떤 유형의 내방객들에게 효과를 발휘하는가?



참고: 일본 나가노현 오부세정의 경관 가꾸기 활동

- 오부세정은 일본 나가노현의 시골에 위치한 작은 지역이다. 밤나무와 아스파라거스 재배가 활발한 곳이다. 밤소주를 만드는 기업이 중심이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가꾸기를 주도했다.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를 위해 밤나무로 나무벽돌을 만들어 인도를 조성했다 걷는 길 곳곳마다 그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 안내판을 설치하여 재미있는 산책이 되도록 유도했다, 정원이 아름다운 집들은 open garden 몇 번이라 번호를 부착하여 방문객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주민, 향토기업, 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환경디자인 협력 기준'을 제정했다. 그 주된 경관 관리 방향은 '오부세정에 살거나 방문하는 모든 이를 위해 전통적·향토적 방식으로 경관을 꾸민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오부세정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경관을 고려한다.'는 인식을 모든 주민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 현재 오부세정을 찾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은 무려 60%에 달한다. 이토록 높은 재방문율의 배경에는 주민들이 나서고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오래 동안 가꾸어 온 아름다운 경관이 있었다.



-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경관 관련 사업을 계획할 때 고려할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어느 특정한 한 곳의 경관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해야 함.
- 경관을 가꾸는 것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긍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4) 사업계획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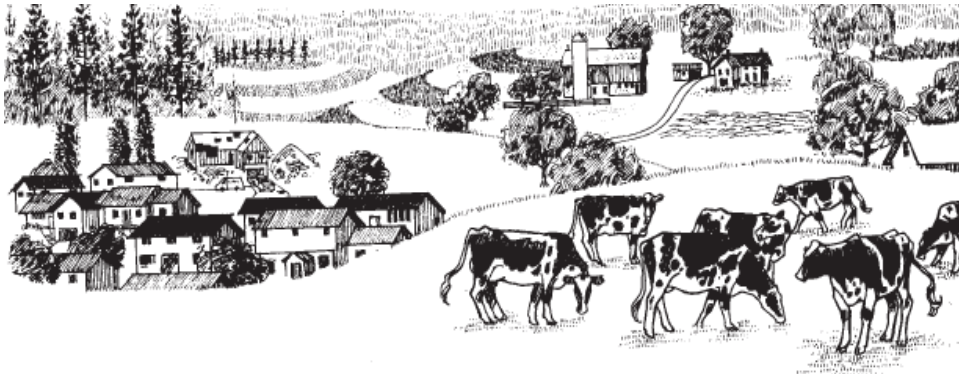
- 사업계획 작성요령에 따라 개별사업마다 다음의 계획내용을 작성한다.
 - 사업개요 : 사업명, 필요성, 성과목표, 대상지 위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시행주체,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사업효과 : 개발효과
- 2개 이상 기초생활권 시·군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인 경우,
 - 복수지역 사업의 공간적 범위, 연차별 투자계획의 시·군별 투입자금 구분을 기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일에
비용과 제약조건이 없을 수 없다.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탐색하고 가치를 공유한 상태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획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활용해야 한다.
- 지역이 보유한 자원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지역 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해야 한다.
- 서로 다른 견해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자료, 트렌드, 지도, 공공기관의 문서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

- 엄청난 양의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민, 단체, 공무원 등 많은 주체들이 그 과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계획과정을 주도하는 이의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을 것이다. 계획 수립에 있어 전문가를 활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금전적 비용이 뒤따른다.
- 수립한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는 명확한 수단이 필요하다. 계획과 실행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계획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명확한 수단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 단독사업

- 시·군이 문화·체육·관광 부문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 및 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단독사업의 경우에 주요 계획사항을 다음의 세부사업계획 양식에 따라 작성
- 여기서, 복수 시·군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 각각 추진하는 단독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사업계획 양식 : 신규 단독사업

■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시·군이 기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을 기술
예 : 돌문화예술촌 조성 등

② 필요성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필요
예 : 분산적인 관광 마케팅을 지양하고 지역의 마케팅 효과 극대화 필요

③ 성과목표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적목표와 성과목표를 제시하되, 가급적 성과목표까지도 정량화된 형태로 기재하고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

■ 사업내용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사업 대상지의 위치(번지)를 지형도에 가급적 표기
예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⑤ 개발여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역특성, 지역여건의 구비여부, 유사 및 동일 사업의 과거 추진실적 등을 제시
예 : 160여개의 석재사업체가 밀집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한 문화여가 공간을 창출하여 유리한 지역적 여건을 형성

■ 집행계획

⑥ 사업내용

- 사업의 기능,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세부내용, 운영방식 등을 명기
예: 체험 및 창작 프로그램 제시 및 조건의 시설, 제3색 방식의 운용 등

⑦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의 경우는 00년, 다년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시작시점(00년 00월)에서 완료시점(00년 00)을 기술
예: 단년 사업인 경우 2010년, 다년 사업인 경우 2010-2012년

⑧ 시행주체

- 사업주체를 지방, 민간, 민관합동 등으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명기
예: 자치단체, 민간, 민관합동, 기타 등으로 시행주체를 명기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총투자액 포함한 연도별 투자금액과 재원조달 방안을 국비(균특, 일반등),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고 구성비율(%) 표시
- 금액 단위는 백만원
예: 50억인 경우는 5,000으로 표기

⑩ 사업간 연계방안

- 해당사업의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지역내 타부문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기술
- 연계사업의 내용과 위치를 가급적 도면으로 제시

■ 사업효과

⑪ 개발효과

- 예상되는 개발효과를 제시하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생산유발 효과, 고용증대 효과, 지방세증대 효과, 지역발전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
예: 고용창출 : 1200명, 소득증대 120% 등

< 돌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계획 >

① 사업명 : A시 돌문화예술촌 조성

② 필요성 및 목표

- 90년대 초까지 지역경제를 선도하였으나, 중국 석재산업 성장과 환경성 논란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산업인 석재산업을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석재를 활용한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필요
- 석재산업과 연계된 창작·전시·판매·체험공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이 높으나, 석재와 관련된 문화여가공간시설 미비
- 지역 고유의 자산인 석재를 활용한 돌문화예술촌의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과 방문객이 손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함

③ 성과목표

- 실적목표 : 연간 관광객 50만 창출
- 성과목표 : 연간 인구 100명 유치

④ 사업 대상지 위치: A시 B읍 ○번지 일대 부지면적 29,800㎡

⑤ 개발여건

- A시 석재산업은 장묘석과 조각석, 비석 등 다양한 석재 생산품을 제작·유통하는 중심지임
 - 중국 석재산업의 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하나, 석재산업은 건축자재 고급화, SOC 분야의 지속적 투자, 장묘문화 변화 등으로 여전히 시장성이 높은 산업임
- B읍에는 약 160개의 석재사업체가 밀집하여 석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으나, 문화여가공간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편임
 -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인 석재 전시·판매·체험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
 - 특히 시민과 예술가의 석재창작공간 마련을 통해 비석 위주의 기존 석재 생산품을 보다 다변화하여 고품질의 석재 생산품이 제작·유통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B읍에 기초성되어 있는 조각전시공원과 야생화단지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

⑥ 사업내용

■ 도입기능 및 시설

도입 기능	기능 및 시설	
창작	시민과 예술가 등이 사용하는 돌문화창작스튜디오	돌문화창작실
전시	지역석재의 우수성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공간	돌문화전시1실/2실
체험	지역석재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	돌문화체험장
편의	관람객 및 이용객을 위한 편의공간 및 석재생산물 판매	돌문화판매장/화장실/ 주차장/진입광장
여가	관람객 및 이용객이 지역석재 및 자연경관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보행공간 및 여가공간 조성	산책로/암벽등반장/놀 이광장/이벤트광장

■ 돌문화예술촌 활성화 사업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예술인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⑦ 사업기간 : 2010~2013년

⑧ 시행주체 : A시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균특회계	지방비	민자
돌문화예술촌 조성	6,545	3,247	3,298	-
	100%	49.9%	50.1%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2010	2011	2012	2013
돌문화예술촌 조성	6,545	945	3,067	1,355	1,178

⑩ 사업간 연계방안

- 진입도로 개설 : 조각전시공간 등으로부터 대상지로 이어지는 일부 구간의 도로 개설
- 석재산업지구 조성 : 약 160개의 석재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B읍 ○번지 일대에 석재산업지구 조성

⑪ 개발효과

- 4년간 총 65억원의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8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38억원, 교육유발효과는 73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향후 투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유발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지역주민의 자긍심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활용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사회통합효과

□ 협력사업

- 문화·체육·관광 부문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접 자치단체와 연계·협력하여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 주요 계획사항을 다음의 세부사업 계획양식에 따라 작성
- 가급적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창의적인 사업, 여타 사업과의 연계적 추진도가 높은 협력사업을 개발·기획하고 그 사업의 추진계획을 먼저 제시
- 여기서, 시·군 단독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 하나의 사업을 복수의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 도면에 연계 협력 관계를 표시(예시 참조)

사업계획 양식 : 신규 협력사업

■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시·군이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을 기술
예: 통합관광마케팅 체계구축사업 등

② 필요성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예: 지역 및 분산적인 관광 마케팅을 지양하고 지역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광 마케팅 체계를 구축

③ 성과목표

-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적목표와 성과목표를 기술
예: 실적목표 - 매년 관광해설사 100명, 관광안내 통합서브 200개 설치
성과목표 - 매년 관광으로 인한 거주인구 50명 창출

■ 사업내용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사업 대상지의 위치(번지 등)를 지형도에 가급적 표기하되, 복수지역 상호간의 협력사업의 위치를 적시
예: 00 시도, 00 시·군, 00 읍·면·동 00 번지

⑤ 개발여건

-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특성, 지역여건의 구비여부, 유사 및 동일 사업의 과거 추진실적 등을 제시
예: 지리산권의 관광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⑥ 사업내용

- 사업의 기능, 도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운영방식 등을 명기하되, 특히 복수 상호지역의 사업분담 내용을 제시
예: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로고 개발, 연계관광권 개발 등

■ 집행계획

⑦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의 경우는 00년, 다년사업의 경우는 시작시점(00년 00월)에서 완료시점(00년 00)을 기술
예: 단년 사업인 경우 2010년, 다년사업인 경우 2010-2012년

⑧ 시행주체

- 사업주체를 지방, 민간, 민관합동 등으로 구분하여 주체별 역할을 명기하되, 특히 복수 상호지역 시행주체간 협력방안을 적시
※ 예: 자치단체, 민간, 민관합동, 기타 등으로 시행주체를 명기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총투자액을 포함한 연도별 투자금액과 재원조달 방안을 국비(균특, 일반 등),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고 구성비율을 표시하되, 특히 복수 상호지역간 분담내역을 적시
- 금액 단위는 백만원으로 표시

⑩ 사업간 연계방안

- 해당사업의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지역내 타부문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기술
- 연계사업의 내용과 위치를 가급적 도면으로 제시

■ 사업효과

⑪ 개발효과

- 예상되는 개발효과를 제시하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고용증대 효과, 생산유발 효과, 지방세증대 효과, 지역발전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되, 개별지역과 복수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예 : 고용창출 1200명, 소득증대 120% 등

<참조>

□ 사업의 가이드라인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시도자율편성)

②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사업내용 :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신축 지원
- 지원부문 : 지방문화원 개보수비, 지방문화원 신축비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30%) 적용
- 대상지역: 전국

㉞ 세계군문화 엑스포 개최

- 사업내용 : 우리나라 군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엑스포 개최 지원
- 지원부문 : 엑스포 행사 개최 경비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대상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㉟ 대백제전 지원

- 사업내용 : 백제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행사 및 인프라 지원
- 지원부문 : Pre-대백제전 행사 경비, 2010 대백제전 행사 인프라 구축비
- 지원조건 : 정액 지원
- 대상지역 : 충청남도

㊱ 군산근대역사경관 조성

- 사업내용 :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정비를 통한 역사성과 어우러진 특화된 도심권 이미지 확보
- 지원부문 : 근대역사경관 조성 세부설계 등 계획수립 비용, 공공성이 있는 사업비(역사경관형성을 위한 사업, 공공디자인 거리 조성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체험시설 설치 등)
- 지원조건 :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의 대체 사업으로 국비 총 70억원 한도내 지원
- 대상지역 : 군산시

㉔ 공립박물관 건립

- 사업내용 :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 지원부문 : 공립박물관 세부설계 등 계획수립 비용, 공립박물관 건립비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30% (부지매입비는 제외)
- 대상지역 : 전국

㉕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 사업내용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조기확충 및 국민편익 증대
- 지원부문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건립된 시설의 임대료 지원
- 지원조건 :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시설의 기존 보조율 유지(문예회관: 20억원 정액,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 30%, 생활체육시설 및 전문체육시설 30%,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50%)
- 대상지역 : 전국

㉖ 비엔날레 지원

- 사업내용 : 비엔날레 등 지역미술진흥사업 지원을 통한 미술 저변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
- 지원부문 :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비 지원,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건축물 건립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 대상지역 : 전국

㉞ 공립미술관 건립

- 사업내용 : 공립미술관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진흥 기반 구축
- 지원부문 : 공립미술관 건립비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30% (부지매입비 제외)
- 대상지역 : 전국

㉟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 사업내용 : 지역별로 유명 문화예술인기념시설을 조성하여 열악한 지역문화공간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인들의 활동무대 제공
- 지원부문 : 문화예술인기념시설 건립비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30% (부지매입비 제외)
- 대상지역 : 전국

㊱ 문예회관 건립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지원부문 : 문예회관 세부설계 등 계획수립 비용, 문예회관 건립비
- 지원조건 : 1관당 20억원 정액 지원 (신규사업도 동일)
- 대상지역 : 전국

㊲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사업내용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수권 제고
- 지원부문 : 공공도서관 건립비
- 지원조건 : 총 건립비의 30%, 농어촌도서관은 총 건립비 80%(최대

16억) 국구 지원(부지매입비 제외)

- 대상지역 : 전국

- 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사업내용 :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활용,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지원부문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 한옥마을 조성, 도시경관개선,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프로그램 지원
 -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지원사업은 20% 가산) (부지매입비, 지상물 보상비 제외)
 -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㉓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 사업내용 : 전주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도시 조성
 - 지원부문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07.11) 결과 문화관광 관련 선도사업
 -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부지매입비, 지상물 보상비 제외)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 ㉔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 사업내용 : 공주·부여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 지원부문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문화관광 관련 선도사업

-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부지매입비, 지상물 보상비 제외)
- 대상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② 관광자원개발(시도자율편성)

㉠ 관광지개발

- 사업내용 : 국민의 건전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의 지속 확충
- 지원부문 : 관광진흥법상 지정 관광지, 관광단지 내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 지원(지상물 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개발사업 실행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는 제외)
-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 범위내
- 대상지역 : 전국 각 지역 소재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문화관광자원개발

- 사업내용 :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문화·관광레포츠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 지원부문 : 각 지자체 소재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시설비(지상물 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개발사업 실행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는 제외)
-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 범위내
- 대상지역 : 전국

㉔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사업내용 : 생태자원과 녹색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하여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초보단계에 있는 생태·녹색 관광 정착
- 지원부문 : 각 지자체 소재 생태·녹색자원개발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시설비(지상물 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개발사업 실행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는 제외)
-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 범위내
- 대상지역 : 전국

③ 체육진흥시설지원(시도자율편성)

㉕ 생활체육공원 조성

- 사업내용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지원부문 :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부지매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시설사업비의 50%
- 대상지역 : 전국

㉖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

- 사업내용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지원부문 : 노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부지매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시설사업비의 50%
- 대상지역 : 전국

㉔ 지방체육시설 지원

- 사업내용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원부문 : 지역선수 육성, 지역주민 등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부지매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시설사업비의 30%
- 대상지역 : 전국

④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시도자율편성)

㉕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 사업내용 : 지역별, 장르별 특화 문화산업 중점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부문 : 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을 위한 건축·시설비, 장비구입비(부지매입비, 토목공사비, 경상비 사용불가)
- 지원조건 : '09년까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기본계획 수립, 설계가 추진중인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 대상지역 : 지방문화산업단지 지정 협의 8개지역

㉖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지원

- 사업내용 :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로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부문 : 자치단체 경상보조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및 상용화, 국내외 텍스타일 수주전 참가 지원, 전통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전통문양텍스타

일디자인공모전 개최)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㉓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 사업내용 :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퍼블릭 액세스권(Public Access) 신장, 영상미디어 활용,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 및 영상산업 기반 확대 추진
- 지원부문 : 인프라구축 및 건물 리모델링비, 영상제작·교육·후반 작업 장비등 기자재 구입비, 사후평가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컨설팅 제공 및 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비용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
- 대상지역 : 전국

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 사업내용 :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
- 지원조건 : 과제당 최대 3억원/년, 과제별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2013년까지 총 400억원)
- 대상지역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및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서울·경기 제외, 단 경기도내 지구 지정된 지역은 예외)

㉕ 부산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

- 사업내용 : 부산영상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 영상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의 집적으로 정보·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 기업지원(원스톱-서비스)을

통한 영상산업 육성 도모

- 지원부문 : 건립 공사비, 설계·감리비, 공사 부대비(부지매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
-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④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 사업내용 : 경북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및 기획, 산업화, 마케팅 등 산학연관 기술개발의 토털 지원체제 구축 기관 설립
- 지원부문 :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토목공사비, 경상비 사용불가)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
- 대상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⑤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시도자율편성)

① 유교문화관광자원화

- 사업내용 : 경북 북부지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자원을 정비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사업
- 지원부문 : 문화재 보수정비, 주변 정비 등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을 적용하되, '09. 12. 31일 이전에 사업대상으로 선정 및 지자체에 통보되어 계획수립, 사전조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반영(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은 경과규정 적용 배제)
- 대상지역 :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11개 시군

㉞ 남해안관광벨트

- 사업내용 : 남해안(목포~부산)의 역사문화 유적을 정비하여 관광객
원화 하는 사업
- 대상지역 : 목포~부산간 11개 시군

㉟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 사업내용 : 백제 문화유산의 재현을 통해 백제문화의 우수성 선양
및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
- 대상지역 : 충남 부여군

㊱ 지역문화유산개발

- 사업내용 : 지역별, 거점별 특징적 대표 문화유산을 정비하여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
- 대상지역 : 서울, 경기지역

(5) 사업총괄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앞서 제시된 문화·체육·관광 부문
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단독사업 및 협력사업)의 총괄개요를 아래의
양식에 기초하여 압축적으로 작성

사업총괄 양식

사업유형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위치	투자액				우선순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속 사업	단독 사업							
	협력 사업							
신규 사업	단독 사업							
	협력 사업							

작성요령

- ① 사업명칭 : 기초생활권이 개발·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명칭
 - ※ 각 사업은 단독사업과 협력사업으로 구분 표시
 - ※ 사업은 부문별로 제시된 개발 및 기획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개발
- ② 사업기간 : 단독 및 협력사업의 추진기간을 2009-201 년 범위 내에서 제시
- ③ 대상지 위치 : 단독 및 협력사업 대상지의 위치(가급적 번지)
- ④ 투자액 : 단독 및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표시
 - ※ 특히, 협력사업의 지방비는 상호지자체간의 분담내역을 제시
- ⑤ 우선순위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 사업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투자우선순위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기록)

2) 농림·수산 부문

-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결합하여 기초생활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 특히 순수 농림어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 이외에 농림어업과 연관을 맺고 있는 2차, 3차 산업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계획. 예를 들면, 향토산업, 지역특화산업, 도농교류/농촌관광, 농림어업에 기초한 2차 특산품 가공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농산어촌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을 함께 포함
- 농식품부의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어업 기반 정비사업, 농진청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산림청의 산림경영자원 육성 및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 등이 속함

(1) 부문 발전 목표

※ 문화·관광·체육 부문과 동일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 지역발전회계에는 농림·수산 부문의 사업군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이 사업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부문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계획할 수 있다.

농림·수산 부문 사업 범위와 예시

사업군	사업(예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관광마을육성 • 농업과연계된2·3차산업부문사업체창업및경영활동지원 • 농림어업관광개별사업자육성 • 지역특화농림수산물생산지원 • 농어촌자원을활용한관광거점시설조성 • 농림어업,관련2·3차산업부문발전을위한토론,포럼,협의회활동지원 • 농농가경영컨설팅지원 • 농림어업클러스터형성 •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 농공단지조성 • 지역특화품목육성 • 바이오매스를활용한에너지생산시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농림수산물가공업지원 • 지역특화농림수산물상품마케팅지원 • 농수산물가공·유통업체경영컨설팅지원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 임산물유통시설지원 • 전통발효식품산업육성 • 농수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 산지유통시설운영지원 • 지역특화농림수산물신상품연구·개발지원 • 지역특화농림수산물브랜드육성
농어업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배수개선 • 방조제개보수 • 한발대비용수개발 • 소규모용수개발 • 지표수보강개발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 조사료생산기반조성 • 과실생산단지기반조성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종합가공단지정화시설지원 • 수산시장시설개선 • 수산물물류공센터조성 •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 바다목장조성 • 친환경경양식기반시설구축 • 해양수심증수활용수산자원조성시설건립 • 내수면자원조성

사업군	사업(예시)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농업인 정보화 교육 •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 새 기술 보급 • 품목별 학습조직 육성
산림경영자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목 생산기반 조성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 임도시설 조성 • 목재 이용 가공 경영체 지원
산림휴양·녹색공 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휴양림 조성 • 수목원 조성 • 생태 숲 조성 • 숲 가꾸기

※ 예시한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조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 이 사업군에 포함되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농림어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
는 2·3차 산업 부문의 중소기업 창업 또는 발전을 지원
 - 도시-농산어촌 간의 민간부문 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경제활동 구조를 다각화·개선하여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키
고, 지역 내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진작시킬 것을 기대
- 순수하게 공적인 정책 사업만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매우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
 - 오래 동안 농림어업(1차 산업)에만 종사해 온 주민들이 농어촌관광, 가공상품
생산 등 새로운 영역(2·3차 산업)의 경제활동에 진출하려면 많은 정보, 지식,

기술이 필요

-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 알맞은 규모의 자금·자산을 일정 정도 갖추고 적절한 법인격을 갖춘 사업조직을 구성하고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관련 부처의 지원이 필요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은 크게 '준비, 계획, 실행'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마다 정보, 지원, 교육훈련, 자원, 전문적 기술, 마케팅 등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요구가 존재하며, 그에 걸맞은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관련 사업 추진 모델



* 음영 부분은 오른쪽의 단계별 활동이 실제 추진되는 시점을 표시한 것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추진 단계별 활동 내용

[1단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요구,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상황과 기회 등을 진단함으로써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 주로 비즈니스 관련 일반 정보 획득, 지역 내 분위기 조성, 지역주민 요구 조사 및 분석, 지역 현실 진단, 사업의 기본 방향 구상 등이 이루어진다.
[2단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비즈니스를 실제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계획한다. 그리고 계획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확보한다. • 일반적 교육훈련 및 학습, 비즈니스계획 수립 집단 형성, 비즈니스 계획 수립,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 조직 구성 등이 이루어진다.
[3단계]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를 시작한 후부터 그것이 스스로의 추진력을 갖고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다. • 기술적 문제 해결, 전문적 지식 학습, 비즈니스 조직의 공고화,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규범 형성, 중간 모니터링 및 평가, 혁신 또는 확장을 위한 구상 등이 이루어진다.

- 이처럼 다단계의 복합적인 활동들로 이루어진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기초생활권의 공무원이나 관련 주민 등 사업 추진의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조력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음
- 현재에도 농어촌지역에서 추진되는 비즈니스 관련 정책 사업에 민간 컨설턴트들이 조력하는 경우가 많음

컨설팅 외부 전문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예시

평가 기준		평가 (1~ 5점)					
		1	2	3	4	5	비고
컨설팅 기관	• 기관의 연혁과 규모						
	• 기관의 이미지						
컨설턴트	• 컨설턴트 개인의 이미지						
	• 컨설턴트의 경력과 자격						
	• 관련 분야 경험						
	• 커뮤니케이션 능력						
	• 작업의 효율성						
컨설팅 팀	• 전문성						
	• 경험 분야의 다양성						
전문적 지식	• 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						
	• 사업에 관한 구체적 이해도						
경험	• 수행한 컨설팅 프로젝트						
	• 비교가능한 프로젝트의 성과						
	• 과거 수행한 컨설팅의 품질						
	• 수상경력 등 공식인정된 성과						
실행	• 사업추진일정과의 보완성						
	• 사업실행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조직	• 컨설팅 추진 계획의 구조						
	• 컨설팅 추진 일정						
기타	• 비용						

○ 단, 컨설팅의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아서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음

- 용역 형태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만 일회적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으

며, 사업 담당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배우려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낭비

- 생생한 정보와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
-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한 경험이 있는 전직 CEO 등과 같이 현장 출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들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음
- 때로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으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에 필요한 예산은 처음부터 별도로 책정해두는 것이 바람직.
- 용역 계약을 통해 컨설팅을 받는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외부 전문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은 그 평가기준을 예시한 것임.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

- 어떤 농수산물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올리고자 할 때,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짜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 비현실적인 계획이 됨.
 -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용해 본 뒤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작은 규모의 시범적 사업을 계획하여 지원.
 - 가공 및 유통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주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요

구하는 재정적 자원을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해당 비즈니스 주체가 스스로의 '생산 잠재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즈니스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게 한 후 정책 사업을 통해 지원.

- 농수산물 가공·유통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려는 지역 주민 또는 중소기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그것을 검토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예시: 농수산물 가공 상품 생산 잠재력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

생산 잠재력을 파악하는 주된 목적은 해당 생산품(지역 농수산물 가공상품, 특산품 등)의 비교우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있음. 지역에서 해당 생산품을 생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필수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토대로 정책사업 지원 여부를 판단.

- 자연자원 및 원자재
 - 상품 및 자원의 유형과 양
 - 상품 및 자원의 종류와 차별적인 특징
 - 시장에의 접근가능성
 - 공급량의 계절적 변동
 - 총 생산량
 - 상품으로 만들기까지 필요한 투입재
 - 가격
- 생산과정과 비용
 - 생산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 필요한 장비와 기술
 - 산출량
 - 필요한 노동력
 - 기타 투입재
 - 생산까지 소요되는 시간
- 생산 인력
 - 개인적 특성과 동기
 - 숙련도
 - 자원
 - 생산에 참여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잠재적 갈등 요소

예시: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관련 보조금 사업 지원 시 타당성 검토 목록

1. 비즈니스 주체
 - 1.1. 사업명
 - 1.2. 사업 시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연령, 경험
 - 1.3. 사업 시행자가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 1.4. 교육훈련과 숙련도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업 시행자의 강점과 약점
 - 1.5.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2. 사업, 상품, 서비스
 - 2.1. 세부사업을 통해 생산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 2.2. 그 상품이나 서비스는 기존 상품 및 서비스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가?
 - 2.3. 현재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사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와 비교할 때 가격은 어떠한가?
 - 2.4. 현재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품질은 어떠한가?
3. 시장
 - 3.1. 시장 규모와 유통 상황(상품별, 지역별, 유통경로별), 시장의 변화 동향
 - 3.2. 누구를 겨냥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려는가(연령,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
 - 3.3. 목표 시장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목표를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3.4. 주요 경쟁자와 그 상품 및 서비스
 - 3.5. 주요 경쟁자의 핵심적인 강점과 약점은?
4. 유통 및 마케팅
 - 4.1.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통경로(도매, 소매 등)
 - 4.2. 각 유통경로별 예상 이윤과 거래비용
 - 4.3. 마케팅과 판매에 할애해야 하는 자원
 - 4.4.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방법과 판촉비용
5. 생산
 - 5.1. 목표하고 있는 생산량과 생산일정
 - 5.2. 생산과정의 주요 단계에 대한 설명
 - 5.3. 각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원자재(에너지, 포장재 등 포함)와 각 단계별 소요 시간
 - 5.4. 최소 생산량, 원자재 재고
6. 기술
 - 6.1.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설비나 장비(왜 필요한지 정당화가능해야 함)
 - 6.2. 비용
7. 부동산
 - 7.1. 유형, 규모, 위치
 - 7.2. 비용
8. 인적 자원
 - 8.1. 각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인력(인원 수와 필요한 기술 숙련도 수준)
 - 8.2. 간접적 행정 및 기술 지원 인력

-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정책적 투입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위험(risk)을 수반
 -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 계획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해당 상품시장을 조사하고 진단.

예시: 지역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관련 시장 조사 체크리스트

[수요]

- 전국 수준 그리고 타 지역에서의 해당 상품 시장의 규모(물량과 금액)
-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간의 가격과 품질 차이
- 널리 쓰이고 있는 포장 상태
- 주요 유통경로와 유통경로별 가격
- 소비자 계층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

[공급 및 경쟁]

- 주요 경쟁자는 누구인가?
- 주요 경쟁자의 상품, 매출규모, 수익규모, 자산 등
- 주요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
- 주요 경쟁자의 전략(상품 차별화, 비용 절감, 기술혁신, 유통 등)

[유의사항]

- 시장조사를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수요에만 집중하여 조사한 나머지 경쟁상황을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한다.
 -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문헌조사만 수행한다.

■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농촌지도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됨으로써, 지방의 농촌지도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농촌지도사업을 스스로 개발·운영할 기회가 오히려 확대. 중앙의 농촌진흥

청이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이전받아 수행하는 방식의 지도사업보다는 지방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농촌지도 프로그램 기획·실행·평가 역량이 매우 중요.

- 여러 유형의 농촌지도사업 중에서도 농업인 학습조직을 육성하는 것은 특히 중요. 단, 학습조직을 육성하는 것 그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농업인들이 집단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낳은 사업 조직으로 진화하는 방향의 학습조직 육성 프로그램이 되어야 함

예시: 농업인 학습조직 육성 프로그램의 성공사례 - 함양군 물레방아 사과연구회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는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준비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그 학습 활동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연구회원들이 서로의 농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영농기술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관찰하고 토론하는 '현장 토론'이다. 둘째는 매월 1회 연구회원들이 모여 토론하는 '세미나'이다. 셋째는 연구회원들이 사과 관련 시험장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견학'이다. 이런 자기주도 학습 활동을 통해서 연구회원들이 습득하는 지식은 주로 영농기술에 관한 것들이었다.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원들 사이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사과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들은 최대한 농약을 적게 살포하면서 색택이나 맛이 좋은 저농약 사과를 생산할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그렇다면 우선 중요한 것은 농약 살포회수를 줄이는 일이었다. 농약 살포회수를 줄이면서도 병충해 피해를 적게 입고 색택, 당도, 모양 등의 측면에서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립하고 공유하는 일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사과 연구회 회원들 중에는 이미 친환경 농법으로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농업인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농업인들도 있었다. 서로 간에 앞선 영농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연구회 학습활동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수십 가지가 넘는 기술적 선택지(option)들을 서로 비교 검토하고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판단 기준은, 농장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자기 농장에서 직접 실험해 보는 것이었다. 연구회 학습활동 중 '현장 토론'과 '세미나'는 그런 기술 선택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매개였다. 표 A는 K 씨와의 심층 면접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의 저농약 사과 생산 기술의 학습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실제로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원들 사이에 전파·공유되었던 과정을 좀더 미시적으로 고찰하면,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학습자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해나가는 방식의 이른 바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에서 학습했던 기술들을 그 개발 과정의 특징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업인 스스로 농장에서 실험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이다(유형 A). 둘째는 농업인이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학습하여 자기 농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이다(유형 B). 셋째는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업인이 자기 농장에 맞도록 보완하여 적용하는 경우이다(유형 C).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이든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에서는 연구회원들이 그 기술의 혁신적인 성과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농장 관찰과 토론이라는 학습과정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는 혁신 기술의 수용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별 농장 또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된 형태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서 기술 적용의 성과까지도 올려 주는 학습 방법이었다.

(4) 사업계획 작성

* 문화·관광·체육 부문 사업계획 참조

□ 단독사업

- 해당 시·군이 농림·수산 부문에서 다른 시·군과 연계 및 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단독사업의 경우에 주요 계획사항을 다음의 세부사업 계획양식에 따라 작성
- 여기서, 복수 시·군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 각각이 추진하는 단독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예시 : 신규 단독사업

① 사업명 :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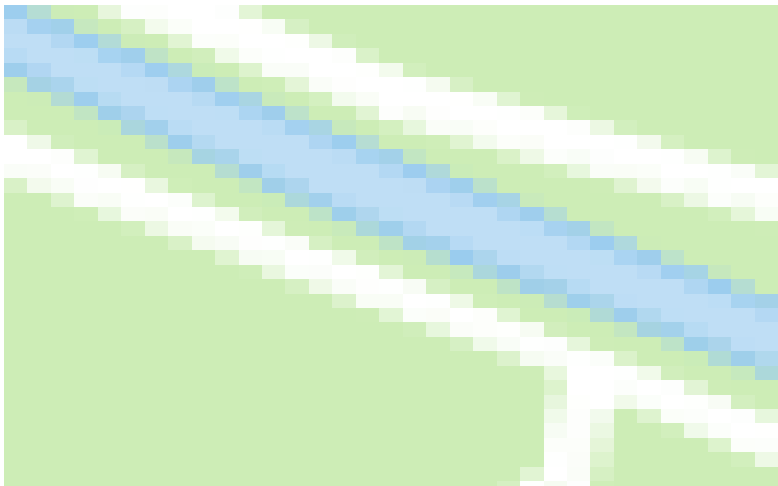
② 필요성

- 지역의 주거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도시에 버금가는 삶의 질 향상
- 주택 뿐 아니라 교육여건, 문화 등의 종합적인 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필요

③ 성과목표

- 실적목표 : 주거 100, 교육시설 3개, 문화시설 2개 공급
- 성과목표 : 도시의 30-40대 젊은층을 100여명 유치, 공동체 활력 부여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B읍 ○○○리 ○○번지, B군 ○○○면 ○○번지 일대
950,000㎡



⑤ 개발여건

- B읍 ○○○리 ○○번지는 B군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과 접근성이 좋아 도심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두로부터 양호한 접근성이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
 - 따라서 농산어촌형 뉴타운으로서 최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개발의 잠재력이 높을 뿐 아니라 농어촌형 뉴타운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
- B군 ○○○면 ○○번지는 인근에 서울우유 B군 공장이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B군의 사과주산지과 인접하고 있어 서울우유 관련 종사자 뿐 아니라 인근 과수농원과 연계적 발전이 가능
 - 서울우유 종사자 뿐 아니라 B군 전체에서 활동하는 거주민을 위한 전원 주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적 잇점을 보유
 - 체험 및 관광농원 정책과 연계하여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활서비스 공급에 유리할 뿐 아니라 연계적 발전의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가능

⑥ 사업내용

■ 도입기능 및 시설

구분	기능 및 시설	
주택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	황토 등 친환경 주거
	태양광 등 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태양광 집열판
체험	인근 농원 등과 연계한 체험관광	농원체험장
교육	입주자 수요에 맞는 영농교육	영농교육장

■ 프로그램

- 농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 친환경 주택건립 체험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교육관
- 외국의 녹색성장 교육

⑦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

⑧ 시행주체 : B군 + 민간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균특회계	지방비	민자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15,000	8,000	2,000	5,000
	100%	53.3%	13.3%	33.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2010	2011	2012	2013
돌문화예술촌 조성	15,000	3,500	7,200	3,300	1,000

⑩ 사업간 연계방안

- 체험관광사업과 연계 :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시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
- 농어촌 생활여건개선사업과 연계 : 농어촌 생활여건개선과 연계하여 통합적 개발의 시너지 효과 발생
- 신활력 사업과 연계 :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화강석 사업과 연계하여 테마관광의 개발

⑪ 개발효과

- 4년간 총 150억원의 투자로 인해 지역의 인구유입은 120명, 소득증대는 연간 10억원으로 예상됨
 - 향후 투자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측면의 직간접적인 지역발전효과는 연간 50억원이 예상됨
- 농어촌형 뉴타운 개발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 개선, 거주민의 자부심, 지역에 대한 추가적 관광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예시 : 신규 단독사업

1. 사업명: 농촌관광 선도마을 육성사업

※ 사업형태: 단독사업

2. 필요성

- ○○군은 풍부한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자원 활용이 농산물 판매에만 한정되어 있어 농업의 서비스 기능을 활용한 농촌관광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 농촌관광의 중심이 될 선도마을을 선정하고 육성하여 지역 내에 농촌관광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사업목표

- 실적목표
 - 15개 마을 지원: 년 3개 마을, 마을당 2억, 총35억 지원(인센티브 5억 포함)
- 성과목표
 - 농촌관광마을 내방객 150,000명
 - 농촌관광 매출액: 15억 원

4. 사업내용

-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촌관광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들을 지역의 농촌관광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 대상 마을은 공모제 방식으로 선정하며 마을 당 2억 원을 지원한다.
 -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촌관광마을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원 마을을 심사한다.
- 사업 시행 후 관광마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 1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 대상 마을 주민들은 농촌관광에 대한 학습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을 활용한다.
- 대상 마을은 농촌관광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차별 재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국비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3,500 (100%)
지방비						
민자						
합계	700	700	700	700	700	3,500

6. 사업기간: 2010년 ~ 2014년

7. 사업대상지의 위치 : 공간적 범위(대상 마을)

8. 시행주체: 민간

참여자	역할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마을 심사위원단 구성
농촌관광마을 심사위원단	대상 마을 선정 및 평가 자문 및 지도 활동
농촌마을 주민	마을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추진

9. 기대효과

- 직거래 활성화, 방문객에 대한 지역 농산물 홍보 등으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꾀할 수 있음. 또한 지역 관광객 수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음.
- 농촌관광 선도 마을은 향후 지역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협력사업

- 농림·수산 부문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연계·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 다음의 세부사업 계획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
 - 가급적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창의적인 사업, 여타 사업과의 연계적 추진도가 높은 협력사업을 개발·기획하고 그 사업의 추진계획을 먼저 제시
- 여기서, 시·군 단독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 하나의 사업을 복수의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 도면에 연계 협력 관계를 표시(예시 참조)

예시 : 신규 협력사업

1. 사업명: 지리산권역 3개 군(거창, 산청, 함양) 연합 학교급식센터 운영

※ 협력사업

2. 필요성

- 거창군은 관내 초중등학교에 친환경급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3년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만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만으로는 관내 34개 교에 충분한 범위의 식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한편, 산청군과 함양군은 꾸준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소비처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3개 군이 연합하여 관내 초중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자재로 공동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의 학생들의 영양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사업목표

- 실적목표
 - 학교급식센터 1개소 건립(20억 원, 2010년 사업)
 - 3개 군 지역 초·중·고교 60개 학교 1만 명 학생에 급식지원
(일부 식자재 무상공급, 연 35억 원, 2011~2014년 사업)
- 성과목표
 - 3개 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400여 명에게 지속적 판로 확보
(농가 1호당 연평균 조수입 400만 원)

4. 사업내용

- 물류상 조건이 양호한 장소에 '공동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한다.
- 학교급식센터의 성격과 역할
 - 3개 군의 친환경농산물을 공동구매하여 지역 내 60개 학교에 공동분배한다.
 - 학교에 분배하기 전에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 학교급식센터는 3개 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직과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 학교급식센터는 친환경농산물 식자재의 학교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형태로 운영한다.
-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내용
 - 학교급식센터 출범을 위한 자본금 출자
 - 식자재 저장고, 냉장차, 사무실 등 시설 지원
 - 잔류농약검사 등 기술지원(군 농업기술센터)
 - 공급하는 식자재 중 무상지원 물량에 대한 구입비 지원
- 3개 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식자재 공급체계에 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5.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연차별 재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거창군	국비 700 (70%)	1000 (67%)	1000 (67%)	1000 (67%)	1000 (67%)
	지방비	300 (30%)	500 (33%)	500 (33%)	500 (33%)	500 (33%)	2300 (32.9%)
	민자						
	합계	1000	1500	1500	1500	1500	7000
산청군	국비	500 (100%)	700 (70%)	700 (70%)	700 (70%)	700 (70%)	2300 (65.7%)
	지방비		300 (30%)	300 (30%)	300 (30%)	300 (30%)	1200 (34.3%)
	민자						
	합계	500	1000	1000	1000	1000	3500
함양군	국비	500 (100%)	700 (70%)	700 (70%)	700 (70%)	700 (70%)	2300 (65.7%)
	지방비		300 (30%)	300 (30%)	300 (30%)	300 (30%)	1200 (34.3%)
	민자						
	합계	500	1000	1000	1000	1000	3500
합계	국비	2,000 (85%)	2,400 (68.6%)	2,400 (68.6%)	2,400 (68.6%)	2,400 (68.6%)	11600 (71.1%)
	지방비	300 (15%)	1100 (31.4%)	1100 (31.4%)	1100 (31.4%)	1100 (31.4%)	4700 (28.9%)
	민자						
	합계	2,000	3,500	3,500	3,500	3,500	16300

6. 사업기간: 2010~2014
 7. 사업의 공간적 범위: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8. 시행주체: 지자체

참여자	역할
군청(거창, 산청,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센터 시설 지원 • 친환경농산물 구매 자금 지원 • 급식자재 안전성 검사 지원
교육청(거창, 산청,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자재 공동구매계약 협조
농업생산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공급

9.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영양개선에 기여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함

<참조>

□ 사업별 가이드라인

①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 지역산업주체 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역산업 역량강화 RIS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농어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등 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축산물 마케팅조직 구축 프로그램,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등
- 지원부문 :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창업·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생산자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등

㉞ R&D 및 정보화 기반강화

- 사업내용 : 농어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원부문 : R&D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현 비용, 컨설팅 비용 등
-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생산자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민간 전문컨설팅 기관 등

㉟ 1·2·3차 산업 복합화를 위한 생산·마케팅 기반구축

- 사업내용 : 지역 농어업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향토 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등
- 지원부문 :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 조직(작목반) 생산·유통·시설비, 농수산물 가공시설비, 홍보·마케팅비용 등
-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조직, 가공업체 등

㊱ 농수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

- 사업내용 :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특화 품목(시·군별 특화품목 지정)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유통·가공분야 등 자본성 시설 지원
- 지원부문 :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 조직의 생산·유통·시설비, 농수산물 가공시설비 등 시설지원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조직, 가공업체 등
- ㉔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단지 보완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부문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 지원대상 : 시장·군수
- ㉕ 농어촌형 체험·휴양마을 조성
- 사업내용 : 마을공동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부문 : 체험·휴양 기반조성 시설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교육·견학·마케팅비 등(S/W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20% 범위 내)
 - 지원대상 : 시장·군수
- ㉖ 농어촌 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지원,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학습전시관·산책로·관찰로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부문 : 시설비(* 지원제외 : 숙박시설·음식점 및 휴게소 등과 같은 소득기반시설: 민자로 추진)
 - 지원대상 : 시장·군수

㉞ 어촌·어항 관광개발

-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기초기반시설 (체험마을 사업), 지방어항중심의 해안공원, 산책로, 생태·문화체험시설, 관광종합안내소 등 관광기반시설(어촌관광 개발사업)
- 지원부문 : 시설비(* 지원제외 : 식당·숙박시설, 목욕탕 등 개인이 운영하는 직접소득시설)
- 지원대상 : 시장·군수(마을·어촌계 지원)

㉟ 복합 낚시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환경 친화적인 잔교형 및 가두리형 낚시터 기반시설 조성, 낚시터의 수산자원 서식지 조성을 위한 어초시설, 유어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 유어공간(패류 및 해조류 채취, 갯벌 체험) 조성
- 지원부문 : 기반조성 시설비, 어초시설비
- 지원대상 : 시장·군수

㊱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 사업내용 : 우량종묘 개발·보급을 위한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지원
- 지원부문 :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비
- 지원대상 : 양식어업권을 취득하고 어류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단체), 영어법인

㊲ 농어업기반정비

㊳ 농업생산기반 정비

- 사업내용 : 규모화, 집단화, 대형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및 소득 증대

- 지원부문 :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용·배수로 시설 등 생산기반 정비
- 지원규모 :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대상지 선정 지원(발기반정비는 30ha이상, 대구획경지정사업은 50ha이상, 50ha미만 지역에 대하여도 기반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조사 후 사업시행)

사업예시 : 발기반 정비

□ 목 적

-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발작물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 주요 사업내용

- 지원 요건 : 조사된 대상지 중 발면적이 30ha이상인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정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사결과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을 위한 소요액으로 집행

사업예시 : 대구획경지정리

□ 목 적

- 규모화,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지원 요건 : 대상지로 조사된 지구 중 50ha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50ha미만 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조사 후 사업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

㉑ 농업교육 지원

- 사업내용 : 도 농업정책과 연계하여 농업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실습위주의 현장교육을 위한 시설 구축

- 지원부문 : 실습장(시설원예시설) 및 강의실 구축, 전문강사 육성 등

사업예시 : 전북농업사관학교 건립

□ 목적

- 전북 농업농촌 발전을 주도할 최고의 농업전문리더 양성을 위해 실습형 농업교육기관 건립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농업교육기관 건립 지원 (총 건평 3,300㎡)
 - 세부사업내용 : 강의시설, 숙박시설, 도서관, 부속시설 등
- 지원요건
 - 사업비 6,000백만원 (균특 국비 50%, 도비 50%)
 - * 산출근거 : 설계비(280), 도시관리계획 용역(100), 감리비(160), 시설비(5,406), 시설부대비(54)

사업예시 :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

□ 목적

- 전북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설립 운영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내용
 - 품목 실습을 위한 시설원예시설(4,608㎡) 구축 및 전문교육트레이너 20명 육성
 - 세부사업내용 : 시설원예시설(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환경제어시스템 등 실습기자재 등), 전문교육트레이너 육성
- 지원요건 : 총 사업비 6,000백만원(균특회계 국비 50%, 도비 50%)
- * 산출근거 : 설계비(190), 감리비(100), 시설비(4,550), 시설부대비(30), 교육트레이너 양성(300), 기자재(600)

㉔ 종자관리

- 사업내용 : 종자 저장고 신축 및 시설 현대화
- 지원부문 : 저장고 기반 설치, 부지매입 등

사업예시 :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 목적

- 저장 감모율 저하 및 종서품위 향상으로 보급종 수요농가 만족도 제고
-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으로 씨감자 보급종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 수확 후 씨감자 품질위해요소를 철저히 차단하여 고품위 종자 공급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씨감자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저장고 신축
- 지원내용 : 저장고 신축 9억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 :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업무를 이양 받은 지자체와 정부 감자 종자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씨감자 생산기반 시설현대화사업에 한함

㉕ 어항기반시설 정비

- 사업내용 :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준설 등 어항 기본시설 및 자연재해 또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소형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포구에 설치하는 소형어선 인양기,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사업예시 : 지방어항 건설

□ 목적

-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및 어촌정주 기반조성

□ 주요 사업내용

- 지원요건
 - 개발계획수립 완료항 : 어촌어항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및 고시가 완료된 항
 - 신규투자항은 개발계획 수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항
- 사용용도 : 지방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준설 등 어항기본시설
- 지원한도(항당 최소투자금액)기준 및 범위
 - 강원도 : 항당 국고 12억원(총 15억원)이상
 - 기타 시도 : 항당 국고 10억원(총 12.5억원)이상
 - ※ 예외)신규 투자항 없이 계속 투자항에 투자하는 경우
- 신규투자 억제 : 항당 최소투자금액 이상으로 예산투자 가능한 경우 신규투자 가능(신규투자항 1개항은 최소투자금액의 50% 이상 투자가능)
- 예산신청절차 : 예산신청 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

사업예시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 목적

- 기상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사용용도 : 소형어선인양기시설(형식 및 사양 : 인양하중 3톤이상, 인양기 높이 6m, 회전반경 360° 이상의 고정식 및 이동식 등의 형상) 및 유지운영장비
- 지원한도(항당 최소투자금액)기준 및 범위 : 대당 국고 40백만원(총 사업비 50백만원) 내외

사업예시 :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

□ 목적

- 소형어선의 안전 승하선 및 어획물 양육 등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사용용도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및 유지운영장비
- 지원한도(항당 최소투자금액)기준 및 범위 : 대당 국고 80백만원(총 사업비 100백만원) 내외

㉔ 수산자원 회복사업

- 사업내용 : 양식어장정화(침적폐기물 수거, 바닥갈이 등), 인공어초시설, 해중립조성, 수산종묘방류 및 내수면 자원조성 등
- 지원부문 : 기존 양식어장 개선, 인공어초(해중립 포함)시설, 수산종묘매입방류 및 수산종묘배양시설비 확충 등
- 지원규모 : 인공어초시설 적지 307천ha, 어초어장관리 대상 198천ha,

갯녹음 어장 해중림조성 6,954ha 및 어장환경 개선 등(* 생태기반조사 부적합, 내수면어업생산시설 사업부지 구입비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원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사업예시 : 양식어장 관리사업

□ 목 적

-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지원 요건 : 공유수면에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어장 및 인근 수역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장정화·정비(퇴적물 수거·처리, 객토, 저질준설, 수로개설, 어장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적조방제(황토구입 살포, 방제장비 구입 등)
 - ※ 어장정화사업의 지원단가는 전문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 적용

사업예시 : 인공어초사업

□ 목 적

-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연안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 인공어초 사후관리 강화 및 해중림 조성에 의한 갯녹음어장 회복

□ 주요 사업내용

- 지원 요건 : 인공어초시설 예정 해역에 대한 사전적지(생태기반조사 등)를 실시하였거나 갯녹음이 심화되어 복원이 필요한 해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일반어초 50종의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조성사업 추진
- 유의사항
 - 2년 이상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어초의 성능이 검정된 일반어초 50종과 사전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사업추진

사업예시 : 수산종묘관리사업

□ 목 적

- 연안 및 내수면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지원 요건 : 인위적으로 수산종묘 생산기술이 개발되어 자원생태계에 악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44종의 수산종묘방류가 필요한 연안 및 내수면 어촌계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재 수산종묘생산기술이 확보된 44종의 수산종묘 매입방류
- 유의사항
 - 종묘생산확인을 받은 건강한 종묘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묘만을 방류

사업예시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목 적

-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으로 FTA협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다양한 내수면 생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건립으로 도시민, 어린이에게 체험학습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지원 요건 :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 및 내수면생태관 건립을 통한 어촌 관광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속어류생태관, 종묘배양장, 체험관, 육상수조 및 전시실, 연구동, 친환경양식시설 등
- 유의사항
 - 부지매입비가 제외됨으로 부지를 선정·확보한 지자체에 지원

③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① 농촌지도기반조성

- 사업내용 : 지방농촌지도기관의 청사 증축 및 신축, 교육시설, 과학영농시설, 농심테마파크, 체험과 등 시설, 과학영농서비스를

위한 최첨단 과학영농장비 및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장비, 순회지도 및 상담용 차량 등 장비 등

○ 사업대상 : 9개 도농업기술원, 160개 농업기술센터

⑥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 사업내용 : 기초기술(우량 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 등) 중점 보급으로 지역전략작목 명품화 기반조성, 지역의 농가소득과 직결 경쟁력 확보 시급품목 중심으로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규격화 가능 생산단지 육성, 업인개발과제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한 확대 보급사업 등

○ 사업대상 : 160개 농업기술센터, 마을 및 농가단위 작목반 등

⑦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선정 및 보급, 지역에서 시급히 보완, 개발이 필요한 장비 등

○ 사업대상 : 마을단위, 농업인단체

④ 산림경영자원 육성

① 임산물 수출촉진 및 해외산림투자

○ 사업내용 : 임산물 수출용 선별장, 선별기, 포장용기 정화시설 등 수출기반시설 지원

○ 지원조건 : 지역의 주요임산물을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기반시설 지원을 필요한 경우

○ 사업대상 : 지원 대상 : 임산물수출업체, 영농조합, 개인, 등

㉞ 목재이용 가공지원(목재문화체험장)

- 사업내용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계, 기반조성, 건축물시설, 야외시설 및 전시물 구입, 보완사업 등 운영비
- 지원조건 : 신규사업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성 적지를 선정하여 사업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

㉟ 목재이용 가공지원(목재집하장 시설보완)

- 사업내용 : 산림조합목재집하장 시설보완
- 지원조건 : 산림조합에서 목재집하장 시설지원을 신청할 경우 관내 목재산업 육성, 국산재 유통 활성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 목재집하장은 '88년도부터 설치, 노후화되어 시설현대화가 필요)
- 대상지역 :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17개소

㊱ 임도시설

- 사업내용 : 임도신설(간선·지선·소형임도),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기존 임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 지원조건 : (신설) 「제2차 간선임도설치 계획 5개년 계획」에 의거 '09년 계획량을 감안, (구조개량) 「제5차 산림기본계획」 사업량의 범위내에서 계획, (보수)설치 연장거리 중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거나 구조개량사업 및 보수가 필요 없는 물량을 제외한 사업 계획
-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

⑤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 사업내용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

성·보완 및 운영·관리 사업

- 지원부문 : 자연휴양림조성, 자연휴양림보완, 림욕장·숲속수련장조성
-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

㉞ 지자체 도시숲 조성

- 사업내용 : 짚지공원조성, 가로수조성, 산림공원조성, 생활환경숲조성
사업
- 지원부문 : 녹색짚지공원조성, 산림공원조성, 생활환경숲조성, 가로수
조성·관리
-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

㉟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 사업내용 : 공립수목원(식물자원의 보전·증식·저시 및 연구시설 등),
산림박물관(산림사료 및 생물자원 전시관 등)
- 지원부문 : 지방수목원 조성, 산림박물관 조성
-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수목원은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
식·관리에 적합한 임야 또는 토지로서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공유지로 대상지 선정)

㊱ 지역생태숲 조성

- 사업내용 : 산림생물자원의 보전 및 산림환경의연구·교육·탐방시설 등
- 지원부문 : 지역생태숲조성
-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다양
성이 높아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숲으로 산림면적
50ha 이상의 공유지, 자연휴양림 등과 연접하여 교육·탐
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숲으로 산림면적
25ha 이상의 공유지)

(5) 사업총괄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앞서 제시한 농림·수산 부문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래 양식에 기초하여 압축적으로 작성

표 4-7. 사업총괄 양식

사업유형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대상 지위치	투자액				우선 순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속 사업	단독 사업							
	협력 사업							
신규 사업	단독 사업							
	협력 사업							

작성요령

- ① 사업명칭 : 기초생활권이 개발·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명칭을 제시
 - ※ 각 사업은 단독사업과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
 - ※ 사업은 부문별로 제시된 개발 및 기획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개발
- ② 사업기간 : 계속 및 신규사업별로 단독 및 협력사업의 추진기간을 2009-201년 범위 내에서 제시
- ③ 대상지 위치 : 계속 및 신규사업별로 단독 및 협력사업 대상지의 위치(가급적 번지)
- ④ 투자액 :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표시
 - ※ 특히, 협력사업의 지방비는 상호지자체간의 분담내역을 제시
- ⑤ 우선순위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 사업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기록)

3) 산업·경제 부문

-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 기술개발, 산업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시장정보 제공, 자금유치 등 소프트웨어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물류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음.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중소유통물류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의 전통적인 거점을 보전하면서도 활용하는 사업도 계획할 수 있음
- 이 부문에는 지경부의 지역특화산업육성지원과 중기청의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사업이 속함

(1) 부문 발전 목표

- ※ 문화·관광·체육 부문과 동일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 지역발전회계에는 산업·경제 부문의 사업군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시

- 이 사업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부문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계획할 수 있음.

표 3-11. 산업 부문 사업 범위와 예시

사업군	사업(예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산업단지 조성 •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 지방기업 마케팅, 투자유치, 시장정보 제공 등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 설립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센터 건립 • 소규모 창업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통 시장 및 중소 유통 물류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 리모델링 • 중소기업도매물류센터 건립

※ 예시한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조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지역경제 발전은 대부분의 기초생활권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속에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지역마다

초점이 달라질 수 있음

-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첫째 목표가 고용 창출일 수 있음
 -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체 종사자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일 수 있음
 - 급작스러운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있음
- 이처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의 초점이 다양함에도, 많은 기초생활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스스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웃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은 지역 고유의 자산, 지역 주민 전체가 공유하는 비전과 가치에 입각하여 수립해야 함

예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과정과 고려사항

- 먼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검토한다.
 - 우리 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무엇인가?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유지하는 산업은 무엇인가?
 - 지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물리적 인프라가 있는가?
 - 지역의 서비스산업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서비스산업 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은 무엇인가?
 - 어떤 종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역사회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새로운 비즈니스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 지역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큰 비즈니스는 무엇인가? 그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바깥으로 유출되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가?
 - 지역사회 내에 기업이 정신과 창업의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주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에서 사전에 분석한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토론의 초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가 보전하려 노력해야 할 경제활동 분야는 무엇인가/?
 - 새로이 창출하거나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할 경제활동 분야는 무엇인가?
- 논의된 사업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한다. 태스크포스 팀은 다음의 작업을 수행한다.
 -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실태에 대한 검토
 -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 사업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개발한다. 사업의 방향이 다음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목표와 전략이 달라질 것이다.
 -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 지역산업의 기존 시장 유지
 - 신규 사업체 창업 촉진
 - 지역 내 기존 사업체의 경영 효율화

(4) 사업계획 작성

※ * 문화·관광·체육 부문 사업계획 참조

□ 단독사업

- 해당 시·군이 산업·경제 부문에서 다른 시·군과 연계 및 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단독사업의 경우에 주요 계획사항을 다음의 세부사업 계획양식에 따라 작성
- 여기서, 복수 시·군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 각각이 추진하는 단독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예시1: 산업 부문 사업계획

1. 사업명: 오미자 센터 건립 사업

※ 사업형태: 단독사업

2. 필요성:

- 오미자는 지역의 특화작물이며 지역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미자 센터 건립은 지역 방문객 증가는 물론, 소비자 가치 상승을 통한 오미자의 지역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또한 오지역 오미자 생산, 가공, 관광 분야를 연계하여 오미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계의 중심점이 될 오미자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3. 사업목표

- 실적목표
 - 오미자 센터 1개소 건립: 600㎡

- 성과목표
 - 방문객: 연 100,000명

4. 사업내용

- 오미자 센터 세부 시설
 - 오미자 직판 매장
 - 오미자 역사관
 - 오미자 체험장(제배장, 요리 체험장, 가공 체험장 등)

- 오미자 연합회 사무실 등

- 오미자 센터의 소유는 군청으로 하며, 운영은 오미자 연합회가 담당한다.

5.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 연차별	2011
국비	2,000(100%)
지방비	
민자	
합계	2,000

6. 사업기간: 2011

7. 사업의 공간적 범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8. 시행주체

참여자	역할
군청	예산지원
오미자 연합회	센터 운영

9. 기대효과

- 지역 오미자의 소비자 가치를 높임으로써 오미자 생산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오미자 센터를 중심으로 오미자 생산, 가공, 유통 부문들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오미자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촉진할 수 있음.

□ 협력사업

- 농림·수산 부문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연계·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 다음의 세부사업 계획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
 - 가급적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창의적인 사업, 여타 사업과의 연계적 추진도가 높은 협력사업을 개발·기획하고 그 사업의 추진계획을 먼저 제시
- 여기서, 시·군 단독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 하나의 사업을 복수의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 도면에 연계 협력 관계를 표시

예시 : 산업경제부문 사업계획 (신규-단독사업)

- ① 사업명 : A시 전자기술센터 건립
- ② 필요성
 - 지역내 전통적인 산업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어왔던 전자부품산업이 중국으로 이탈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점차 쇠퇴하고 있음
 - 전자조립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으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능력과 시장개척능력이 부족
- ③ 성과목표
 - 실적목표 : 기업간 상호교류 50% 향상
 - 성과목표 : 기업의 매출액 30% 향상
-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A시 B동 ○번지 일대 부지면적 40,000㎡(건축연면적 25,000㎡, 지상 3층)
- ⑤ 개발여건
 - 중국으로의 이탈 또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
 - 전자산업분야의 전문대학과 특수대학, 그리고 일반대학원이 다수 존재하여 지역내 기술개발 역량은 풍부
 - A시 B동에 전자분야 최종 완성품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이전 예정으로 지역내 전자부품업체의 바이어 확보
- ⑥ 사업내용
 - 연구개발과 생산 기능의 복합화
 - 공공연구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센터의 적극 유치를 통하여 센터내 연구개발시설과 생산업체의 기능 복합화 추구
 - 대학 연구실과 협약을 맺어 산업센터에 입주
 - 청정실, 시제품 테스트 시설 등을 구축,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절감
 - 입주기업 간 교류 촉진
 - 행정 민원,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
 - 센터의 시설: 회의실, 전시관, 청정실, 연구개발관, 기업관, 민원실
- ⑦ 사업기간 : 2010년~2012년
- ⑧ 시행주체 : A시 + 00대학 + 00산업협의회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균특회계	지방비	민자
전자기술센터 건립	16,545	6,658	9,987	3,329
	100%	40.0%	40.0%	2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2010	2011	2012
전자기술센터 건립	16,545	7,545	5,000	4,100

⑩ 사업간 연계방안

- 진입도로 개설 : 전자기술센터와 향후 입주예정인 대기업 시설간 연결도로 건설
- 국도 개설 :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전, 구미와의 접근성 향상
- 생태공원 조성 : 인근에 생태탐방로와 공원을 조성하여 우수인력의 유치 촉진
-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 기존 전자부품종사자 대상 기술재개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비 종사자 대상 인턴십 활용

⑪ 개발효과

- 3년간 총 165억원의 투자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27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500명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전자부품업체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함에 따라 순이익비율이 증가하고 관련 지원업종들도 창업, 증가
- 전자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단계 도약함에 따라 종사자 소득 증가

<참 조>

□ 사업별 가이드라인

①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시도자율편성)

① - 1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 사업내용 :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해외 시장 개척, 국내 전시회 지원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지원부문 :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교류 지원, 국내 판촉활동 등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제외대상사업: 광역계정(구 혁신계정) 사업과 사업 분야 및 지원방식이 중복되지 않고,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① - 2 :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 사업내용 : 대구·익산의 귀금속 보석 가공판매시설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지원
- 지원부문 : 설계비, 조성비 등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제외대상사업: 혁신계정 사업과 사업 분야 및 지원방식이 중복되지 않고,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① - 3 :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 사업내용 : IT산업의 발전 홍보와 과학기술 문화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원부문 : 설계비, 조성비 등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제외대상사업: 혁신계정 사업과 사업 분야 및 지원방식이 중복되지 않고,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① - 4 :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 사업내용 : 한방의 산업화, 과학화를 통한 한방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엑스포 개최 지원
- 지원부문 : 전시, 엑스포 등의 행사비 및 전시장 등의 건립비 지원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제외대상사업: 혁신계정 사업과 사업 분야 및 지원방식이 중복되지 않고,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① - 5 :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 사업내용 : 한국공예상품의 세계 진출기반 조성 및 세계 일류 문화상품화 촉진하고 공예산업의 메카로 청주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시회, 학술행사, 체험행사 등을 지원
- 지원부문 : 전시, 엑스포 등의 행사비 및 전시장 등의 건립비 지원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제외대상사업: 혁신계정 사업과 사업 분야 및 지원방식이 중복되지 않고,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① - 6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사업내용 :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하여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연도에 산업엑스포 성격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를 지원
- 지원부문 : 전시, 엑스포 등의 행사비 및 전시장 등의 건립비 지원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제외대상사업: 혁신계정 사업과 사업 분야 및 지원방식이 중복되지 않고,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① - 7 : 광주 광EXPO 지원

- 사업내용 : 광산업의 발전과 광산업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엑스포 개최 지원
- 지원부문 : 전시, 엑스포 등의 행사비 및 전시장 등의 건립비 지원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제외대상사업: 혁신계정 사업과 사업 분야 및 지원방식이 중복되지 않고,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②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시도자율편성)

② - 1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내용 : 유통환경 변화(백화점, 대형마트 부각) 속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시장의 유형	개발방향
문화관광형시장	- 유통기능은 다소 취약하나, 지역특산물 및 관광자원이 있는 시장은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
지역상권형시장	- 전통시장, 상점가, 인근상업지역을 묶어 상권 전체를 개발하는 상권 개발방식을 활용하여 상권 활성화 추진 - 상권 활성화 구역 시범지정, 1시장1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근린생활형시장	- 지역주민 등 근거리 고객을 주된 시장으로 주민친화적 시장으로 육성
구조전환형시장	- 시장재개발·재건축 등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용도 전환

- 지원부문 :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관광거리, 조형물 등 고객의 편리성, 안정성,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의 건립, 개보수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대상: 지원 대상 제한 지역은 없으며 전국의 등록된 시장은 지원대상

② - 2 :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 사업내용 : 소매업자, 도매업자가 유통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물류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지원
- 지원부문 :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물류시설·판매시설 건립비, 부지매입비 및 장비 구입비, 운영에 필요한 표준화, 정보화 설비(POS system 등)의 구축비, 기타 부대시설, 편익시설 등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구축비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대상: 도매·상품중개업자 및 종합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자가 운영하고자하는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5) 사업총괄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앞서 제시한 농림·수산 부문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래 양식에 기초하여 압축적으로 작성

사업총괄 양식

사업유형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대상 지위치	투자액				우선 순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속 사업	단독 사업							
	협력 사업							
신규 사업	단독 사업							
	협력 사업							

4) 보건·복지·교육 부문

- 기존에 작동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복지 관련 활동과 기반을 보완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들을 기획한다.
- 이 부문의 세부 사업은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만이 포함되나 기초생활권의 특성을 살려 보다 창의적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1) 부문 발전 목표

※ 문화·관광·체육 부문과 동일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 지역발전회계에는 보건·복지 부문에서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군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부문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계획할 수 있음.

복지부문 사업 범위와 예시

사업(예시)

- 청소년 수련시설 및 공부방 확충
- 학교 도서관 지원 및 장서 확충
- 창업보육센터 지원
- 공공보건 기반 확충(의료 서비스, 보건 인프라)
- 지역복지 서비스 확대(아동 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

※ 예시한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조

참고: 군 인적 자원 활용 - 교육 여건 향상

※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인근에 입지한 군 인력 가운데 특기 적성을 가진 장병을 선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영어·컴퓨터·특기적성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방과 후 교사 혹은 주말 학교 교사 - 학습도우미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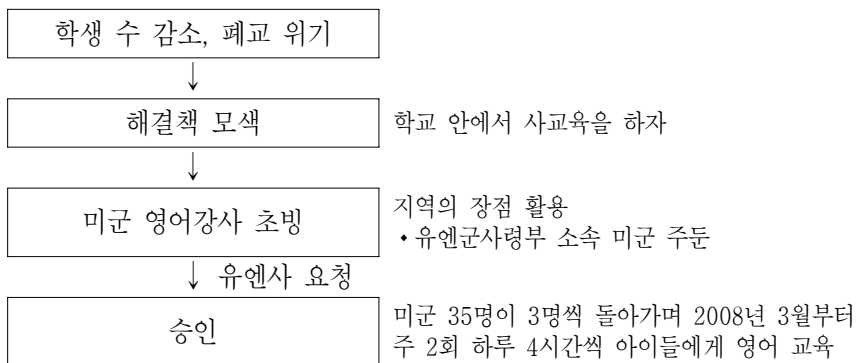
○ 영월 태백산부대 장병 봉래중 학습도우미로 맹활약

- 영월 주둔 군부대 장병들이 지역학생들의 학력지킴이로 활약
- 육군36사단 예하 영월 태백산부대는 2008년 8월 인근 봉래중학교와 '강원안보지킴이와 함께 하는 학습도우미' 협약을 체결하고 교과수업 이후에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지원
- 프로그램 내용: 군복무중인 장병 5명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 편성해 매주 2회씩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영어캠프, 원어민 교사 초빙

○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파주시 대성동초등학교

- 이 학교는 40여 년 동안 졸업생이 149명(2008년 기준)인 '초미니 교육기관'으로 2008년에는 전교생이 6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놓였으나, 한미 장병들이 영어교육을 시작하자 전입생 수가 증가, 개교 이래 최다인 25명으로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함. 또 전입 대기자도 수십 명에 이르고 있음.



(3) 사업계획 작성

※ 문화·관광·체육 부문 사업계획 참조

다른 부문과 동일

□ 단독사업

- 시·군이 보건·복지·교육 부문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 및 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단독사업의 경우에 주요 계획사항을 다음의 세부사업계획양식에 따라 작성
- 여기서, 복수 시·군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 각각 추진하는 단독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신규사업(단독사업) 계획양식

■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시·군이 기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을 기술
예 : 창업보육센터,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등 조성 등

② 필요성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예 : 인구규모 및 지역현황, 시설별 특성에 맞는 청소년수련 관련 시설 건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③ 성과목표

-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적 및 성과목표를 기술

■ 사업내용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사업 대상지의 위치(번지)를 지형도에 가급적 표기
예 : ○○사·도, ○○시·군, ○○읍·면·동 ○○번지

⑤ 개발여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역특성, 지역여건의 구비여부, 유사 및 동일 사업의 과거 추진실적 등을 제시
예 : 지역내 초등 6개소, 중등 5개소, 고등 8개소 총 19개소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유 시설 부재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용률이 전이됨

⑥ 사업내용

- 사업의 기능,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세부내용, 운영방식 등을 명기
예 : 숲가꾸기, 탄소화폐, 에코엔터어링, 창작공예 활동 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설정 등

■ 집행계획

⑦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의 경우는 00년, 다년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시작시점(00년 00월)에서 완료시점(00년 00)을 기술
예 : 단년 사업인 경우 2010년, 다년 사업인 경우 2010-2012년

⑧ 시행주체

- 사업주체를 지방, 민간, 민관합동 등으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명기
예 : 자치단체, 민간, 민관합동, 기타 등으로 시행주체를 명기

⑨ 투자규모 및 자원조달

- 총투자액 포함한 연도별 투자금액과 자원조달 방안을 국비(균특, 일반등),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고 구성비율(%) 표시
- 금액 단위는 백만원
예 : 50억인 경우는 5,000으로 표기

⑩ 사업간 연계방안

- 해당사업의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지역내 타부문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기술
- 연계사업의 내용과 위치를 가급적 도면으로 제시

■ 사업효과

⑪ 개발효과

- 예상되는 개발효과를 제시하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생산유발 효과, 고용증대 효과, 지방세증대 효과, 지역발전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
예 : 고용창출 : 1200명, 소득증대 120% 등

예시: 신규 단독사업

1. 사업명: 귀촌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사업형태: 단독사업

2. 필요성:

- 귀촌 여성들은 다양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지역을 위해 활용하려는 의욕도 지니고 있다. 이들 귀촌 여성들이 지역을 위해 그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 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사업목표

- 실적목표
 - 프로그램 개발 자금 1억 원
- 성과목표
 - 상시 고용인원 5명(귀촌여성)
 - 방과 후 학교 및 문화 프로그램 연간 수강 인원 300명

4. 사업내용

- 귀촌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귀촌 여성들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 복지 기능 제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이를 위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과 후 학교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
 - 방과 후 학교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설 및 협력 논의를 위한 협의회 개최
 - 귀촌여성의 취업 의향 및 역량 파악
(필요시 귀촌여성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전문교육과정을 조직)
 - 방과 후 학교나 문화프로그램 실행 공간 확보
- 보조금과 수강생들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방과 후 학교 교사나 문화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귀촌여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 이장단, 교육위원회, 문화원, 농협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5.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연차별 재원별	2010	2011	합계
국비			
지방비	50(100%)	50(100%)	100(100%)
민자			
합계	50	50	100

6. 사업기간: 2010 ~ 2011

7. 사업의 공간적 범위: ○○군

8. 시행주체: 민관합동

참여자	역할
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 실행 과정 관리
이장단, 교육위원회, 문화원 등	사업 실행 파트너

9. 기대효과

- 신규 전입 인구계층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사항을 군 내외에 홍보하여 추가적인 도시민 유치홍보에 활용
-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향후 건설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 충족

예시 : 보건복지교육부문 사업계획 (신규-단독사업)

① 사업명 : 숲체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② 필요성

- 강원도 횡성 청태산 해발 850m 청정자연림에 입지하여 국내 유일의 청소년 중심 상설 숲체험 전문 교육기관임
-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능력향상 공급 필요

③ 성과목표

- 실적목표 : 수련동 1, 체험동 1, 교양관 1 건립, 수련프로그램 10개 개발
- 성과목표 : 청소년 복지향상 및 교육여건 향상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산 1-13



⑤ 개발여건

- 지역내 초등 6개소, 중등 5개소, 고등 8개소 총 19개소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유 시설 부재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용률이 전이됨
- 주변 중소도시에 입지된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이용률이 저조하여 우리 군으로의 이용 흡수가 가능함

⑥ 사업내용

- 숲가꾸기, 탄소화폐, 에코엔터어링, 창작공예 활동 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설정
- 가족캠프 및 숲 치유캠프 등 숲체험을 통한 교육시설 건립



⑦ 사업기간 : 2009~2013년

⑧ 시행주체 : H군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액	국비	지방비	민자
숲체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16,545	6,658	9,987	3,329
	100%	40.0%	40.0%	2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2010	2011	2012
숲체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16,545	7,545	5,000	4,100

⑩ 사업간 연계방안

- 공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사업개발을 통하여 주변 인구흡수를 위한 택지개발 및 주변도로 정비 사업 도모
- 중심상업지구의 개발을 통해 수련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지역소득창출에 기여

⑪ 개발효과

- 숲체험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으로 주변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전년대비 12% 향상됨
- 숲체험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을 통하여 고용효과 50억, 생산유발효과 60억, 부가가치유발효과 70억, 소득창출 전년대비 2.4가 발생됨

□ 협력사업

- 보건복지교육 부문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접 자치단체와 연계·협력하여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 주요 계획사항을 다음의 세부사업 계획양식에 따라 작성
 - 가급적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창의적인 사업, 여타 사업과의 연계적 추진도가 높은 협력사업을 개발·기획하고 그 사업의 추진계획을 먼저 제시
- 여기서, 시·군 단독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 하나의 사업을 복수의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 도면에 연계 협력 관계를 표시

신규사업(협력사업) 계획양식

■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시·군이 기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을 기술
예: 창업보육센터,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등 조성 등

② 필요성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예: 인구규모 및 지역현황, 시설별 특성에 맞는 청소년수련 관련 시설 건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③ 성과목표

-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적 및 성과목표를 기술

■ 사업내용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사업 대상지의 위치(번지)를 지형도에 가급적 표기
예: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⑤ 개발여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역특성, 지역여건의 구비여부, 유사 및 동일 사업의 과거 추진실적 등을 제시
예: 지역내 초등 6개소, 중등 5개소, 고등 8개소 총 19개소 교육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유 시설 부재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용률이 전이됨

⑥ 사업내용

- 사업의 기능,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세부내용, 운영방식 등을 명기
예: 숲가꾸기, 탄소화폐, 에코엔터어링, 창작공예 활동 등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설정 등

■ 집행계획

⑦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의 경우는 00년, 다년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시작시점(00년 00월)에서 완료시점(00년 00)을 기술
예: 단년 사업인 경우 2010년, 다년 사업인 경우 2010-2012년

⑧ 시행주체

- 사업주체를 지방, 민간, 민관합동 등으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명기
예: 자치단체, 민간, 민관합동, 기타 등으로 시행주체를 명기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총투자액 포함한 연도별 투자금액과 재원조달 방안을 국비(균특, 일반등),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고 구성비율(%) 표시
- 금액 단위는 백만원
예: 50억인 경우는 5,000으로 표기

⑩ 사업간 연계방안

- 해당사업의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지역내 타부문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기술
- 연계사업의 내용과 위치를 가급적 도면으로 제시

■ 사업효과

⑪ 개발효과

- 예상되는 개발효과를 제시하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생산유발 효과, 고용증대 효과, 지방세증대 효과, 지역발전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
예: 고용창출 : 1200명, 소득증대 120% 등

<참 조>

□ 사업별 가이드라인

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 사업내용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 지원부문 : 수련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등
- 지원대상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등
- 지원조건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율 30~88% 지원

(4) 사업총괄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복지교육 부문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단독사업 및 협력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아래 양식에 기초하여 압축적으로 작성

표 4-13. 사업총괄 양식

사업유형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위치	투자액				우선순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속사업								
신규 사업	단 독 사 업							
	협 력 사 업							

작성요령

- ① 사업명칭 : 기초생활권이 개발·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명칭
 - ※ 각 사업은 단독사업과 협력사업으로 구분 표시
 - ※ 사업은 부문별로 제시된 개발 및 기획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개발
- ② 사업기간 : 단독 및 협력사업의 추진기간을 2009-2011 년 범위 내에서 제시
- ③ 대상지 위치 : 단독 및 협력사업 대상지의 위치(가급적 번지)
- ④ 투자액 : 단독 및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표시
 - ※ 특히, 협력사업의 지방비는 상호지자체간의 분담내역을 제시
- ⑤ 우선순위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 사업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투자우선순위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기록)

5) 환경 부문

- 지역의 우수한 환경을 보전·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기획. 주거환경, 공공장소, 지역의 자연생태계 등의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 한편,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도 발굴·기획할 수 있음.
- 이 부문의 사업군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가 속함.

(1) 부문 발전 목표

※ 문화·관광·체육 부문과 동일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 지역발전회계에는 환경 부문의 사업군을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사업 등과 같이 예시
 - 이 사업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부문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계획할 수 있음
 -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과제에 맞추어 환경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에 부합될 수 있으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환경 부문 사업 범위와 예시

사업군	사업(예시)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정수처리시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녹색성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공공시설용 지열 히트펌프 설치

※ 예시한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조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환경은 지역의 이미지와 주민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환경 부문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만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식물 및 동물 중 다양성 보전
 - 자연경관 가꾸기
 - 지표수 수질 보전
 - 지하수 수질 및 수량 보전
 -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 기능 확충
 - 주거환경 정비
 - 환경 관련 시민의식 함양

- 기존 보전자원을 배려하는 전제 속에서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문화환경은 반드시 보전되거나 지속가능한 형태로 활용됨으로써 환경친화적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야 함.
 - 기초생활권 단위로 수립될 사업계획은 단편적인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기보다 전체적으로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의 공간 전략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공간개편 방향에 기여하는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 계획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지역 내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은 물론,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기초생활권 계획의 다른 부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도 확보해야 함

- 환경부문 사업계획시 고려할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음

환경부문 사업계획시 고려할 관련 법규

분 야	법 률 명
환경 정책 및 제도 (14개)	①환경정책기본법 ②환경분쟁조정법 ③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④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⑤환경개선특별 회계법⑥환경개선비용 부담법 ⑦환경관리공단법 ⑧유해화학물질 관리법 ⑨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⑩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⑪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⑫지속가능발전 기본법 ⑬환경보건법 ⑭환경교육진흥법
자연 환경 (9개)	①자연환경보전법 ②자연공원법 ③환경영향평가법 ④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⑤습지보전법 ⑥야생동·식물보호법 ⑦토양환경보전법 ⑧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⑨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대기 관리 (5개)	①대기환경보전법 ②소음진동규제법 ③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④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⑤악취방지법
물관리 (9개)	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②먹는물관리법 ④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수도법 ⑤하수도법 ⑥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⑦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⑧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⑨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원 순환 (8개)	①폐기물관리법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③폐기물의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④한국환경자원공사법 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⑦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⑧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도시형 지역의 환경부문 사업계획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들을 예시로 제
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대부분 좋은 의미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지역적 특성 혹은 총체적인 환경기
반 및 관리 문제를 충분히 염두 하지 못할 경우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환경 부문 도시형 연계사업 및 세부사업의 예

사 업 구 분		연계사업 및 세부사업
기 존 계 항 목 사 업	■ 강변여과수개발사업	·강변여과수 개발 인접지역의 습지생태공원화 사업 ·여과수개발 인접지역의 수질 모니터링 사업 등
	■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 고도정수처리시설	·고도정수처리 시설지역의 공원화 사업 등
	■ 소규모수도시설개량	-
	■ 산업단지완충녹지 조성	·다가능 도시완충녹지 조성사업 등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	·탐조대 등 모니터링 시설 조성사업 등
	■ 에코타운 조성사업 지원	·저탄소 녹색도시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사업 ·우수의 침투 및 저장과 활용을 위한 계획 ·도시농업을 통한 local food 생산시스템 수립 사업 ·도시 공동농장(클라인가르텐 혹은 분구원) 조성사업 ·공공시설용 지열 히트펌프 설치사업 ·그린빌딩 조성사업 ·지하철 용출수를 활용한 도시 실개울 조성사업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사업 ·학교 공원화 사업 ·에코로드 조성사업 ·자연배수시스템 및 레인가든 조성사업 ·지하철 및 공공실내공간의 녹색공간 확충사업 ·하천환경 지킴이 사업 ·저탄소-에코 교실 개설·운영사업 등
기 타	■ 기후변화 저감차원 사업	·탄소중립숲 조성사업 ·옥상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자전거대여 및 관리 프로그램 등
	■ 기후변화 적응차원 사업	·천변저류지 조성사업 ·홍수터 DB 구축 및 관리전략 수립사업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술·보급사업 ·빗물유출 저감형 하수도시설 구축사업 등

- 도시환경의 훼손을 초래할 수(가중시킬 수) 있는 사업
ex) 유지, 관리가 어려운 환경시설사업: 결국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짐
- 지역민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부문 사업
ex) 개방이 제한되어 있는 공공건물의 옥상녹화사업

- 도시지역 내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부문 사업
 - ex) 도시자연공원 연결지역에서의 공원조성 사업
 -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침묵하게 상충될 수 있는 사업
 - ex)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이용중심의 수변공원조성 사업
 - 다른 형태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
 - ex) 생태하천 조성사업(환경부에서 2009년부터 생태하천 복원(환경개선특
별회계) 및 실개천·도랑 살리기 본격 추진 계획)
- 한편 농산어촌형 지역의 환경부문 사업계획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들을
예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농촌 고유의 특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사업
 - ex) 인공 농수로 조성(개선)사업
 - 농촌의 자연환경 훼손 및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
 - ex)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지역에서의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습지보호지역 인접지역에서의 생활용수개발사업
 -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침묵하게 상충될 수 있는 사업
 - ex) 오랜기간 주변으로 많은 관정이 개발된 지역에서의 신관정개발사업;
인접 관정의 수압감소 초래
 -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하드웨어
조성에만 지원되는 사업
 - ex) 농촌체험마을 교육관 조성사업: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만 있을 경우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환경 부문 농산어촌형 연계사업 및 세부사업(안)

사 업 구 분	연계사업 및 세부사업	
기 존 계 정 항 목 사 업	■강변여과수개발사업	-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우수저장탱크 및 저류지 조성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수로의 생태수로화를 통한 개선사업 ·농어촌마을 간이 상수원 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지 상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섬, 산간 고지대 등 가뭄 우심지역에 비상관정 개발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	·소규모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의 확대
	■에코타운 조성사업지원	·농촌의 자연경관개선 사업 ·주거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농업부산물 바이오메스 에너지화 사업 ·저탄소형 친환경 생태마을(eco-town) 조성
■ 기 타	■hardware 조성 차원의 사업	·마을활용을 위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생태휴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개발로 인한 훼손지 복원사업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자원화 사업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폐교공간 등의 환경체험관 조성사업
	■software 구축 차원의 사업	·지역환경 지킴이(학예사 등의 활용) 자원봉사활동 단체조직 및 운영 슬로우시티 추진사업 ·농촌 자연생태자원 모니터링 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사업 ·주민중심의 에코가이드 양성 프로그램 사업

예시: 자연환경 보전 관련 사업 계획 수립 과정과 고려사항

- 먼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검토한다.
 -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주민들이 보전하기를 특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습지, 철새 관찰지점, 하이킹 코스 등 지역사회가 보전하기를 원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가?
 - 환경 보전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
 -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가?
-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한다. 태스크포스 팀은 다음의 작업을 수행한다.
 - 자연환경의 현 상태가 어떠하며 향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 특별히 신경써야 할 환경자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
 - 자연환경 자원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기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
 - 관련 법규 검토
- 사업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개발한다. 사업의 방향이 다음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목표와 전략이 달라질 것이다.
 - 경관 자원 보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농경지 보전
 -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는 장소에 대한 대응
 -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 지역사회 내 식생 자원 관리
 - 야생 동식물 보전
 - 수질(지표수, 지하수) 관리
 - 물 재활용
 - 재생에너지 활용

참고: 환경 관리 우수 지자체(2008년)

- ※ 환경부에서 선정한 환경 관리 우수 지자체(Green City)의 사업 내용을 토대로 환경 부문 사업의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음.
- 그린시티 지정제도는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친환경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4년 처음 도입했으며, 2년마다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함. 그린시티로 선정되면 지정 이후 5년 동안 환경 관련기술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며, 외국 친환경 자치단체 견학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얻게 됨.
 - 순천시(2006년 대통령상)
 - 순천만의 갯벌과 갈대숲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갖춘 지역특성을 잘 활용해 생태관광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함.
 - 진주시(2008년 환경부 장관상)
 - 도심지 중심으로 흐르는 진주 남강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레저 및 여가선용의 공간 제공과 양안에 산재한 역사 및 문화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강의 도시 진주, 쾌적한 환경도시 진주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관광문화 및 축제도시로 거듭남.
 - 시가지 녹지조성과 생태계 복원 공간 및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자전거 타는 명품 도시 만들기, 남강변 비위생 매립지 그린테마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 남강수질 개선과 남강변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 시책 도입
 - 광양시(2008년 특별상)
 -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연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비오톱지도 제작, 백운산 식물 생태숲 개장, 동천 하천섬 복원, 서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 꽃과 숲의 도시조성사업으로 800만그루 나무를 식재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사업 추진
 - 주민·기업등과 합동으로 '광양국가산단 환경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상호 합의에 의한 개선대책 마련과 개선경과를 지켜가면서 '상생하는 환경개선'에 주력
 -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5개소에 2,183억 원 투입·개선
 - 다양한 먼지 개선사업 등은 물론 주민복지사업 등 수행
 - 지역의 다양하고 우수한 자연자원을 효율적인 이용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부터 추진한 생태지도(Biotop Map)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시행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과 생태도시 기틀 마련

(4) 사업계획 작성

※ 문화 등 다른 부문과 동일

예시 : 환경부문 사업계획 (신규-단독사업)

① 사업명 : A군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② 필요성 및 목표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 부응하여 바이오매스의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A군은 전형적인 농산촌지역으로서 농업부산물, 건초, 가축분뇨, 산림부산물 등 풍부하고 생산이 유리한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 녹색마을 조성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증대하는 한편, 부수적인 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 효과를 제고

③ 목표

- 실적목표
- 성과목표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A군 B면 ○○리 일대 △△마을

⑤ 개발여건

- 농업과 축산업이 주산업으로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과 농축산업 부산물 바이오매스의 생산이 풍부
- A군은 전형적인 농산촌지역으로 임야와 구릉지가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바이오순환림, 유채 등 바이오작물 재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보유
- 특히 인접 B면은 기존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마을단위 사업추진을 통하여 주민조직이 발달해 있고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아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조성에 유리
 - B면의 우수한 경관을 활용하고 기존의 생태형 지역만들기사업을 연계하여 생태관광형 녹색마을을 조성

참고: 도시형 환경부문 계획의 사례

□ 광주광역시(2008년 4월 지정)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계획 수립 추진
- "탄소은행 제도" 시행
-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대시민 불 조성을 위한 홍보
- 기후변화대응 행정체계 강화
- 저탄소 시범 도시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전개
-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
- 분야별 사업내역
 - 환경정책: 청정개발체제 사업 발굴 등록, 기후 에너지 지도·제작, 생태계 영향 및 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에너지: 에너지 소비업체 자발적 협약, 집단에너지 공급,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 폐기물: 에코-폐기물에너지 타운 조성, 가용폐기물 전량 에너지 자원화 추진, 하수처리장 소화조 메탄가스 에너지원 사용 등
 - 녹지임업: 도시 생태숲 조성, 시립 산소림 수목원 조성, 공원조성, 산림가꾸기 등
 - 농업축산: 친환경유기질 비료 확대·공급,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축산 분뇨 자원화 추진
 - 도시건축: 저탄소형 도시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교통수송: LED 도로 조명설치, 자전거 이용활성화, 도시철도와 연계한 자전거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 시내버스 중형차량 도입 확대

□ 울산광역시(2008년 4월 지정)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및 분위기 정착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개선
- 에너지절감 ESCO사업 지속추진
-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민자유치 활성화
-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및 버스안내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추진
-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 도심녹지 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 국가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 민간기업의 CDM등록사업 추진
- 그린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모듈화 단지, 바이오 정제단지, 기관 산업지원 연구 특구 조성 등을 위한 울산기간산업 테크노산단 조성 기반 마련
-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
-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 연료전지자동차 실용화 사업
- 범 시민 녹색운동 실천(Clean Green-10운동 등) 등

참고: 농산어촌형 환경부문 계획의 사례

- 사업명: 일터, 쉼터, 놀이터로 어우러지는 매화동 호조들넉 만들기
- 사업내용: 매화동 호조들넉 주민산책로 조성 및 전통 주민관 조성사업
- 장 소: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일대

□ 사업의 목적과 목표

- 주민들의 활력있는 일터로서 호조들넉 지키기(도시근교농업지키기, 우리쌀 소비운동)
-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로서 호조들넉 가꾸기(주민산책로 조성)
- 전통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놀이터로서의 호조들넉 문화만들기
- 주민들의 학습과 토론의 장으로서의 마을만들기(주민대학,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 주요 추진계획 사업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업
- 마을만들기 주민대학운영사업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원주민, 이주민 합동모내기
- 호조들넉 주민산책공원조성
- 호조별 진입로 정비사업
- 전통농업관 개관 및 운영사업
- 매화동 호조들넉걷기 전통문화축제
- 우리고장쌀 햅토미 홍보대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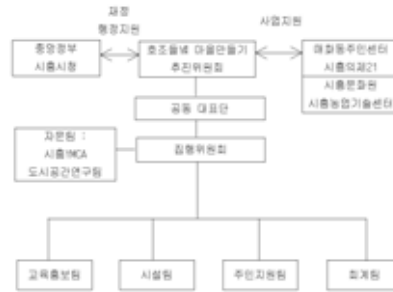


그림.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 사후 관리방안 및 활용방안

- 매년 "매화동 호조들넉걷기 대회 및 전통문화축제" 개최
- 매화동 전통 농업관을 매화동 노인회나 농민단체, 학부모회에 운영을 맡겨 운영하며, 관내 초, 중등학교 학생들의 전통문화와 농업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 운영하며, 소액의 관람비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경비를 지원해 노인일자리 창출
- 호조들넉 산책로에 조성된 정자쉼터를 쉼터가 위치한 논 의 주인이 관리

□ 사업의 기대효과

- 주민들의 삶터, 쉼터, 놀이터로서의 호조들넉 만들기
-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방자치역량강화
-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신뢰회복
- 전통문화의 계승과 우리농업의 우수성 교육

⑥ 사업내용

■ 녹색마을의 도입기능 및 시설

도입기능	기능 및 시설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에너지화사업
부산물 에너지화	농축산 및 임조경 부산물 에너지화 사업, 화목보일러 보급
바이오매스 생산	유채 등 바이오매스 생산단지 조성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생태관광을 위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등 설치

⑦ 사업기간 : 2010년~2013년

⑧ 시행주체 : A군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균특회계	지방비	민자
녹색마을 조성	13,000	6,500	6,500	-
	100%	50.0%	50.0%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2010	2011	2012	2013
녹색마을 조성	13,000	2,500	5,000	3,000	2,500

⑩ 사업간 연계방안

- 기존 생태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생태관광사업과 연계하고 마을운영위원회 등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

⑪ 개발효과

- 4년간 총 130억원의 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1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50명인 것으로 나타남
- 직접적 효과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지역 및 주민의 자긍심 고양,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활용 등 부수효과 기대

〈참 조〉

□ 사업별 가이드라인

①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시도자율편성)

① - 1 :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

- 사업내용 : 간접여과 취수를 위한 집수정(수직형, 수평형) 설치, 정수 시설, 도·송수관 등 설치
- 지원부문 : 설계비, 시설설치비, 감리비 및 부대시설비, 토지매입비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규모 : 한강 및 낙동강 취수가능지역 조사사업 결과에 의한 간접 취수방식 전환사업과 부산·경남지역 안전한 용수 공급대책(2단계)에 확정된 사업

① - 2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사업내용 : 식수전용저수지, 취·정수시설, 도·송수관 및 급·배수관 등
- 지원부문 : 설계비, 시설설치비, 감리비 및 부대시설비, 토지매입비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대상 : 농어촌 면지역 553개 상수도시설

① - 3 :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 사업내용 : 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지원부문 : 설계비, 시설설치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규모 : “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선진화사업 추진계획(2008. 3)”에 반영된 정수장 및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정수장 중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수장

① - 4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 사업내용 :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시설 및 25년 이상된 노후시설 개량
- 지원부문 : 단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비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규모 : 소규모수도시설 종합 개선대책('06.12)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된 사업(7,764개소)

②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사업(시도자율편성사업)

- 사업내용 :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시설 설치
- 지원부문 : 설계비, 시설설치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규모 :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건전한 이용시설(자연학습, 생태관찰, 체험관, 전시관 등)을 '97년부터 1,414억원을 지원하여 55개소를 완료하고 62개소에 설치 중('09년 580억원지원, 계속 39개소, 신규 38개소)

③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시군자율편성사업)

- 사업내용 : 식수전용저수지, 해수담수화시설, 취·정수시설, 도·송수관 및 급·배수관 등
- 지원부문 : 설계비, 시설설치비, 감리비 및 부대시설비, 토지매입비
- 지원조건 :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대상 :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6) 수자원·교통 부문

- 수자원·교통 부문의 단위(단독 혹은 협력)사업은 해당 부문의 개별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한 후에 사업계획을 작성
- 수자원·교통 부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독사업과 협력사업, 사업총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각각의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가급적 표준작성절차 및 내용을 준수

(1) 부문 발전 목표

※ 문화·관광·체육 부문과 동일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 지역발전회계에는 수자원·교통 부문의 사업군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시

- 이 사업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부문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계획할 수 있음.

수자원·교통 부문 기능구분 및 사업 (예시)

사업군	사업목표	사업대상	사업 (예시)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연안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단위의 연안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 ▪ 침식 및 침수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보호하는 사업 ▪ 연안을 보전 하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정비 ▪ 연안보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의 연안유입으로 인한 수자원 오염 및 환경 악화 방지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사업군	사업목표	사업대상	사업(예시)
대중교통지원	화물자동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의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 관련 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과 관련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 인상액의 보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물류단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단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사업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화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단지 진입도로 등남권, 강릉, 대전 물류단지
	특정지역내 도로건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지역내 도로지원을 통해 역사·문화자원 및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특정지역내 문화관광 산업 등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법원간 국지도 건설 백제로건설
민자유치접속도로지원	민자유치접속도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유치 민자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재부)에서 접속도로 건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덕대교민자유치건설 천성-눌차민자유치접속도로 장승포-장목민자유치접속도로
지역거점조성지원	국민임대산단 조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단지를 조성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 선정 및 지원 기반시설 시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구지, 강릉 과학, 음성 맹동, 임암지방, 해룡지방, 나주지방, 광양 명당, 진주지방 산단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국고 지원 기반시설 시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장안, 화전, 미음), 경기(백학), 경남(진북, 진주, 사포, 함양), 경북(포항4, 외동2, 바이오, 진량2, 영일만), 충남(탕정, 둔포, 합덕, 전의), 충북(제천2, 신소재), 전남(나주, 화원, 화순)

※ 계속사업의 부처별 예시는 <부록1> 참조

참고: 폐열 재활용 사업

※ 기타 부문 사업의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음.

□ 소각장 폐열을 에너지로 재활용 → 지자체의 경영 수익과 기업체의 생산 원가 절감,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지자체-기업 상생 모델)

○ 사업 개요

- 2007년 1월 울산시 환경자원과 직원들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방안을 연구하다가 2005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시의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성암소각장)을 주목함.
- 이곳에서는 2007년 11만5000여 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면서 시간당 45t의 스팀을 생산하고, 이 가운데 23t으로 자체 발전기와 보일러 등을 가동해 전기요금을 절감함. 2007년 절감한 전기요금은 9억1400만 원.
- 울산시는 성암소각장 발생 스팀(시간당 45t) 가운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스팀(11t)을 제외한 34t을 시중가(t당 3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기업체에 공급해도 연간 39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7년 6월 페트병 원료 생산업체인 ㈜효성 용연공장과 스팀 공급계약을 체결. 스팀 공급을 위한 배관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5억여 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이용함.
- 1년여 간의 공사를 마친 뒤 2008년 6월부터 스팀 공급이 시작됨. 올해 공급량은 시간당 15t이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34t씩, 소각장 증설이 완료되는 2011년부터는 60t씩 공급될 예정임.
-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효성도 하루 평균 5만4000여 L의 중유를 절감하고 있음.

○ 사업 효과

- 울산시는 2008 9억9400만 원,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47억여 원, 2011년 이후에는 91억여 원의 경영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함. 효성은 2008년 8억8600만 원,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50억여 원, 2011년 이후에는 97억여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함.

** 폐기물 소각장의 폐열을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준 사례도 있음.

참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사업

※ 기타 부문 사업의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음.

□ 에너지 기본 조례

- 가평군은 '에코 가평'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장려
 - 태양광 발전설비 등은 초기 설치비용이 비싼 것이 단점
 - 이를 감안해 가평군은 친환경에너지 활용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함.
 - 태양과 풍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됨.

□ 태양광 발전소 설치

- 경기도 가평의 농가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 최대 발전 용량은 3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75kW 정도로 발전 규모는 크지 않으나, 특별한 관리 없이도 연간 6,000만 원의 수익 발생
 - 마을 주민이 직접 상업용 전력을 생산해 한국전력에 역전송 판매

(3) 사업계획 작성

※ 문화·관광·체육 부문 사업계획 참조

□ 단독사업

- 시·군이 수자원·교통 부문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 및 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단독사업의 경우에 주요 계획사항을 다음의 세부사업계획양식에 따라 작성
- 여기서, 복수 시·군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 각각 추진하는 단독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신규사업(단독사업) 계획양식

■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사업이 기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을 기술
예: 군산·장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② 필요성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예: 서해와 동남해안의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③ 성과목표

- 실적목표: 매년 도로연장 평균 50Km 제공
- 성과목표: 지역간 접근성 80% 향상, 50개 기업유치

■ 사업내용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사업 대상지의 위치(번지)를 지형도에 가급적 표기
예: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⑤ 개발여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역특성, 지역여건의 구비여부, 유사 및 동일 사업의 과거 추진 실적 등을 제시
예: 진입도로 부재로 인한 우회도로 사용으로 교통혼잡 발생 및 이를 통한 주변 지역의 낙후 초래

⑥ 사업내용

- 사업의 기능,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세부내용, 운영방식 등을 명기
예: 도로 확·포장 5.9km, 교차로 2개소 건립 등

■ 집행계획

⑦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의 경우는 00년, 다년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시작시점(00년 00월)에서 완료시점(00년 00)을 기술
예: 단년 사업인 경우 2010년, 다년 사업인 경우 2010-2012년

⑧ 시행주체

- 사업주체를 지방, 민간, 민관합동 등으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명기
예: 자치단체, 민간, 민관합동, 기타 등으로 시행주체를 명기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총투자액 포함한 연도별 투자금액과 재원조달 방안을 국비(균특, 일반등),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고 구성비율(%) 표시
- 금액 단위는 백만원
예: 50억인 경우는 5,000으로 표기

⑩ 사업간 연계방안

- 해당사업의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지역내 타부문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기술
- 연계사업의 내용과 위치를 가급적 도면으로 제시

■ 사업효과

⑪ 개발효과

- 예상되는 개발효과를 제시하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생산유발 효과, 고용증대 효과, 지방세증대 효과, 지역발전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
예: 고용창출: 1200명, 소득증대 120% 등

예시 : 사업계획 (신규-단독사업)

① 사업명 : 군산·장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② 필요성

- 서해와 동남해안의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 심각한 교통적체 노선의 4차선 확포장 및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필수

③ 목표

- 실적목표 : 4차선 확포장 300Km
- 성과목표 : 10% 물류비 절감에 따른 광역이익 창출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사업구간 : 군산시 임피면 ~ 익산시 용안면
- 사업량 : L=18.6km, B=20.0m(4차로)



⑤ 개발여건

- 백제문화권, 금강호 철새도래지, 내항과 연계 요충지
- 진입도로 부재로 인한 우회도로 사용으로 교통혼잡 발생 및 이를 통한 주변 지역의 낙후 초래
- 수용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설이 용이
- 다른 지역과의 대안비교시 발생하는 지역파급효과가 보다 높음

⑥ 사업내용

- 교 량 : 4개소 260m
- 도로 확·포장 : 5.9km, 교차로 2개소 완료
- 배 수 구 조 물 : 25개소 750m

⑦ 사업기간 : 2009 ~ 2013년

⑧ 시행주체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액	국비	지방비	민자
군산·장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70,000	90,000	15,000	65,000
	100%	52.9%	8.8%	38.2%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군산·장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70,000	35,000	45,000	55,000	35,000

⑩ 사업간 연계방안

- 연안 - 구도심 - 신도시 - 광역도로에 연결되는 간선도로인 개설
- 구도심 활성화 등 A지역의 도시개발 추진으로 도시 가로환경 조성

⑪ 개발효과

- 군·장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을 연계하여 생산 물동량의 전년대비 12% 향상된 수송도모
- 충청권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고용유발효과 50억, 생산유발효과 60억, 부가가치유발효과 70억, 소득창출 전년대비 2.4가 발생됨
- 계획기간내 완료를 위한 필수 소요사업비 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협력사업

- 수자원 부문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접 자치단체와 연계·협력하여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 주요 계획사항을 다음의 세부사업 계획양식에 따라 작성
 - 가급적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창의적인 사업, 여타 사업과의 연계적 추진도가 높은 협력사업을 개발·기획하고 그 사업의 추진계획을 먼저 제시
- 여기서, 시·군 단독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 하나의 사업을 복수의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 도면에 연계 협력 관계를 표시(예시 참조)

신규사업(협력사업) 계획양식

■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시·군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을 기술
예 : 군산·장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② 필요성

- 양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예 : 서해와 동남해안의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③ 성과목표

- 실적목표 : 양지역간 도로연장 200Km 설치
- 성과목표 : 지역간 접근성 향상, 기업활동 활성화

■ 사업내용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사업 대상지의 위치(번지)를 지형도에 가급적 표기
예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⑤ 개발여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역특성, 지역여건의 구비여부, 유사 및 동일 사업의 과거 추진실적 등을 제시
예 : 진입도로 부재로 인한 우회도로 사용으로 교통혼잡 발생 및 이를 통한 주변 지역의 낙후 초래

⑥ 사업내용

- 사업의 기능,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세부내용, 운영방식 등을 명기
예 : 도로 확·포장 5.9km, 교차로 2개소 건립 등

■ 집행계획

⑦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의 경우는 00년, 다년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시작시점(00년 00월)에서 완료시점(00년 00)을 기술
예 : 단년 사업인 경우 2010년, 다년 사업인 경우 2010-2012년

⑧ 시행주체

- 사업주체를 지방, 민간, 민관합동 등으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명기
예 : 자치단체, 민간, 민관합동, 기타 등으로 시행주체를 명기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총투자액 포함한 연도별 투자금액과 재원조달 방안을 국비(균특, 일반등),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고 구성비율(%) 표시
- 금액 단위는 백만원
예 : 50억인 경우는 5,000으로 표기

⑩ 사업간 연계방안

- 해당사업의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지역내 타부문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기술
- 연계사업의 내용과 위치를 가급적 도면으로 제시

■ 사업효과

⑪ 개발효과

- 예상되는 개발효과를 제시하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생산유발 효과, 고용증대 효과, 지방세증대 효과, 지역발전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
예 : 고용창출 : 1200명, 소득증대 120% 등

<참고>

□ 사업별 가이드라인

① 연안정비사업

- 사업내용 : 국토보존 및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보전(침식)사업, 친수연안공간 조성사업
- 지원부문 : 국가 연안정비계획에서 선정된 연안정비사업 소요 설계비 및 시설비
- 지원규모 : 연안정비계획상 총사업비의 70% 이내

②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사업내용 : 해양에 침적되어 있는 폐어망, 폐어구 등의 수거·처리
- 지원부문 : 폐어망, 폐어구 등의 수거·처리비용
- 지원규모 : 제한 없음(예산 범위내 시행)

③ 화물자동차 지원

- 사업내용 : '13년까지 공영차고지 10개소 건설 및 신규 건설사업 추가 발굴
- 지원부문 :
- 지원규모 : 지방비:국비 = 70%:30% 방식으로 진행

④ 물류단지 지원

- 사업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화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
- 지원부문 :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

설의 우선적인 지원

- 지원규모 :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에 관계없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지금까지 물류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방비-국비 각 50%씩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⑤ 특정지역 도로건설 지원

- 사업내용 : 특정지역내 인근 교통망과의 연계성 및 도로 개설에 따른 신규 문화·관광수요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결정
- 지원규모 : 원칙적으로 개편안의 통합보조율 적용하였으나, 지금까지 특정지역도로건설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전액국비, 보상비는 지방비 부담 방식(정액보조)으로 추진하였음

(4) 사업총괄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앞서 제시된 수자원교통 부문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단독사업 및 협력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아래 양식에 기초하여 압축적으로 작성

표 4-17. 사업총괄 양식

사업유형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대상 지위치	투자액				우선순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속사업								
신규사업	단독사업							
	협력사업							

작성요령

- ① 사업명칭 : 기초생활권이 개발·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명칭
 - ※ 각 사업은 단독사업과 협력사업으로 구분 표시
 - ※ 사업은 부문별로 제시된 개발 및 기획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개발
- ② 사업기간 : 단독 및 협력사업의 추진기간을 2009-2011 년 범위 내에서 제시
- ③ 대상지 위치 : 단독 및 협력사업 대상지의 위치(가급적 번지)
- ④ 투자액 : 단독 및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표시
 - ※ 특히, 협력사업의 지방비는 상호지자체간의 분담내역을 제시
- ⑤ 우선순위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 사업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투자우선순위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기록)

7) 기초생활 기반확충 부문

- 지역의 인구, 사회, 경제,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주환경 인프라와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 재정비 및 읍면 중심지 정비 관련 사업이 대표적이며, 이 이외에도 여타 6개의 기능별 정책 부문에 포함시키기가 모호한 사업 계획을 이 부문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특히 이 부문의 경우는 지역발전회계의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권 유형에 따라 관련 중앙정부 부처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수상황지역'이라면 행정안전부의 부문 계획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 '도시활력증진지역'이라면 국토해양부의 부문 계획을 참고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구상
 - '일반 농산어촌'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부문 계획을 참고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구상
 - 일반 농산어촌 가운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초생활권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부문 계획을 참고하여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 정비 등과 관련비 사업을 추가적으로 기획(약 50개 기초생활권)

(1) 부문 발전 목표

※ 문화·관광·체육 부문과 동일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음
 - 정주환경 인프라 개선·확충
 - 주민의 기초 생활서비스(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접근성 향상

기초 생활기반 확충 부문 사업 범위와 예시

사업(예시)

- 도로 개선
-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 주민자치시설 확충, 운영 지원
- 공원 조성
- 읍·면 중심 시가지 정비
- 마을 기초 인프라 정비
- 주택개량
-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
- 마을 경관 관리
- 마을의 유휴 자원 정비, 개발
- 읍·면 중심지 기능 활성화
- '찾아가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서비스 접근성 취약계층 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

※ 예시한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조

○ 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주관부처가 조정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 주관부처에 예산을 신청

- 다만 기존 계속사업의 경우 주관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소요를 반영.

- 기존 내역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음

기초생활 기반확충 부문 계속사업 구분 및 사업 (예시)

사업군	사업목표	사업대상	사업 (예시)
성장 촉진 지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시설 확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득 증대 기반 시설 지원 ■ 도서 지역 기반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촉진 지구 ■ 도서 종합 개발
특수 상황 지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경지역의 전진 ■ 도서지역의 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간접비용 절감 사업 ■ 정주환경 조성 사업 ■ 산업단지 조성 사업 ■ 통영 및 도서지역의 안전보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경지역 지원 사업 ■ 도서지역 개발 ■ 소도읍 육성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어촌종합개발 ■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 ■ 농촌종합개발 ■ 전원마을조성사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촌농업생태계 조성 ■ 기계화경영체 조성 ■ 소규모농업경영체 육성 ■ 주거환경개선사업 ■ 개척지구 지원 ■ 산촌생태마을 조성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주거 질 향상 ■ 도시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도심 재활성화 등 공간이용 효율화 ■ 주택, 도로 등 주거환경 고급화 ■ 도시도모 ■ 기초생활기반확충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종합 개발 ■ 소도읍 육성 ■ 지표수보강 개발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어촌종합개발 ■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 ■ 농촌종합개발 ■ 전원마을조성사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촌농업생태계 조성 ■ 기계화경영체 조성 ■ 소규모농업경영체 육성 ■ 주거환경개선사업 ■ 개척지구 지원 ■ 산촌생태마을 조성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일반 농산어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육성 ■ 생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산업 육성, 지역 자원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관련 기능 ■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 생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종합 개발 ■ 소도읍 육성 ■ 지표수보강 개발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어촌종합개발 ■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 ■ 농촌종합개발 ■ 전원마을조성사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촌농업생태계 조성 ■ 기계화경영체 조성 ■ 소규모농업경영체 육성 ■ 주거환경개선사업 ■ 개척지구 지원 ■ 산촌생태마을 조성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상수도 확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도서 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

○ 도시활력증진지역의 지원 대상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활력도시재생사업
 -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되는 선도적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 사업 또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 * 사례유형: 농업경제형, 산업경제형, 업무서비스형, 관광레저형, 도시재생형 등
- 문화도시재생사업
 -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고양하고 도시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적으로 특화 발전시켜 나가는 도시재생사업
 - * 사례유형: 건축문화형, 역사문화형, 예술문화형, 지역문화형
- 환경도시재생사업
 -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창출에 필요한 특화전략을 추진하거나 주요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대중교통 혹은 녹색교통의 체계,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 필요한 녹색산업 등을 특화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려는 도시재생사업
 - * 사례유형: 생태환경형, 신재생에너지형,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형, 대중교통형, 녹색교통형 등
- 안전·건강도시재생사업
 - 안전과 방재, 건강의 증진을 위해 안전 및 건강을 중심으로 특화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계획·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 사례유형: 건강도시형, 방재도시형, 무장애(barrier-free)도시형 등

● 교육과학도시재생사업

- 교육 혹은 과학분야에서 도시발전의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경우 혹은 교육이나 과학을 주력 산업화시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

* 사례유형: 교육학습형, 정보과학형 등

● 자유창의형 도시재생사업

- 도시의 고유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거나 지역특성을 활용한 창조적 도시개발을 통하여 도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도시사업

* 사례유형: 창조적 시민참여 도시조성, 문화·해양·공공디자인·탄소저감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형 도시개발 등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 제36조 및 별표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과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기초생활권 기반확충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 일반 농산어촌 지역의 지원 대상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농산어촌 마을 종합개발(권역단위 개발사업)

-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시행하는 농산어촌마을(권역) 종합개발사업

* 사례유형: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주민 공동소득 증대,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거점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 * 사례유형: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적정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설치,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그 밖에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업
- 농산어촌 마을정비 및 재개발(마을단위 개발사업)
 -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농산어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개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 기반정비: 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공동 주차장, 전기, 통신시설 설치, 농업농촌생활용수, 공동 이용시설
 - 농어촌경관개선: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 빈집 철거 및 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 문화복지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 환경보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농업생산기반정비
 - 기계화영농 촉진 및 영농편리를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농어촌용수부족지역의 용수공급 확보를 위한 지표수보강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과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기초생활권 기반확충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을 지원을 제외한다.

- 지방재정법 제37조등 관계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특히, 읍면소재지 종합개발, 일정규모이상의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수개 마을을 권역화하여 종합개발하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
 - 시·도지사: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보조 및 용자)
 - 시장·군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보조 및 용자)

○ 특수상황지역의 지원 대상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특수상황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 지역 경제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도로망 구축
 - 세천정비 및 4대강 정비와 관련 사업 등
 -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가 빈발한 지역에 대한 재해방지사설 확충
 - 상·하수도시설, 교량, 공동 주차장, 전기, 통신시설 설치, 전선지중화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
- 특수상황지역의 정주생활환경정비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계획(복지회관, 마을회관, 복합커뮤니티 센터, 소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화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산업 및 관광개발
 - 지역 잠재력을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
 - 난개발된 공업지역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기반 조성 과 단지조성방안 수립
 - 접경지역의 독특한 환경, 자연생태, 경관 등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 문화재의 발굴·보존 및 관리와 관광상품으로 활용한 사업

-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 비무장지대 문화유산, 희귀 동·식물, 천연자원 등의 이용 및 관리
 - UN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 남북한 상호 교류 활성화와 평화 완충지역 역할을 유도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도서지역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 급수 시설 >
 -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에 상수도시설 설치
 - 상수도시설이 불가능한 도서는 다목적용수원 및 급수탱크 설치
 - 모도에서 차도로 육상 및 해저관로 등을 통한 급수
- 어촌 정주여건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 < 소규모어항시설 >
 - 지방어항은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어항별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
 - 소규모 어항시설은 유형화계획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지원 제외
- 도서의 교통·통신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 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업
 - < 도로 시설 >
 - 도로시설 중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정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 다만, 유형화종합계획에 포함된 법정도로(시·군도, 농어촌도)는 가능
 - 마을진입로 포장은 완료되었으나 지방도, 군도상의 분기점에서 마을진입로까지의 농어촌도로가 미포장된 경우 우선 포장
 - < 도선 건조 >
 - 도선건조로 모도나 육지로의 접근성 개선
 - 응급환자 수송 수단 제공으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

-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과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기초생활권 기반 확충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한다.
 - 시·도지사: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보조 및 용자)
 - 시장·군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보조 및 용자)

○ 성장촉진지역의 지원 대상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일반 농산어촌 가운데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한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관광 휴양사업 기반시설 지원(시·군 권역별 개발사업)
 - 관광이나 휴양사업 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 용수공급, 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민자유치 사업 포함)
- 지역 특화 사업 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시·군 권역별 개발사업)
 - 산업단지나 지역특화 사업 지역의 기반시설지원
- 소득증대사업 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시·군 권역별 개발사업)
 - 지역소득증대 사업지역의 도로, 용수공급, 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사업 대상자와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위험(risk)을 줄이는 데 특별히 노력해야 함.
 - 정주환경 인프라 개선 또는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용 등 투입해야 할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큰 하드웨어 사업.

- 이러한 사업 유형의 경우, 시설 설치는 되었는데 소프트웨어가 맞물리지 않아 낭비적 사업이 되거나 혹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단견적 사업으로 사업을 실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관련 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잘 참고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해야 함.
- 기초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구조 속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예시: '접근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표

-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에 예시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수혜에 있어 어떤 측면의 제약이 존재하는지를 예비적으로 진단해보고, 사업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 인적 특성과 접근성 제약을 낳는 요인들을 교차하여 검토하고 해당되는 집단이 있다면 그 빈칸에 표시한다.

구분	성별	연령 (어린이, 노인)	가족 유무 (독거 가구)	신체 장애	경제적 여건	인종 국적
건강이 좋지 않아 이동하기 어렵다.		○		○		
거주지가 원격지역서 교통이 불편하다.		○	○	○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부족하다.				○	○	
지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배제된다.	○					○
서비스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

- 지역의 주택 확충 및 개선, 커뮤니티 공동시설 확충, 중심지 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한다면 특히 다양한 주민들의 여러 차례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주민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
-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예시: '지역사회 주택 확충 및 개량 사업' 계획 수립 과정과 고려사항

- 먼저,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질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한다.
 - 건축양식별 주택의 양, 노후정도, 불량주택
 -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 주택 거래 및 임대차 가격 동향
 - 지역 인구 증감율과 주택 증가율의 비교
 - 공장 유치 등 중대규모 신규 인구유입 가능성
 - 개발 가능한 택지의 규모와 입지
- 주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에서 사전에 분석한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지역의 주택 관련 사업구상을 위해 토론한다. 워크숍에서 다루어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들은 지역에 어떤 유형의 주택이 보존되기를 원하는가?
 - 지역에 보존해야 할 특별한 건축물이 있는가?
 - 향후 10~20년 사이에 지역의 주거환경은 어떻게 개선되어 있기를 바라는가?
- 논의된 사업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한다. 태스크포스 팀은 다음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
 - 지역의 현재 주택 수요는 어느 정도이며 장래에는 그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지역의 현재 주택 공급은 어느 수준이며 장래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택수급에 관여하고 있는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수요가 존재하는가?
 - 대안적인 개발 방안이 존재하는가?
- 사업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개발한다. 사업의 방향이 다음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목표와 전략이 달라질 것이다.
 - 사용가능한 주택의 양적 공급
 - 주택 구매 또는 임차 가격
 - 주택의 질적 상태 개선
 -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정보 접근성
 - 지역의 환경이나 경관을 고려한 주택 개량

예시: '읍·면 중심지 기능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과정과 고려사항

- 읍·면 중심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사업 대상 중심지의 상태를 진단한다.
 - 물리적 외관
 - 중심지에서의 상업(소매) 활동 수준
 - 중심 시가지의 기능: 상업활동, 공공서비스, 거주지, 전문적 서비스업 등
 - 교통, 주차, 접근성
 -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 교환, 소통 장소로서의 기능
- 주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에서 사전에 분석한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중심지 활성화 관련 사업구상을 토론한다. 워크숍에서 다루어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과거 전성기와 비교할 때 지금의 중심지는 무엇이 다른가?
 - 우리 읍·면 중심지가 갖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 현재의 읍·면 중심지에서 보전해야 할 것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중심지에 새로이 도입해야 시설로는 무엇이 있는가?
 - 중심지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민들이 바라는 활동은 무엇인가?
- 논의된 사업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한다. 태스크포스 팀은 다음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
 - 중심지 외관에 대한 시각적 평가: 직접 관찰, 사진촬영 후 검토
 - 중심지의 부동산 관련 자료
 -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즈니스) 활동에 관한 자료
- 사업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개발한다. 사업의 방향이 다음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목표와 전략이 달라질 것이다.
 - 중심지 외관 및 디자인 개선
 -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특별 조직 구성
 - 쇼핑객, 투자자, 창업희망자, 관광객 등에 대한 홍보
 - 중심지의 경제활동 강화

(4) 사업계획 작성

* 문화·관광·체육 부문 사업계획 참조

□ 단독사업

- 해당 시·군이 기초생활기반확충 부문에서 다른 시·군과 연계 및 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단독사업의 경우 다음의 세부사업계획양식에 따라 작성
- 여기서, 복수 시·군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 각각이 추진하는 단독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예시 : 사업계획 (단독사업)

① 사업명 : 접경지역 생태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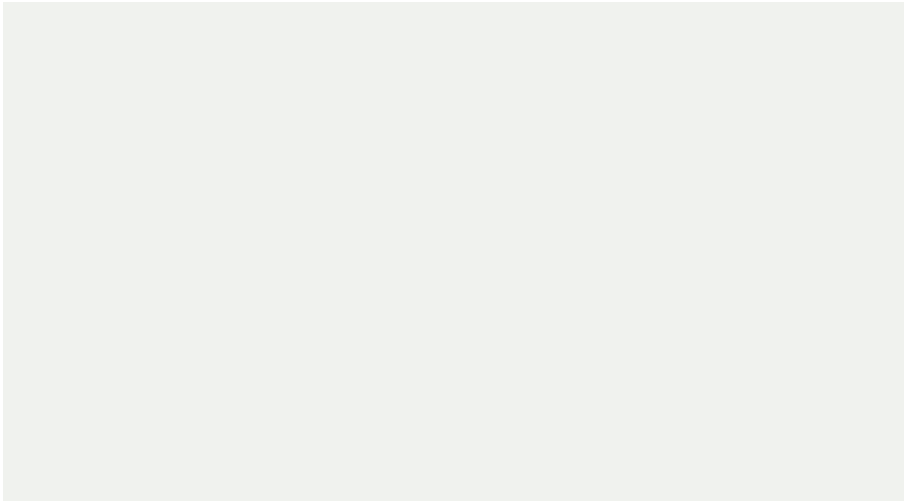
② 필요성

- C군 ○○지역은 휴전선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생태자원이 보존되어 있음
- 통일을 대비하고 휴전선 인근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필요

③ 성과목표

- 실적목표 : 조각물 10개 설치, 사파리 공원 설치
- 성과목표 : 연간 관광객 80만명 유치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C군 ○○○면 ○○번지, 일대 9,000,000㎡



⑤ 개발여건

- C군 ○○○면 ○○번지 일대는 검문소 내부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휴전선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양호
 - 춘천에서도 승용차 교통거리로 30분 이내에 자리하고 있어, 춘천과의 연계적 관광코스로 개발이 가능
- C군의 친환경 농업에 기반한 관광전략과도 부합하여 생태자원공원의 상승적 개발효과 기대

- 남북이 자연생태의 보고에 대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한층 증가할 남북교류사업의 교두보 역할
 -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한 공동탐사계획의 수립, 공동 자원조사, 공동 생태공원조사 계획 등 수립으로 협력활성화의 교두보적 개발의 위치를 점할
 - 필요시 접경지역에 속한 자치단체 공동의 생태자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

⑥ 사업내용

■ 도입기능 및 시설

구분	기능 및 시설	
체험	사파리 코스 개발	사파리 코스
	탐조, 생태체험	희귀식물 군락지 조성, 보호
교육	동물, 식물의 습생	생태관
별자리 여행	별탐사 기능 제공	천문대
트레킹	생태 트레킹 제공	트레킹 코스

- 프로그램
 - 사파리, 트레킹 코스 개발
 - 동식물 생태교육
 - 별자리 체험 등

⑦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

⑧ 시행주체: C군, 민간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균특회계	지방비	민자
접경지역 생태공원 조성	170,000	90,000	15,000	65,000
	100%	52.9%	8.8%	38.2%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투자액	2010	2011	2012	2013
접경지역 생태공원 조성	170,000	35,000	45,000	55,000	35,000

⑩ 사업간 연계방안

- 체험관광사업과 연계 :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시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
- 신활력 사업과 연계 :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화강석 사업과 연계하여 테마관광의 개발
- 도로 인프라 정비사업과 연계 :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기반 인프라 사업을 연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

⑪ 개발효과

- 관련 지역의 인구유입은 450명, 소득증대는 연간 150억원으로 예상됨
 - 향후 투자사업으로 인한 관광 등 다양한 측면의 직간접적인 지역발전효과는 연간 100억원으로 예상됨
- 생태자원의 보고 뿐 아니라 조성된 생태공원을 국내외 알림으로써 지역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의 자부심 함양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협력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부문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연계·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 다음의 세부사업 계획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
 - 가급적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창의적인 사업, 여타 사업과의 연계적 추진도가 높은 협력사업을 개발·기획하고 그 사업의 추진계획을 먼저 제시
- 여기서, 시·군 단독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존재하면 그 세부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시
- 하나의 사업을 복수의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 가급적 연계 협력 관계를 도면으로 표시

신규사업(협력사업) 계획양식

■ 사업개요

- ① 사업명
 - 시·군이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을 기술
 - 예 : 지리산 산약초 명품화 사업 추진
- ② 필요성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 ③ 성과목표
 - 실적목표 : 산약초 30만명 추가개발
 - 성과목표 : 연간 관광객 50명 추가유치

■ 사업내용

- ④ 사업 대상지 위치
 - 사업 대상지의 위치(번지 등)를 지형도에 가급적 표기하되, 복수지역 상호 간의 협력사업의 위치를 표시
 - 예 : 00 시·도, 00 시·군, 00 읍·면·동 00 번지
 - 예 : △△시·도, △△시·군, △△ 읍·면·동 △△ 번지
- ⑤ 개발여건
 -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특성, 지역여건의 구비여부, 유사 및 동일 사업의 과거 추진실적 등을 제시
 - 예 : 지리산에 자생하는 약초를 활용하고 이를 양 지역에 광범위하게 재배 하고 있어 협력사업을 통해 양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의 인식을 공유
- ⑥ 사업내용
 - 사업의 기능, 도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운영방식 등을 명기하되, 특히 복수 상호지역의 사업분담 내용을 제시
 - 예 : 산약초 공동재배, 축제 공동개최, 약초가공시설 공동건립, 공동 판매 및 마케팅 등

■ 집행계획

- ⑦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의 경우는 00년, 다년사업의 경우는 시작시점(00년 00월)에서 완료시점(00년 00)을 기술
 - 예 : 단년 사업인 경우 2010년, 다년사업인 경우 2010-2012년
- ⑧ 시행주체
 - 사업주체를 지방, 민간, 민관합동 등으로 구분하여 주체별 역할을 명기하되, 특히 복수 상호지역 시행주체간 협력방안을 적시
 - ※ 예 : 자치단체, 민간, 민관합동, 기타 등으로 시행주체를 명기
- 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총투자액을 포함한 연도별 투자금액과 재원조달 방안을 국비(균특, 일반회계),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여 투자금액 및 구성비율을 표시하되, 특히 복수 상호지역간 분담내역을 적시
 - 금액 단위는 백만원으로 표시
- ⑩ 사업간 연계방안
 - 해당사업의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양 지역내 타부문 사업과의 연계방안 기술
 - 연계사업의 내용과 위치를 가급적 도면에 표시

■ 사업효과

⑪ 개발효과

- 예상되는 개발효과를 제시하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고용증대 효과, 생산유발 효과, 지방세증대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제시하되, 개별지역과 복수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예 : 고용창출 1200명, 소득증대 120% 등

<참 고>

□ 사업별 가이드라인 : 특수상황지역 참조

① 성장촉진지역개발

-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원 대상 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70개 지역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당하는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반농산어촌 또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아래 제시) 외에 다음의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계획수립이 가능

② 개발촉진지구사업

- 사업내용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 지원대상 : 39개 지구, '09 신규지정 : 8개 지구

③ 도서종합개발사업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전기·통신 시설), 생활기반시설(배수로 정비, 세하천 정비), 문화복지

시설 확충(마을회관, 생활체육시설, 문화센터) 등

○ 지원부문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

○ 지원대상 : 특수상황지역에 속하는 도서를 제외한 개발대상 도서지역

② 특수상황지역개발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가 해당

- 이 가운데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 특수상황지역은 앞서 제시한 성장촉진사업의 개축지구, 도서종합개발 사업 외 다음의 사업의 계획수립이 가능

㉠ 접경지역지원사업

○ 사업내용 : 생활환경개선(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교량설치, 구거정비, 전기·통신시설, 구거환경 정비), 생산기반시설(배수로 정비, 세하천 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마을회관, 생활체육시설, 문화센터, 다목적 광장, 공원·녹지포함) 등

○ 지원부문 :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내용(첨부 4)

○ 대상지역 :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

㉡ 소도읍육성사업

○ 사업내용 : 읍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광활성화 사업,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의료시설 확충사업, 도시인프라 구축사업 등

- 지원부문 : 공공시설 편입 토지 용지 매수비, 시설 설치비 등(4년간 100억원)

- 지원대상 : 공동시설 편입토지, 시설정비 등 4년간 100억원

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 소득기반, 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지원부문 : 생활여건개선, 삶의 질 제고, 소득기반 강화, 공동체 활성화

- 지원대상 : 마을 단위

㉕ 어촌종합개발사업

- 주요내용 : 생산,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정비, 복지시설 등

- 지원부문 : 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 : 권역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30억~50억원), 어촌지역 평균 4~6개 어촌계 단위

㉖ 신활력사업

-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산업융복합화에 의한 소득창출

- 지원부문 : 부가가치 창출 소프트웨어 사업

- 지원대상 : 지역별 20-30억원 3년간 지원, 70개 지역

㉗ 농촌마을종합개발

- 사업내용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 정비 시설,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 지원부문 : 기반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부지확보, 소득기반, 지역역량강화 등

- 지원조건 : 권역당 5년간 40~70억원 지원

※ 면당 1개소 정도의 중심마을 육성('17년까지 1000개소 조성 목표)

㉔ 전원마을조성

- 사업내용 : 도시민 유치의 주거공간 조성
- 지원부문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전기, 공동이용시설 등)
- 지원대상 : 마을 당 10~30억원, 수도권(서울, 경기)를 제외한 읍면지역

㉕ 농촌생활환경정비

- 사업내용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 지원부문 : 개발계획·세부설계·공감비 등 용역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설치비 등
- 지원대상 :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산어촌지역

㉖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사업내용 : 물 공급시설 지원(암반관정, 물탱크, 전기시설 등)
- 지원부문 : 암반관정 부지 용지매수비, 시설설치비, 정수조, 급수관 등
- 지원대상 : 지구당 220백만원, 20호 이상 농어촌마을

㉗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사업내용 :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 생산성 증대 도모
- 지원부문 : 경지정리 지구내 주요 농로와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 확포장
- 지원대상 :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지구내 주요 농로 등

㉔ 소규모용수개발

- 사업내용 : 상습가뭄지역의 수리시설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 보급
- 지원부문 :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 경비 등
- 지원대상 : 소규모용수개발은 수혜면적 50ha

① 주거환경개선

- 사업내용 :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정비 개량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주택개량 등
- 지원대상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㉕ 산촌생태마을조성

- 사업내용 : 생산,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정비, 마을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 지원부문 : 설계,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생산기반조성, 생활기반 조성 등
- 지원대상 : 산촌진흥지역으로 고시된 4,052개 마을

③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특별·광역시·의·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이 대상
- 단 도농복합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 도시활력증진지역은 앞서 제시한 특수상황지역의 추진사업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을 추진
- 다만 특수상황지역의 추진 사업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

㉑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사업내용 : 도시의 정체성 확립, 삶의 질 향상
- 지원부문 : 계획수립비, 시설사업비,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운영비 등
- 지원대상 : 시범도시사업, 시범마을사업 등

④ 일반농산어촌 개발

- 일반농산어촌 개발지역은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 형태이 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대상
- 일반농산어촌은 앞서 제시한 도시활력증진지역의 사업 중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만 제외하고 사업추진이 가능

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선택,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은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작성
- 사업내용 : 식수전용 저수지, 해수담수화시설, 취·정수시설, 도·송수관 및 급·배수관 등
- 지원부문 : 설계비, 시설설치비, 감리비 및 부대시설비, 토지매입비
- 지원대상 : 도서지역 상수도 시설

(5) 사업총괄

- 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앞서 제시한 기초생활기반확충 부문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단독사업 및 협력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래 양식에 기초하여 압축적으로 작성, 제시

사업총괄 양식

사업유형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위치	투자액				우선순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속 사업	단독 사업							
	협력 사업							
신규 사업	단독 사업							
	협력 사업							

작성요령

- ① 사업명칭 : 기초생활권이 개발·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명칭을 제시
 ※ 각 사업은 단독사업과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
 ※ 사업은 부문별로 제시된 개발 및 기획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개발
- ② 사업기간 : 계속 및 신규사업별로 단독 및 협력사업의 추진기간을 2009-201 년 범위 내에서 제시
- ③ 대상지 위치 : 계속 및 신규사업별로 단독 및 협력사업 대상지의 위치 (가급적 번지)
- ④ 투자액 :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표시
 ※ 특히, 협력사업의 지방비는 상호지자체간의 분담내역을 제시
- ⑤ 우선순위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 사업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기록)

5. 집행계획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기존 계속사업과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기획한 신규사업을 지역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 관련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 사항에 해당
- 집행계획은 사업추진체계와 자원조달의 2개 부문으로 구성

1) 사업추진체계

□ 계속사업 / 신규사업(단독사업)

- 시·군이 기존 계속사업 혹은 독자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신규 단독사업의 경우에 사업추진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체/기관들과 이들간 상호 역할분담 방안을 작성함
- 특히, 계속사업 혹은 신규 단독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직구성도를 작성하고 조직간 상호 역할 분담방안을 기술함

① 추진기구

- 계속사업 혹은 신규 단독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하는 관내 주체/기관들을 열거하고 이들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함

예시 : A시 계속사업/신규사업(단독사업) 추진기구

- 「기초생활권발전위원회(가칭)」 설치
 - 설치 목적 및 위상 : 기초생활권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기초생활권발전 최고 심의기구로 설치
 - 구성 :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관련 실국(과)장,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상공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대표 등 20명 내외
 - 기능 :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심의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기초생활권발전과 관련된 기타 주요사항 심의 등

- 「추진기획단(가칭)」 설치
 - 설치 목적 및 위상 :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권발전위원회」 소속하에 준상설기구(T/F)로 설치
 - 구성 :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 실국(과)장, 관계 전문가, 민간단체 및 상공단체 대표 등을 참여
 - 기능 : 기초생활권종합계획의 계획·입안과 집행
기초생활권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보고
기초생활권발전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 기초생활권발전 파트너십 구축
 - 설치 목적 및 위상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권역내 다양한 주체/기관 간 협력과 합의에 기초한 공동체적 발전체제를 구축
 - 구성 : 시, 지역대학, 지역연구소, 시민, 기업체, NGO, 유관기관 등을 포함
 - 기능 : 기초생활권발전 관련 의제 설정 및 결정, 집행, 평가과정 참여 등

② 전담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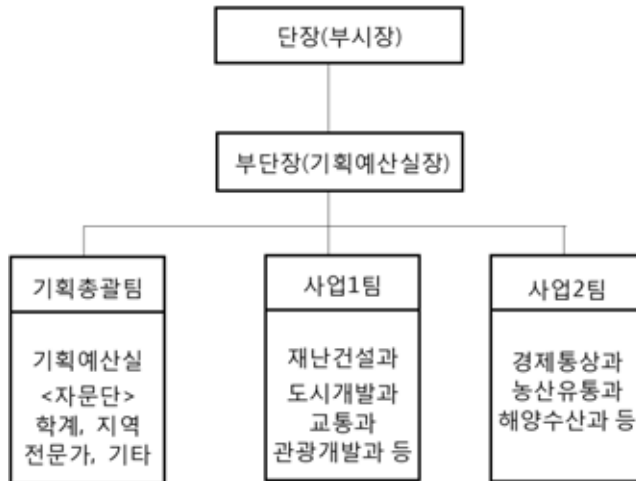
- 시·군이 계속사업 혹은 신규 단독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 조직구성도를 작성하고 조직간 상호 역할 분담방안을 기술함

예시 : A시 「추진기획단」 조직구성도

■ 조직

- 단장 :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방향제시 및 추진 총괄지휘
- 부단장 : 단정을 보좌하고 실무를 총괄
- 기획총괄팀 : 발전계획 수립 실무총괄, 발전계획 시안작성 및 검토, 발전계획 수립 및 검토
- 사업1팀 : 하드웨어 분야 단위사업 집행
- 사업2팀 : 소프트웨어 분야 단위사업 집행

■ 조직도



□ 신규사업(협력사업)

- 시·군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신규 협력사업의 경우에 사업 추진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체/기관들과 이들간 상호역할분담 방안을 작성함
- 특히, 신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조직구성도를 작성하고 조직간 상호 역할 분담방안을 기술함

① 추진기구

- 신규 협력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하는 권역내 주체/기관들을 열거하고 이들 간에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함

예시 : A시·B군 신규사업(협력사업) 추진기구

- 「기초생활권발전위원회(가칭)」 설치
 - 설치 목적 및 위상 : 기초생활권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A시와 B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기초생활권발전 최고 심의 기구
 - 구성 : 시장 및 군수, 부시장 및 부군수, 시와 군 기획실장 및 관련 실국(과)장, 시 및 군의회 의원, 시민단체, 상공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주민대표 등 30명 내외
 - ※ 위원장은 협력 지자체간 협의하에 선정하되 민간인도 가능
 - 기능 :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심의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기초생활권발전과 관련된 기타 주요사항 심의 등

- 『추진기획단(가칭)』 설치
 - 설치 목적 및 위상 :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권발전위원회」 소속하에 준상설 기구(T/F)로 설치
 - 구성 : 부시장, 부군수 혹은 민간인을 단장으로 시와 군 관계 실국(과)장, 전문가, 민간단체 및 상공단체 대표 등이 참여
 - ※ 단장은 협력 지자체간 협의하에 선정
 - 기능 : 기초생활권종합계획의 계획·입안과 집행
기초생활권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보고
기초생활권발전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 기초생활권발전 파트너십 구축
 - 설치 목적 및 위상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권역내 다양한 주체/기관 간 협력과 합의에 기초한 공동체적 발전체제를 구축
 - 구성 : 시, 군, 지역대학 및 연구소, 주민, 기업체, NGO, 유관기관 등을 포함
 - 기능 : 기초생활권발전 관련 의제 설정 및 결정, 집행, 평가과정 참여 등

② 전담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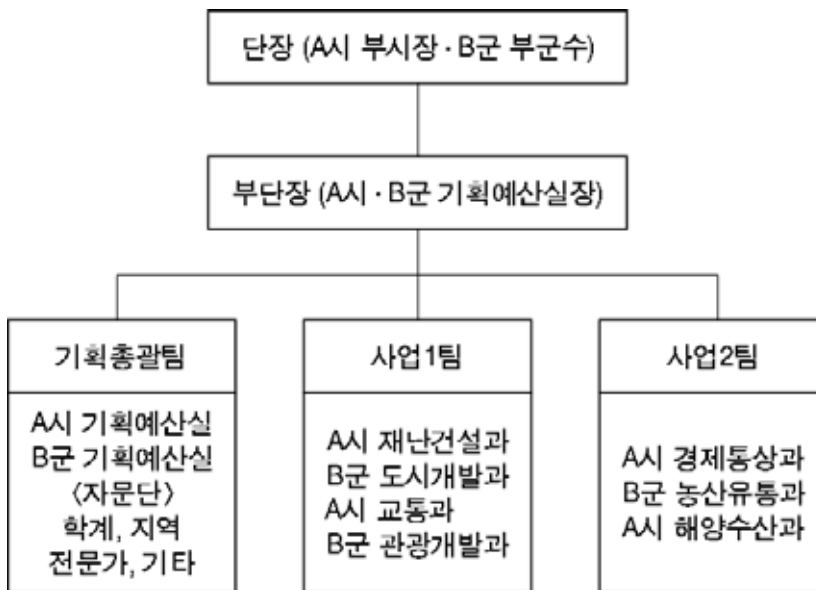
- 협력 지자체가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직구성도를 작성하고 조직간 상호 역할 분담방안을 기술함

예시 : A시·B군 「추진기획단」 조직구성도

■ 조직

- 단장 :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방향제시 및 추진 총괄지휘
-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총괄
- 기획총괄팀 : 발전계획 수립 실무총괄, 발전계획 시안작성 및 검토, 발전계획 수립 및 검토
- 사업1팀 : 하드웨어 분야 단위 협력사업 집행
- 사업2팀 : 소프트웨어 분야 단위 협력사업 집행

■ 조직도



2) 재원조달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기존 계속사업 및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기획한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를 추정하고 이의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성공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됨
- 투자비 추정 및 재원조달 계획은 사업총괄, 계속사업, 신규사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계획과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

□ 사업총괄

①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총괄 및 연차별 계획 작성

-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기간(2009-2013) 동안에 시·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속사업, 신규사업, 사업총괄에 대한 투자비 및 재원조달 총액을 먼저 제시하고,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도 같이 제시함
 - 사업총괄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을 기초로 작성함

A시의 자원조달 계획 (총괄)

구분	총액(2009-2013)							2009							...			
	국비							국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지방비	기타(민자등)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지방비	기타(민자등)	합계	...	
		지역계정	광역계정							지역계정	광역계정							
계속	2250	5000		1500	8750	4500	4250	17500	450	1000		300	1750	1050	700	3500	...	
신규	단독	200	2000		1750	1250	1300	600	6000	50	400		400	800	200	100	1310	...
	협력	300	2000		2000	4000	1000	650	6550	50	400		350	850	260	100	1000	
합계	2750	9000		5250	17000	6800	5500	29050	550	1800		1050	3400	1510	900	5810	...	

(단위: 백만원)

...	'10-'12	2013							
...		국비					지방비	기타(민자등)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지역계정	광역계정					
...	좌동	450	1000		300	1750	1050	700	3500
...	좌동	50	400		300	800	200	100	1000
...	좌동	50	400		350	850	260	100	1310
...	좌동	550	1800		1050	3400	1510	900	5810

□ 계속사업

①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총괄 및 연차별 계획 작성

-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기간(2009-2013) 동안에 시·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비 및 재원조달 총액을 먼저 제시하고,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도 같이 작성함
- 계속사업 전체는 단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을 기초로 작성함

작성시 고려사항

- 계속사업 전체 및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로 구분하여 작성
- 국비의 경우는 일반회계,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엑셀로 작성

A시의 재원조달 계획 (계속사업)

구분	총액(2009-2013)							2009							...		
	국비				지방비	기타(민자유치)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민자유치)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사업명	지역계정	광역계정				지역계정	광역계정										
수도업 음식사업	250	1000			1250	500		1750	50	200			250	100		350	...
농산물 가공시설	500	1500			2000		750	2750	100	300			400	150		550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500	1000			1500	1000	3500	6000	100	200			300	200	700	1200	...
공공 도서관 건립지원	1000	1500		1500	4000	3000		7000	200	300		300	800	600		1400	...
합계	2250	5000		1500	8750	4500	4250	17500	450	1000		300	1750	1050	700	3500	...

(단위: 백만원)

...	'10-'12	2013							
		국비				지방비	기타 (민자등)	합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타				소계
지역 계정	광역 계정								
...	좌동	50	200			250	100	350	
...	좌동	100	300			400	150	550	
...	좌동	100	200			300	200	700	1200
...	좌동	200	300		300	800	600		1400
...	좌동	450	1000		300	1750	1050	700	3500

□ 신규사업

①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총괄 및 연차별 계획 작성

-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기간(2009-2013) 동안에 시·군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단독 및 협력사업에 대한 투자비 및 재원조달 총액을 먼저 제시하고,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도 같이 작성함
 - 신규사업 전체는 개별 신규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을 기초로 작성함

작성시 고려사항

- 신규사업 전체 및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로 구분하여 작성
- 국비의 경우는 일반회계,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비는 소속 도, 협력 지자체 각각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엑셀로 작성

② 사업별 투자우선 순위 선정

-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기간(2009-2013) 동안에 시·군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단독 및 협력사업의 각각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함

A시·B군 자원조달 계획 (신규사업)

구분	총액(2009-2013)										2009						
	국비										국비						
	사업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지방비	기타(민자등)	합계	우선순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지방비	기타(민자등)
지역계정			광역계정	지역계정								광역계정					
다문화사업	민간사업	500	1500		250	2200	1000	4250	1	100	300		50	450	200	200	550
	민간사업					1000 (도:500 A시:250 B군:250)									200 (도:100 A시:50 B군:50)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1000		1000	2000	500	2500	3		200		200	400	100		500
	지방자치단체					500 (A시:250 B군:250)									100 (A시:50 B군:50)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1500		2500	4000	800	4800	2		300		500	800	160		960
	지방자치단체					800 (도:300 A시:250 B군:250)									160 (도:60 A시:50 B군:50)		
합계		500	4000		3750	8250	2300	11550	100	800		750	1650	460	200	2310	
						2300 (도:800 A시:750 B시:750)									460 (도:160 A:150 B:150)		

(단위: 백만원)

...	'10-'12	2013							
		국비					지방비	기타(민자등)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지역계정	광역계정		기타	소계					
...	좌동	100	300		50	450	200	550	
...	좌동		200		200	400	100	500	
...	좌동		300		500	800	100	960	
...	좌동	100	800		750	1650	460	2310	

부 록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예시, '09예산 기준)

① 지역개발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개발계정]</p> <p>□ 시도 자율편성사업</p> <p>▪시·도는 시도별 신청 한도 내에서 19개 포괄 보조사업 중 선택</p> <p>* ()안의 사업명은 '09년 예산 기준 세부사업으로 해당 포괄보조사업 범주 에 속하는 사업의 예시</p> <p>⇒ '10년 예산편성시는 내역사업의 의미</p> <p>▪'10년 예산 요구시는 해 당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 내역 신청 가능</p> <p>▪부처는 신청금액은 조정 하지 않고 검토의견만 첨부</p>	문화 체육 관광 부	<p>1.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1.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¹⁾</p> <p>(2.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최)</p> <p>(3. 대백제전 지원)</p> <p>(4. 군산근대역사경관 조성)</p> <p>(5. 공립박물관 건립)</p> <p>(6.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건립)</p> <p>(7.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p> <p>(8. 비엔날레 지원)</p> <p>(9. 공립미술관건립지원)</p> <p>(10.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p> <p>(11. 문예회관건립)</p> <p>(12. 후반작업기지 조성)</p> <p>(13. 공공도서관 건립지원)</p> <p>(14.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²⁾)</p> <p>(15.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²⁾)</p> <p>(16.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²⁾)</p>	

구 분	소 관	사 업 명	비 고
	농림 수산 식품 부	2. 관광자원개발 (1. 관광지개발) (2. 문화관광자원개발) (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3. 체육진흥시설지원 (1. 생활체육공원조성) (2. 노인건강생활체육 시설조성) (3. 칠곡운동장 건립) (4.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 (5. 통영산양 스포츠파크 조성) (6. 지방체육시설지원) 4.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1.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2.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지원)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4.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 (5.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 (6. 경북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5.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 농어촌테마공원조성) (3. 농공단지조성) (4. 어촌어항관광개발) (5. 복합낚시공원조성) (6. 완전미브랜드파워현대화시설설치) (7. 한우명품화) (8. FTA대비 축산경쟁력제고) (9.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10. 향토산업육성사업) (11. 특화품목육성사업) (12.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13. 고효율어류사료생산공장건립)	

구 분	소 관	사 업 명	비 고
	국토 해양 부	(3. 에코타운조성사업지원) 11.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 연안정비) (2.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12. 대중교통지원 (1. 물류단지진입도로) (2. 백제로건설) (3.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4. 영산강강변도로) (5. 기타특정지역도로건설) 13.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1. 가덕대교민자유치건설) (2. 천성-눌차민자접속도로) (3. 농소-유호민자접속도로) (4. 장승포-장목민자접속도로) 14. 지역거점조성지원 (1. 국민임대산업단지기반시설조성지원) (2.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	
	문화 재청	15.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 (1. 유교문화관광자원화) (2. 남해안관광벨트) (3.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4. 지역문화유산개발)	
	농촌 진흥 청	16.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2.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3. 농촌지도기반조성) (4.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³⁾ (5.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산림 청	17. 산림경영자원육성 (1. 임산물수출촉진 및 해외산림투자)	

구 분	소 관	사 업 명	비 고
	중소 기업 청	(2. 목재이용가공지원) (3. 임도시설) 18.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1.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2. 지자체도시숲조성) (3.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4. 지역생태숲조성) 19.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 조성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 중소기업도매물류센터건립) ⁴⁾	
<p>□ 시군구 자율편성사업</p> <p>▪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신규소요는 신청한도와 별도로 시·도에 신청</p> <p>▪부처는 계속소요는 신청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의견만 첨부하고, 신규소요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를 요구</p>	국토 해양 부 행정 안전 부 국토 해양 부 농림 수산 식품 부 환경 부	20. 성장촉진지역개발 21. 특수상황지역개발 2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23. 일반 농산어촌 24.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 지표수보강개발) (3. 소규모용수개발) (4. 농촌생활환경정비) (5. 전원마을조성) (6. 농촌마을종합개발)	

구 분	소 관	사 업 명	비 고
		(7.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8. 신활력지원) (9. 신활력지역지원) (10. 어촌종합개발) (11. 도서종합개발) (12. 소도읍육성) (13. 접경지역지원) (14. 살기좋은지역만들기추진) (15. 개발촉진지구지원) (16. 주거환경개선사업) (17.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 (18. 산촌생태마을조성) (19.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1」 ()안의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되기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부사업
- 2」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에서 이관
- 3」 농촌진흥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이관
- 4」 종전 균특회계 지식경제부 지역개발사업계정 사업에서 중소기업청 지역개발계정사업으로 이관

부 록 2

□	성장촉진지역
시·도	성장촉진지역(안)
강원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7)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5)
충남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5)
전북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10)
전남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17)
경북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16)
경남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10)
합계	70개 시·군



특수상황지역 중 접경지역

구 분	시·군 별	행정구역(읍·면·동)
합계	15 시·군	98 읍·면·동(16읍·75면·7동)
인천광역시 (2군, 17읍면)	강 화 군 (1읍·12면)	강화읍·교동면·삼산면·서도면·송해면·양사면·하점면·내가면·선원면·불은면·길상면·양도면·화도면
	옹 진 군(4면)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
경기도 (7시군, 46읍면동)	동두천시(4동)	불현동·소요동·보산동·상패동
	고 양 시(3동)	송산동·고봉동·송포동
	파 주 시 (3읍·10면)	문산읍·파주읍·법원읍·교하읍·적성면·탄현면·광탄면·파평면·월릉면·군내면·장단면·진동면·진서면
	김 포 시(5면)	월곶면·통진읍·하성면·대곶면·양촌면
	양주시(1읍4면)	백석읍·남면·은현면·광적면·장흥면
	연 천 군 (2읍·8면)	연천읍·전곡읍·군남면·미산면·청산면·중면·장남면·신서면·백학면·왕징면
	포 천 시(6면)	관인면·창수면·영북면·영중면·신북면·이동면
강원도 (6시군, 35읍면동)	춘 천 시(2면)	사북면·북산면
	철원군 (4읍·7면)	철원읍·김화읍·동송읍·갈말읍·서면·근남면·근북면·근동면·원동면·원남면·임남면
	화천군 (1읍·4면)	화천읍·사내면·하남면·간동면·상서면
	양구군 (1읍·4면)	양구읍·동면·방산면·해안면·남면
	인제군 (1읍·5면)	인제읍·서화면·남면·북면·기린면·상남면
	고성군 (2읍·4면)	간성읍·거진읍·현내면·토성면·죽왕면·수동면



특수상황지역 중 개발대상도서

시도	면	도서수	도 서 명
총계		372개	
인천	소계	33	
	중구	2	대무의도, 소무의도
	강화군	8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불음도, 아차도, 말도
	옹진군	23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백령도,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영흥도, 선재도, 측도
경기	소계	4	
	안산시	2	풍도, 육도
	화성시	2	제부도, 국화도
충남	소계	25	
	보령시	14	효자도,월도,육도,허육도,추도,소도,원산도,삼시도,고대도, 장고도, 녹도, 호도, 외연도, 빙도
	서산시	4	웅도,고파도,우도,분점도
	서천시	1	유부도

시 도	면	도서수	도 서 명
	홍성군	1	죽도
	태안군	2	가의도, 외도
	당진군	3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전 북	소계	23	
	군	16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산시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고창군	1	내죽도
	부안군	6	위도, 식도, 정금도, 거륵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 남	소계	217	
	목포시	4	고하도, 울도, 달리도, 외달도
	여수시	42	대경도, 소경도, 묘도, 삼간도, 장도, 송도(돌산), 송도(울촌), 소늬도, 대늬도, 운두도, 금오도, 안도, 부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화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백야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낭도,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여자도, 송여자도,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고흥군	13	득량도,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거금도, 연흥도, 지죽도, 죽도, 사양도, 애도, 수락도, 진지도, 우도

시도	면	도서수	도 서 명
	보성군	3	장도, 해도, 지주도
	장흥군	1	노력도
	강진군	1	가우도
	해남군	4	상마도, 종마도, 하마도, 어불도
	무안군	1	탄도
	영광군	6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대석만도
전남	완도군	42	평일도, 총도, 소랑도, 우도, 다랑도, 황제도, 신도, 원도, 생일도, 덕우도, 금당도, 비견도, 노화도, 노륙도, 마삭도, 서납도, 넓도(토화),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보길도, 예작도,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신지도, 고금도, 넓도(고금), 약산도, 청산도, 장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진도군	33	금호도, 모도(의신), 상구자도, 하구자도, 장도, 관매도, 각홀도,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하조도, 대마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죽향도, 독거도, 슬도, 탄향도, 청등도, 모도(조도), 맹골도, 죽도(조도), 광도, 진목도, 옥도, 놀옥도, 외병도, 내병도, 가사도, 저도
	신안군	67	어의도, 대포작도, 사옥도, 선도, 증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수도,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대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흥도, 상태도, 종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개도, 장병도, 능산도, 대야도, 신도, 옥도, 상하태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울도, 안좌도, 자라도, 부소도, 박

시도	면	도서수	도 서 명
경북	소계	1	
	울릉군	1	울릉도
경남	소계	62	
	마산시	3	실리도, 송도, 양도
	진해시	4	태평동 잠도, 웅천동 우도, 수도, 연도
	통영시	32	오비도, 곤리도,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해간도, 지도, 수도,
			어의도, 읍도, 연도, 옥지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죽도, 매물도, 용호도, 비진도,
			상도, 하도, 수우도
	사천시	8	진도, 월등도
		마도, 저도, 늑도, 초양도, 신도, 신수도	
거제시	9	지심도, 내도, 산달도, 화도	
		가조도, 고개도, 칠천도, 황덕도, 이수도	
고성군	2	와도, 자란도	
남해군	3	노도, 조도, 호도	

시 도	면	도서수	도 서 명
	하 동 군	1	대도
제 주	소 계	7	
	제 주 시	5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서 귀 포	2	가파도, 마라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구분	97개 시·군·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해시, 창원시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일반 농산어촌지역

구분	120개 시·군
경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합천군,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